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연구 2024-07

본 보고서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보이스아이(VOICEYE)
가 실려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및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실태 연구

심진예 · 이원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집 필 진

· 책임연구자 :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원희 (노무법인 동방 노무사)

자문위원
(가나다순)

이순희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사무처장)
최승혁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머리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인력지원 제도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5년 전 근로지원인 규모는 2,357명에서 현재 1만 1천 명을 넘어섰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도 1만 6천 명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에 상당한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습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종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습니다.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연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결과, 제시된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근거로 향후 이 사업에 오랜 기간 기여하고 있는 근로지원인들의 처우가 보다 개선되고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분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202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조 윤 경**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목 차

Abstract ····· 1

연구요약 ····· 3

제1장 서 론 ·····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제2장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분석 ····· 25

제1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 25

1. 사업 개관 ····· 25

2. 근로지원인 자격 및 교육 ····· 29

3. 근로지원인 근로시간 및 지원형태 ····· 32

4. 근로지원인 임금 체계 ····· 33

제2절 근로지원인 인적 및 일자리 특성 ····· 36

1. 근로지원인 인적 특성 ····· 36

2. 일자리 특성 및 지원유형 ····· 37

3. 자격증 취득 현황 ····· 40

4. 동시근로 현황 ····· 42

제3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 및 임금 현황 ····· 48
1. 근로시간 현황 ····· 48
2. 임금 현황 ····· 51
3.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 결과 ····· 56

제3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자격제도 및 현황 ····· 62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 62
1. 자격제도 ····· 62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 67

제2절 점역교정사 ····· 69
1. 자격제도 ····· 69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 72

제3절 수화통역사 ····· 74
1. 자격제도 ····· 74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 75

제4절 속기사 ····· 77
1. 자격제도 ····· 77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 78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82
1. 자격제도 ····· 82
2. 주요 근무지 및 현황 ····· 83

제6절 직업상담사 ····· 85
1. 자격제도 ····· 85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 88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사례분석 ····· 89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 89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 산정 기준 ····· 89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98
3. 비교 결과 ····· 103
4. 심층면접 결과 ····· 106

제2절 점역교정사 ····· 108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 108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114
3. 비교 결과 ····· 118
4. 심층면접 결과 ····· 124

제3절 수화통역사 ····· 128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 128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133
3. 비교 결과 ····· 136
4. 심층면접 결과 ····· 142

제4절 속기사 ····· 145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 145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156
3. 비교 결과 ····· 158
4. 심층면접 결과 ····· 162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167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 167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175
3. 비교 결과 ····· 177

4. 심층면접 결과 ····· 179
제6절 직업상담사 ····· 182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 182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 189
3. 비교 결과 ····· 190
4. 심층면접 결과 ····· 193

제5장 결 론 ····· 196

제1절 요약 및 결론 ····· 196

제2절 제언 ····· 205
1. 시간누적 임금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근속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 206
2. 장애인 근로자 휴업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지급 또는 공가 인정 ···· 209
3. 근로지원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대체근로지원인 지원 ····· 210
4. 근로지원인 유입을 위한 자격수당 신설 ····· 211
5.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 증대를 위한 기초·양성교육의 확대 ····· 212
6. 동시지원 판정 절차의 합리화 필요 ····· 213

참고문헌 ····· 215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목차

〈표 1- 1〉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지원 현황 ····· 13
〈표 1- 2〉 심층인터뷰 및 사례조사 대상자 ····· 23
〈표 1- 3〉 연구추진체계 ····· 24
〈표 2- 1〉 근로지원인 지원유형 ····· 26
〈표 2- 2〉 사업비 구성 및 용도 ····· 29
〈표 2- 3〉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 30
〈표 2- 4〉 근로지원인 지원 직무 내용 ····· 32
〈표 2- 5〉 동시근로지원 내용 ····· 33
〈표 2- 6〉 사업비 및 근로지원인 임금 산정 기준 ····· 34
〈표 2- 7〉 2024년 지원유형별 임금 ····· 35
〈표 2- 8〉 2024년 지원유형별 시급 및 월 환산 임금 ····· 36
〈표 2- 9〉 근로지원인 성별 분포 ····· 37
〈표 2-10〉 근로지원인 연령별 분포 ····· 37
〈표 2-11〉 근로지원인 근무지역 분포 ····· 38
〈표 2-12〉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기관유형 분포 ····· 38
〈표 2-13〉 기관유형별 근로지원 유형 분포 ····· 39
〈표 2-14〉 근로지원인 지원유형 및 자격 기준과 분류코드 ····· 40
〈표 2-15〉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 분포 ····· 41
〈표 2-16〉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 현황 ····· 42
〈표 2-17〉 장애인 근로자 동시지원 이용 현황 ····· 44
〈표 2-18〉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동시지원 이용 분포 ····· 45
〈표 2-19〉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동시지원 이용 분포 ····· 46

〈표 2-20〉 근로지원 직무별 동시지원 이용 현황 ····· 47
〈표 2-21〉 근로지원 결정시간별 분포 ····· 48
〈표 2-22〉 장애유형별 평균 결정시간 ····· 49
〈표 2-23〉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평균 결정시간 ····· 49
〈표 2-24〉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백분위별) ····· 50
〈표 2-25〉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구간별) ····· 50
〈표 2-26〉 근로지원인 백분위별 월평균 급여 분포 ····· 52
〈표 2-27〉 근로지원 결정시간별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 53
〈표 2-28〉 근로지원 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 54
〈표 2-29〉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 55
〈표 2-30〉 기관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 56
〈표 2-31〉 심층인터뷰 참여 근로지원인 사항 ····· 56
〈표 3- 1〉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63
〈표 3-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 64
〈표 3- 3〉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 65
〈표 3- 4〉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67
〈표 3- 5〉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수 ····· 67
〈표 3- 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및 제공자 현황 ····· 68
〈표 3- 7〉 활동지원사 연령 및 성별 분포 ····· 69
〈표 3- 8〉 점역교정사 자격제도 ····· 70
〈표 3- 9〉 점역교정사 자격 및 시험과목 ····· 70
〈표 3-10〉 점역교정사 검정과목 및 검점방법 ····· 71
〈표 3-11〉 점역교정사 검정과목 및 자격유형 배점 기준 ····· 71
〈표 3-12〉 점역교정사 자격취득 현황 ····· 72
〈표 3-13〉 수화통역사 자격제도 개요 ····· 74
〈표 3-14〉 수화통역사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 전형 ····· 75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15〉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현황 ····· 75
〈표 3-16〉 속기사 자격제도 개요 ····· 78
〈표 3-17〉 한글속기사 자격시험 ····· 78
〈표 3-18〉 정부부문 속기사 주요 근무처 ····· 80
〈표 3-1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현황(2024.10.14. 기준) ····· 83
〈표 3-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 84
〈표 3-21〉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 85
〈표 3-22〉 직업상담사 1급 시험과목 및 전형 ····· 86
〈표 3-23〉 직업상담사 1급 검정 현황 ····· 86
〈표 3-24〉 직업상담사 2급 시험과목 및 전형 ····· 87
〈표 3-25〉 직업상담사 2급 종목별 검정 현황 ····· 87
〈표 3-26〉 직업상담서비스 운영기관 및 종사자 현황 ····· 88
〈표 4- 1〉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세부 내용 ····· 90
〈표 4- 2〉 활동보조 급여 및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 92
〈표 4- 3〉 2021년~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 92
〈표 4- 4〉 2024년 4대보험 보험료율 ····· 95
〈표 4- 5〉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추정) ·· 95
〈표 4- 6〉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추정) ·· 96
〈표 4- 7〉 서울특별시「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2024.6)」 법정인건비 산정 조건 · 97
〈표 4-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구성 ····· 99
〈표 4- 9〉 서울○○지역자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구성 ····· 100
〈표 4-10〉 실태조사(3개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조건 ····· 102
〈표 4-11〉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비교 ····· 104
〈표 4-12〉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최저임금 기준) 106
〈표 4-13〉 점역교정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 109
〈표 4-14〉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110

〈표 4-15〉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 112
〈표 4-16〉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113
〈표 4-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 직급 기준 ····· 115
〈표 4-18〉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기본급) 116
〈표 4-19〉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수당) ····· 117
〈표 4-20〉 점역교정사 기본급 시급 환산 결과 ····· 120
〈표 4-21〉 점역교정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 ····· 121
〈표 4-22〉 점역교정사 기본급, 수당 합산 시급 환산 결과 ····· 122
〈표 4-23〉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 점역교정사 처우 비교 ····· 123
〈표 4-24〉 수화통역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 129
〈표 4-25〉 수화통역사 채용공고 중 임금이 명시된 사례 ····· 132
〈표 4-26〉 2024년 ○○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 ·· 134
〈표 4-27〉 2024년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수당 ····· 135
〈표 4-28〉 ○○광역시수어통역센터 4급 및 5급 봉급 기준 ····· 136
〈표 4-29〉 수화통역사 기본급 환산 결과 ····· 139
〈표 4-30〉 수화통역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보건복지부 기준) ····· 139
〈표 4-31〉 수화통역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광역시 기준) ····· 140
〈표 4-32〉 수화통역사 기본급, 수당 합산 시급 환산 결과 ····· 140
〈표 4-33〉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 수화통역사 처우 비교 ····· 141
〈표 4-34〉 속기사 직무내용 ····· 146
〈표 4-35〉 속기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 147
〈표 4-36〉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표 ····· 151
〈표 4-37〉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월지급액) ····· 152
〈표 4-38〉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 152
〈표 4-39〉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에 적용되는 수당 ····· 153
〈표 4-40〉 교육지원인력 지원 내용 ····· 155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41〉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편성 기준 ····· 156
〈표 4-42〉 채용공고 기관 기본임금과 시급 환산 결과 ····· 159
〈표 4-43〉 4개 기관(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 기본임금 및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 ···· 160
〈표 4-44〉 교육속기사 교육시간 및 임금 기준 ····· 161
〈표 4-45〉 교육속기사와 근로지원인의 임금 비교 ····· 161
〈표 4-46〉 근로지원인과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처우 비교 ····· 162
〈표 4-4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 분야 ····· 167
〈표 4-4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과 · 생활지도 관련 활동 ····· 168
〈표 4-4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과 · 생활지도 관련 활동 ····· 169
〈표 4-50〉 그 밖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활동 ····· 169
〈표 4-5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 170
〈표 4-52〉 현 근무지 임금형태 ····· 172
〈표 4-53〉 현 근무지 연 소득 ····· 172
〈표 4-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사직 기본급여표 ····· 173
〈표 4-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사직 수당지급 기준 ····· 174
〈표 4-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강사료 지급 기준 ··· 175
〈표 4-56〉 채용공고 기관 임금과 시급 환산 결과 ····· 178
〈표 4-57〉 근로지원인과 채용공고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처우 비교 179
〈표 4-58〉 직업상담사 채용분야 ····· 182
〈표 4-59〉 직업상담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 184
〈표 4-60〉 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개요 ····· 187
〈표 4-61〉 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 188
〈표 4-62〉 채용공고 기관 임금과 시급환산 결과 ····· 191
〈표 4-63〉 근로지원인과 채용공고 기관 직업상담사 처우 비교 ····· 192
〈표 5- 1〉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1 ····· 202
〈표 5- 2〉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2 ····· 203
〈표 5- 3〉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3 ····· 204

그림목차

［그림 1-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 27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working conditions for Workplace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and similar human support systems

Sim, Jinye
(Research Fellow,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ion, KEAD)
Yi, Wonhee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DongBang Lobor Law & HR Consulting C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 Workplace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WPA), diagnose problems, and prepare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age payment status of labor for WPA were analyzed. Mainly, the qualification system of similar personnel, that is, disabled activity support workers, paraphrasing correctors, sign language interpreters,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s, and vocational counselors, was investigated, and the working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WPA. Through this, a plan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 WPA was presented.

Key words: Workplace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improvement of treatment for WPA.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요약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로지원인과 유사한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보수지급 실태를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근로지원인 처우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지원인과 비교하였다. 유사 인적지원제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수화통역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등 총 6개 직역이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기간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이다. 근로지원인은 지원기능과 장애인 근로자의 주요 장애 유형에 따라 제1유형(업무보조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제3유형(적응지도형)으로 구분된다.

근로지원인 임금은 서비스 시간(실제 서비스 제공시간), 교육시간(법정의무교육 및 공단 참여시간), 연차 시간(연차 사용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주휴로 처리되므로 별도 산정 제외), 주휴시간으로 구성된다.

2024년 근로지원인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제2유형에 속하는 한국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근로지원인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제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

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제2유형 의사소통형 근로지원인 임금은 시급 11,832원이며, 제3유형 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원활한 근로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동시지원 시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 지원할 때는 근로지원 임금에서 20% 가산,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 지원할 때는 30%를 가산한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지원인DB 상에서 동시지원을 실시한 근로지원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 이상의 동시 근로지원을 실시한 근로지원인은 총 3,280명으로 근로지원인 4명 중 1명은 두 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 중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22명으로 전체 장애인 이용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통해 판정된 일일 근로지원 필요시간 즉 '결정시간'은 평균 5.9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115.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4.345주 근무 시 최대 근무시간인 173.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분포상 상위 15%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6,567원이며 전체 임금분포 중 하위 25%는 1,064,880원 이하이며, 상위 25%는 2,052,852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사 인력의 자격제도 및 현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제도는 없으나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최종 교육이수증은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하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습은 교육이수자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접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이용자(장애인)와 연계가 확정된 시점에 진행한다. 2022년 말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139,509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09,24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94.6%인 103,3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점역사와 교정사를 통합한 점역·교정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인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 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한다.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역교정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 1급 209명, 2급 224명, 3급 1,192명이다. 점역교정사는 주로 시각장애인 기관 예컨대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 등에서 점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 3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56개소가 있다(맹학교 13개소, 복지관 15개소, 시설 13개소, 단체 15개소).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청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농아인협회가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2022년 기준 1,973명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공공기관, 수어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 등이 주요 근무지이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의 약 200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속기사는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받아쓰거나 컴퓨터 속기 기계로 기록하는 일을 한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속기사 자격증(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되며 관련 자격증은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회, 의회, 법원, 검찰청 등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속기사를 통하여 강의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 ·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제도는「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에 근거하고 있다. 훈련교사 자격취득자는 2024년 10월 기준 205,644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다. 그 밖에도「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 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 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 직업상담행정 업무 등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제도를 관리한다. 고용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자리 위탁사업 및 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약 1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유사 인력의 근로조건 사례조사 및 근로지원인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지원인 임금은 시급체계이며, 제1유형 및 제3유형은 최저임금이고 제2유형은 최저임금의 120%이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도 근무할 수 없다. 장애인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근로일수가 확정되므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고, 장애인 근로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이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지원인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은 지급되고 있으나 호봉 가산 또는 경력 인정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고 업무가 본질적으로 지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종사자들로부터 근속 유인이 낮고 직업적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의 유사 직역을 비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서 신체적 도움과 가사 도움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지원인과 같이 시급 체계이고, 경력 인정이나 호봉 상승은 없으나 근로지원인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받으므로 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사는 근로지원인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데 월평균 15.6시간 더 근로하며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15만 4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점역과 교정을 담당하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고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초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근로지원인보다 낮으나 경력 인정 및 호봉 상승,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장기적으로 근로지원인에 비해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초임 시급이 근로지원인보다 낮다 하더라도 고정 근무에 따른 임금 실수령 금액이 높고, 연차 사용이 자유로우며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근로지원인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화통역사의 주요 근무처도 사회복지기관 등이며, 그 형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점역교정사와 유사하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식도 점역교정사와 유사하다.

속기사는 회의나 법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며, 고정 근무시간과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갖고 있다. 속기사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시급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근로지원인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고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이 없으므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기회가 있고, 수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일도 있으므로 임금 실수령 금액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높을 수가 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상담사 임금 수준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높지 않으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실수령 금액은 높을 수가 있다.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현장 도우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직업적 가치가 폄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신체적 · 정서적 부담이 높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 직무와 비교했을 때 복리후생, 상여금이 제공되지 않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에 따른 임금 가산이 없으므로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때 근로지원인도 출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도 보장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조건이 조성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업무를 하는 특성상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유사 인적지원제도와 비교하면 근로지원인의 시급이 유사 직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지원인 유입이 낮은 요인으로는 호봉 및 경력 불인정,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약, 장애인 근로자 결근에 따른 임금 소득 감소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지원인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구조로 인해 장기근속과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의 유입을 확대시키고 경력이 오래된 근로지원인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유지해 가기 위한 유인 또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누적 임금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근속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지원인이 일정 누적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시급을 가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지원인에게 가산된 시급을 적용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근로지원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근로지원인의 근무 단절을 막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 휴업 시 근로지원인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가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도 장애인 이용자의 휴가 등 근무 단절로 인해 예상했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실근로시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 확보는 급여 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하지 못할 경우 일일 근로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가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생계 안정성을 보장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지원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대체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지원인들은 장애인 이용자의 일정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에 제한받고 있

으므로 근로지원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수행기관이 대체 근로지원인을 투입하게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근로지원인이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지원인 유입을 위한 자격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은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다. 현재 제3유형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제2유형과 같은 자격취득에 대한 임금가산의 혜택이 없다. 제3유형은 장애인 근로자 업무 지원과 적응지도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업무난이도가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 높다. 급여비교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직업상담사와 비교하면 최저시급에 기초한 제3유형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3유형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의 형평성을 마련하고, 근로지원인 유입 및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수당 도입을 통한 급여 인상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 증대를 위한 기초·양성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공단은 선교육 후배치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선임되기 이전 기초교육과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소개나 직업적 관심으로 또는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미취업자들이 근로지원인 일자리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쉽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 교육수강을 희망자들이 교육에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과정과 양성교육 과정의 연중 실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동시지원 판정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근로자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 동시지원을 통해 근로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시지원을 보다 확대시킨다면 동시지원을 통한 근로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지원 확대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이면서 일괄적인 증대는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 양측 모두에게 업무적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지 못하며, 업무상 재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지원 확대에 앞서 먼저, 동시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자 업무능력 및 기능평가와 직무의 안정성 및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동시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이 겪는 업무고충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공단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기술적이거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도입되었으며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로 두고 있다.[2]

지금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양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사업예산 규모와 현장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 사업의 예산은 2020년 948억 원에서 2023년 2,270억으로 2.4배 증가했으며,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수행기관 수는 총 168개 기관으로 5년간 2.8배 증가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은 같은 기간 2,357명에서 11,650명으로 4.9배 증가하였으며, 이용장애인 근로자 수는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제19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의 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증장애인 공무원 :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4,405명에서 16,400명으로 3.7배 증가하였다.

〈표 1-1〉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지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행기관	59	105	145	168	168
근로지원인 (월평균)	2,357	4,494	6,899	10,636	11,650
서비스 이용 장애인 근로자	4,405	7,794	12,407	15,015	16,4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자료

사업확대와 병행하여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동반됐다.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근로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 및 필수 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어 전면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도 애초 유형 구분이 없었으나 장애인 근로자의 필요에 맞도록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어 2022년부터 유형별로 구분되어 지원되는 중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장애인 공무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2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2020년부터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되어 근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최근 5년간 5.6배 증가했다.

근로지원 사업의 장애인 대상자나 전체 서비스 물량의 양적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선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은 주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지원에 대한 경험과 사업이해도가 축적되고,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됨으로써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리

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종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신하영, 서정은, 2018; 김윤영, 이영석, 조혁진, 최희선, 2023; 홍예람, 조상미, 2024).

근로지원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그쳤다. 근로지원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근로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던 본격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해왔으며,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공급자나 수요자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나 실제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근로지원인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김호진·연명모 2012; 박혜원·김원호, 2016; 최윤영·정광진, 2022; 강동욱·정솔·노법래, 2003).

근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해 근로지원인의 근속연수가 짧고, 소정의 자격요건이 있는 제2유형 및 제3유형의 경우는 근로지원인 배치가 결정된 후, 실제 근로지원인의 채용·배치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근로지원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는 근로지원 지원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향후 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

고자 한다.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근로지원인의 처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더 나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의 보수지급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근로지원인과 유사한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 근로지원인과 비교함으로써 근로지원인 처우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근로지원인 사업 단가 적정 편성에 활용됨으로써 근로지원인의 종사자 유입을 늘리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숙련도를 상승시켜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절한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도입을 앞둔 시기에 제도 도입에 관한 최초의 연구인 심진예·강필수·남용현(2005)이 있다. 제도 도입 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평가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황수정·김언아·김성희·양희택, 2008; 김호진·연명모, 2012; 박혜원·김원호, 2016; 심진예·신인철, 2017).

최근 연구인 최윤영·정광진(2022)은 질적 연구를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강동욱·정솔·노법래(2023)는 근로지원 사업의 양적으로 확대되고 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근로지원인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분석은 박은순·정희경(2017)과 이민영·민은정·유희정(2022) 등이 있다.

본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유사 인적지원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연구가 시도된 바는 없으며 강동욱 외(2023)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진 바 있다. 강동욱

외(2023)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제도별 신청대상, 급여대상, 등급판정기준,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수준 등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그 시사점으로 활동지원등급(1~15등급)과 장기요양등급(1~5등급)으로 구분하여 필요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평가

근로지원 지원 사업 도입 후 사업평가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최근 10년간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혜원·김원호(2016)는 근로지원 서비스와 작업지도원 서비스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이 고용 상태를 유지할 확률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심진예·신인철(2017)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관리지원 사업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평가하였다. 계획, 집행, 성과, 환류의 측면에서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집행 단계의 평가 결과, 근로지원 시간 충분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근로지원인 처우 및 복리후생에 있어선 급여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근로지원인 처우개선과 관련해 급여 안정화의 필요성을 밝혔는데, 근로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급여안정화를 검토하거나, 급여단가 인상으로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과단계에서는 고용유지 기간, 고용 효과성 그리고 장애인 생산성 향상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장애인고용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영·정광진(2022)은 근로지원인 지원제도의 사업목적의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근로지원인 수요 증가에 따른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확보 및 관리 방안 등 현행제도의 진단과 함께 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근로지원인의 분명한 역할과 범주를 명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의 신설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과 계약체결 시부터 지휘·감독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 활동이 아니라 '근로활동'을 지원한다는 전문성에 비춰볼 때 근로지원인 급여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며 장기근무에 따른 급여단가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지원유형별 근로지원인 직무를 명확히 하고 급여 및 단가를 차등화시켜야 하며, 근로지원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수행기관 및 개별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과 함께 사업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서비스 전달체계 점검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요 예측

강동욱·정솔·노법래(2023)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행정자료와 장애인 노동시장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지원인 수요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사와 비교, 동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체계 개선 등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서비스 요구도 분석을 통해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장애 집단의 서비스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장애 제외한 정신장애 집단이 높은 서비스요구도를 보였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신체내부장애 집단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서비스요구도가 높은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하며, 장애유형별 서비스 할당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확대 추이는 재정적 부담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간 서비스 확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선 동일장소 동일 시간대 그리고 비교적 단순직무일 경우

동시 지원체계를 현행 1:1, 1:2, 1:3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분석

박은순·정희경(2017)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직장에서 일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부자 관점에서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심리학적 현상학 방법을 사용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의 일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하여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일 경험은 업무상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지원 서비스는 꼭 필요한 제도이자,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로 나타났다.

이민영·민은정·유희정(2022)은 발달장애인의 고용기초능력(신체, 인지)과 고용준비태도(자기관리, 사회관계, 정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요구 특성에 맞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1,327명에게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를 시행하여 고용기초능력, 고용준비 태도영역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분산분석 방법으로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 요구에 맞추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장적응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인적지원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현황 분석

사업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DB를 활용해, 최근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지원인의 특성 및 근로조건과 내용, 급여를 분석하였다. 근로지원인의 성별·연령별 분포 등 인적특성을 분석하였다. 근로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 근로지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근로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결정시간과 실제 월별 근로한 시간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자격증 소지자 유입 규모를 확인하고자 했다. 동시근로지원에 대한 이용현황을 분석했으며 1:2와 1:3의 이용비율,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실태를 분석하였다.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별로 지급된 급여 현황 및 구간별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지원인 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특성별, 동시근로에 따른 임금지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2. 유사 인력의 자격제도 및 현황조사

근로지원인과 유사한 인력의 자격제도 및 자격증 취득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인 활동지원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의 자격제도, 자격증 취득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자격제도의 경우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자격제도 관리 기관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위해 각종 행정자료로 2차 자료를 수집, 분석했으며 자격증 취득자의 주요한 취업처 및 취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3. 유사 인력의 근로조건 사례조사 및 비교

장애인활동지원사, 점역교정사·속기사·수화통역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상담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유형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직무내용 등을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되는 수당,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채용공고를 분석했다. 해당 인력별로 주요한 구인 온라인사이트를 확보해 검색했으며 2024년 1월부터 8월 또는 10월까지 구인공고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둘째,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해당 자격취득 후 주된 취업처와 일자리 등 취업 사정에 대한 현장 정보와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자격취득 후 주요 근무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으며 이를 사례조사에 반영하였다. 또한, 사례조사 후 이들로부터 조사결과를 검증받고, 근로지원인과의 처우수준과 비교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실무자 심층인터뷰는 실제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자격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격취득 후 취업과정, 현재 일자리의 직무내용, 급여수준, 근로지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현장 실무자의 사례조사를 근거로 근로지원인과 유사 인력 간에 인건비 지급체계 및 급여를 중심으로 근로조건을 비교하였다. 기본인건비와 그 외 각종 수당의 유형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급여를 산출해, 비교하고, 임금 격차를 파악하

였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인건비 지급 방식에 있어 법적으로 부당한 처우는 없는지, 인력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3] 각 인력지원 제도 유형별로 사례조사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사

매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발표하고 있으며 크게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사업수행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25%는 활동지원사의 4대 보험 사업자분과 퇴직금,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는 활동지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을 급여의 75%로 권장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 시급 산정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기준에 대한 행정자료 및 실태조사자료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사례조사를 실시해 기준 및 급여 수준을 파악하였다. 기관 형태에 따라 급여 산출 기준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했으며, 기관 선정 등 조사방법에 대해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자문을 구하였다.

나. 점역교정사·수화통역사·속기사

세 가지 인력에 대해 자격증 취득자들의 주요 취업처를 파악해 대표적인 근무지와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인건비 기준 및 그 구성과 금액을 조사하고 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내에서 제2유

3) 실제 급여 비교를 위해서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자격증 유무, 경력, 근로시간 내역 등)와 수당 계산을 위한 자료(시간외근로 내역, 가족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부양가족 등), 임금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나 조사대상자로부터 세부 자료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었으므로 균등 비교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형의 근로지원인의 근로내용 및 임금수준과 비교하였다.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상담사

선행연구와 행정자료를 조사하여 주요 취업처와 근무시설을 선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직업상담사의 근무내용, 임금체계 및 임금 수준에 관해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자와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대표적인 근무형태에 대한 자문을 구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례조사를 착수하고자 한다.

4.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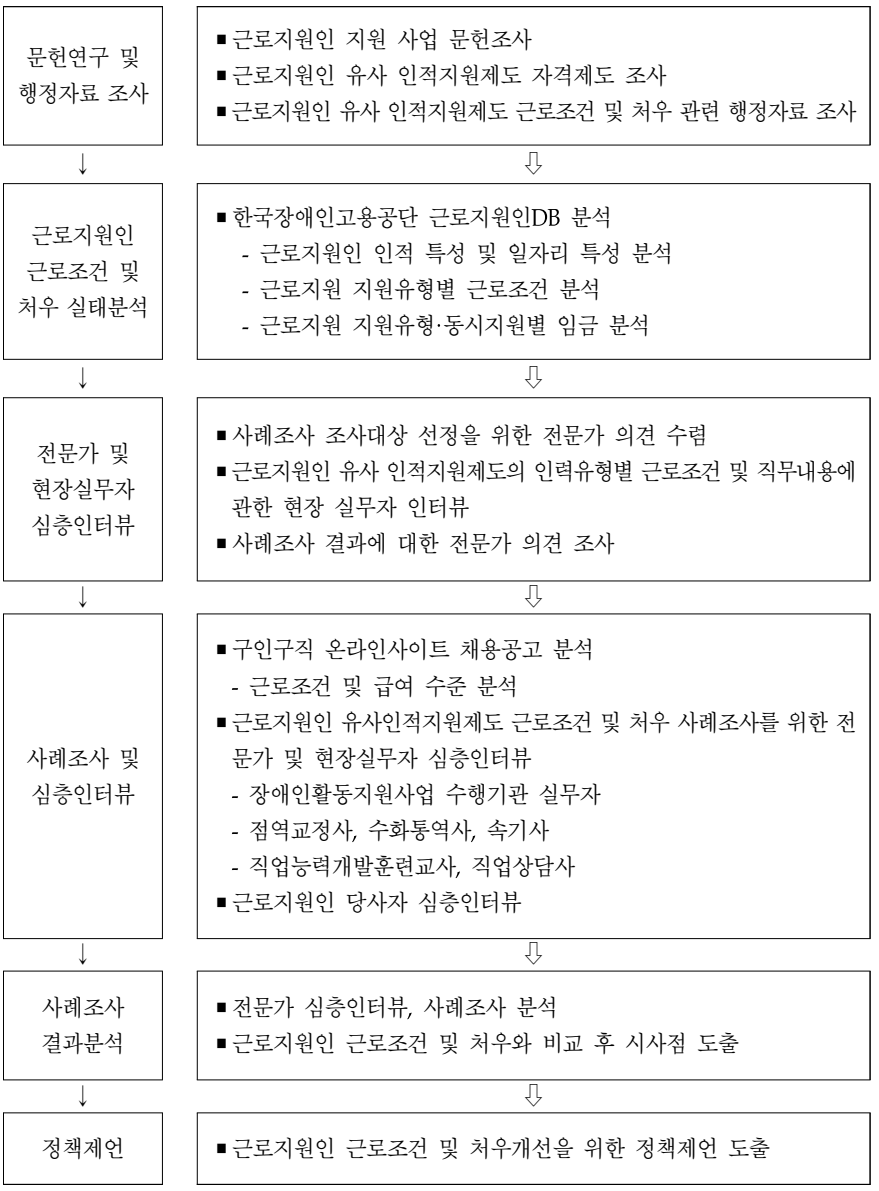
근로지원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지원하는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며 경력이 3년 이상인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사자가 체감하는 급여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으며, 동시지원에 대한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유사 인적지원제도 비교 결과와 종합하여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방안에 반영하였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1-2〉 심층인터뷰 및 사례조사 대상자

구분	참여자	직위
장애인활동지원사	서울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센터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서울○○지역자활센터	팀장
점역교정사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교정사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교정사
수화통역사	○○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 본부	사무처장
	○○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 본부	과장
	○○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지역센터	수화통역사
속기사	한국○○속기협회	총무이사
	○○대학교	교육속기사
	경기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학교	HRD 교육팀 팀장
	○○○○대학교	HRD 교육팀 파트장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협회	공동훈련센터장
	○○직업상담사협회	선임연구원
	민간취업알선기관	직업상담사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A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B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C	뇌병변장애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 D	시각장애 근로지원인

〈표 1-3〉 연구추진체계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조사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문헌조사
■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자격제도 조사
■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및 처우 관련 행정자료 조사
근로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 실태분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DB 분석
- 근로지원인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 분석
-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근로조건 분석
- 근로지원 지원유형·동시지원별 임금 분석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심층인터뷰
■ 사례조사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인력유형별 근로조건 및 직무내용에 관한 현장 실무자 인터뷰
■ 사례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조사 및 심층인터뷰
■ 구인구직 온라인사이트 채용공고 분석
- 근로조건 및 급여 수준 분석
■ 근로지원인 유사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및 처우 사례조사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심층인터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 점역교정사, 수화통역사, 속기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 근로지원인 당사자 심층인터뷰
사례조사 결과분석
■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례조사 분석
■ 근로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와 비교 후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 근로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2 장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분석

제1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1. 사업 개관

가. 지원대상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된다.[4)]

4)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③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제16조에서 제19조에 따른 고용관리비용(작업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④「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17조에 따른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⑤ 기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2021년부터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절차(면담, 기본평가, 심화평가, 사례회의, 판정위원회 등)를 통해 '(중점)고용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정도		판정결과	서비스 지원사항
중증	⇨	(중점)고용지원 대상	평가결과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지원 서비스 하향 조정 없음
경증	⇨	중점고용 지원대상	· '중증'한정 서비스 지원 자격 부여 · 지원고용,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한도 상향조정) 가능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를 통보함. 단, 기간 내에 판정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서 연장할 수 있음
- 판정결과 유효기간은 3년임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서 '중점고용 지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여부와 다름

나. 지원 기간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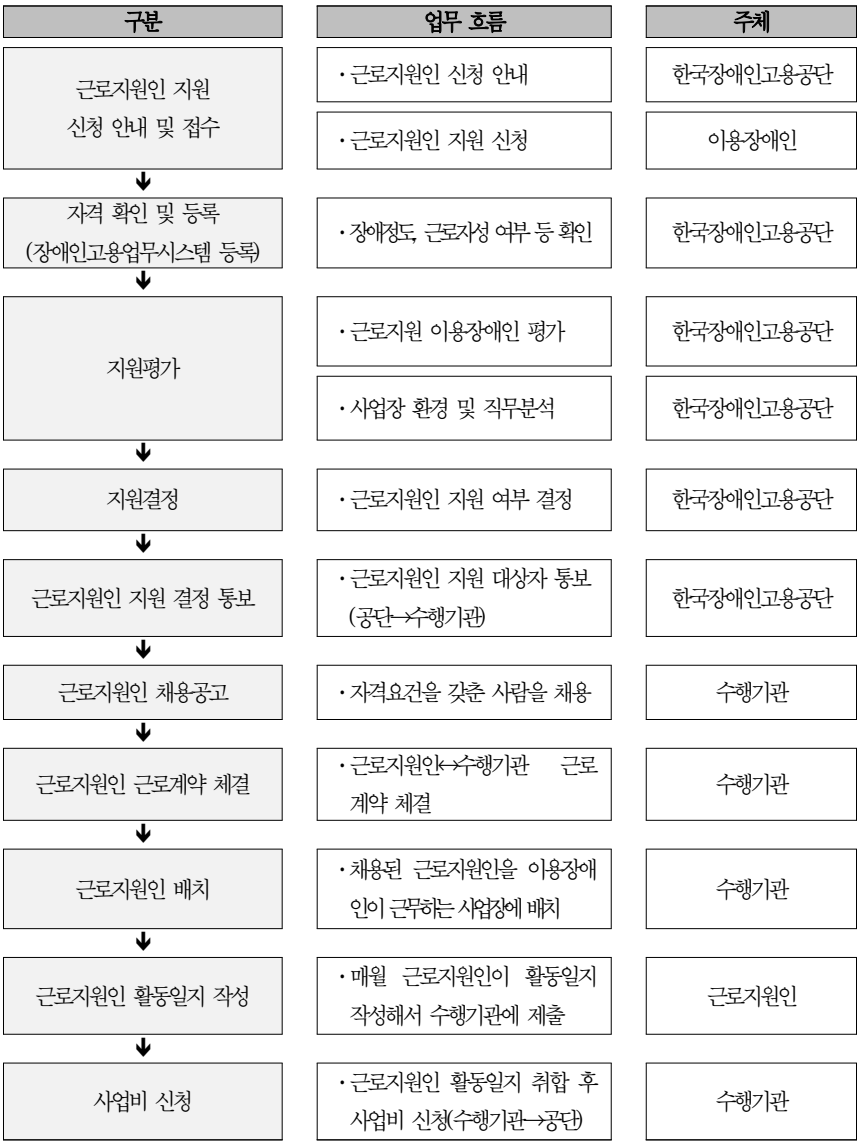
지원기간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이다. 근로지원인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근로지원인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며, 지원 직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 근로지원인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기능	주요 장애 유형
[제1유형] 업무보조형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뇌병변 등)
[제2유형] 의사소통형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청각, 언어 등)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발달, 정신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그림 1-1〕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근로지원인 업무매뉴얼

다. 사업 위탁 및 비용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한다. 수행기관 신규모집 여부, 모집규모, 모집기간 등 방침은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며 해당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모집, 선정, 관리한다. 사업수행기관 신청자격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
2.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비 및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지역본부 및 지사는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운영비를 약정체결 시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한 매월 신청 및 정산 또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매월 신청 및 정산의 경우 매월 단위 사업 수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한다. 선지급 후 정산의 경우는 약정체결 후 30일 이내에 약정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급하고, 당해 연도 약정 기간의 1/2 시점에 잔여 금액을 지급한다.

지역본부 및 지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근로지원인 근로시간, 연차 휴일, 주휴, 교육, 서비스 제공 시간, 수행기관 운영비, 본인부담금 산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근로지원인 임금액 산정 시 공휴일[5]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되, 일요일은 제외(주휴일 처리) 한다.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3.5]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5.4., 일부개정]

〈표 2-2〉 사업비 구성 및 용도

유형	세부항목	세부내역 및 산정방법
근로지원인 임금	근로지원인 임금	· 근로지원인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근로지원 시간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사업주 4대 보험료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 다음 연도 상반기 실제 정산
사업운영비	근로지원인 노무경비	· 사업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고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경비 - 근로지원인이 사업수행기관 소속 근로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예) 해고예고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지원인의 초과근무 수당 및 여비 등
	퇴직적립금	· 사업수행기관 소속 근로지원인의 퇴직적립금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된 금액
	근로지원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 사무실 운영 경비, 소모품, 공과금 등 근로지원인 사업운영 환경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예) 사무실 임차료, 각종 공과금, 집기 및 사무기기 운영비용, 소모품 구입, 홍보비 등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매뉴얼

2. 근로지원인 자격 및 교육

가. 자격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자 중 아래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되기 전 기초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근로지원인으로 선임되기 전 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표 2-3〉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6)]

지원유형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 한국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참고〉 근로지원인 구인 예시문

① 연령: 만 18세 이상
② 경력 및 학력: 무관(단, 근로지원인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③ 급여 : 시급 9,620원(주휴수당 별도 지급)
④ 근무형태: 계약직 기간제(이용장애인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⑤ 담당업무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
- (예) 물건 이동, 수어통역, 문서정리, 자료 대독 및 대필, 정서적 지원 등

⑥ 우대사항
- 근로지원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 한국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급여 인상(시급의 20%)
(단, 한국수어통역/점역교정/속기 직무로 근무시)

⑦ 기타사항
- 2명의 장애인 동시지원 시 시급의 120%, 3명의 장애인 동시지원 시 130%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함

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4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근로지원인 교육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지원인 활동 전, 후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교육(1차)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며,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운영한다. 양성교육(2차)은 집합(대면/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관에서 운영한다. 지원유형 전문교육(발달장애 특별과정)은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운영된다. 1, 2유형의 근로지원인이 3유형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교육이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및 집합(대면/비대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운영한다.

현행 근로지원인 교육체계

① 기초교육: 양성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선행 교육
- 과정명: 근로지원인 Start up!
-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등 10차시
- 교육기간: 연중수시 운영
- 수강방법: EDI 사이버연수원

② 양성교육: 근로지원인 기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 과정명: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 근로지원인 활동을 희망하는 자
-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근로지원인 제도 이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실제, 부정수급 예방, 안전교육 등
- 교육기간: 3일(20시간)
- 수강방법: 양성교육 위탁기관으로 자체개별 신청

③ 지원유형 전문교육(발달장애 특별과정): 1, 2유형의 근로지원인이 3유형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과정명: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발달장애 특별과정(온라인과정)
- 교육대상자: 제3유형(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 희망자(단, 일반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
- 교육내용: 발달장애의 이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해와 실제 등
- 교육기간: 1일(6시간)
- 수강방법: EDI 사이버연수원에서 자체 개별 신청

④ 보수교육: 양성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강화
- 과정명: 근로지원인 보수교육
- 교육대상자: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 후 3년 경과한 자
- 교육기간: 2일(12시간: 온라인과정 6시간+집합 또는 비대면(화상) 교육 6시간)
- 수강방법: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으로 신청

3. 근로지원인 근로시간 및 지원형태

가. 근로시간

근로지원인 지원기간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이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이다.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직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근로지원인 지원 직무 내용

주요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예시
시각	①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②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③ 직무상 강의, 안마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이동지원 등 ④ 인터넷, 신문, 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⑤ 방문자 응대, 업무상 비품 지원 등 서비스 관련 부수 업무
지체, 뇌병변	①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 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지원 ③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청각, 언어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②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③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지적, 자폐	①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지원 ② 의사소통, 고객 응대 및 업무지도 등 ③ 사무 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정신	① 작업물 검수, 포장 등 생산 및 작업지원 ② 사무보조, 고객 응대 등 근무지원
기타	① 사무보조, 생산 및 작업지원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매뉴얼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지원형태 및 동시근로

근로지원의 지원형태는 세 가지이며, 제1유형 업무보조형, 제2유형 의사소통형, 제3유형 적응지도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원활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근로지원인에게 장소와 시간을 같이 지원하는 '동시 근로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 근로지원을 제공할 경우, 동시 근로지원 서비스 승낙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취소할 경우 동시 근로지원 서비스 취소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동시 근로지원 이용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감소하며 근로지원인의 경우 시간당 지원 단가는 증가한다.

〈표 2-5〉 동시근로지원 내용

동시지원 유형	이용장애인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시간당 지원단가
1:1	300원	최저임금
1:2	180원	최저임금 × 120%
1:3	130원	최저임금 × 130%

4. 근로지원인 임금 체계

근로지원인 임금은 서비스 시간(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교육시간(법정의무교육 및 공단 참여시간), 연차 시간(연차 사용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주휴로 처리되므로 별도 산정 제외), 주휴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시간은 근로지원인이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 및 공단 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지급하는 임금이고, 연차시간[7]은 근로자가 연차

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그날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며, 유급휴일수당(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법정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8]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9]이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지원인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6〉 사업비 및 근로지원인 임금 산정 기준[10]

구분	사업비 산정 기준
① 서비스 시간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활동시간)
② 교육시간	수행기관 교육(법정의무교육) 및 공단 참여 시간
③ 연차시간	연차사용일×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④ 유급휴일시간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이미 주휴로 처리하므로 별도 산정 제외 (공휴일수(근로자의 날 포함)-일요일수)×소정근로시간(일))

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운영계획, 9p.

〈표 2-6〉 (계속)

구분	사업비 산정 기준
⑤ 주휴시간	주휴일수×소정근로시간(일)
⑥ 본인부담금	월별 실제 근무시간(서비스 제공시간)×300원
⑦ 근로지원인 임금	(①+②+③+④+⑤)×시급
⑧ 사업운영비*	주휴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①+②+③+④)×시급×18.39%
⑨ 사업비 지급액	⑦+⑧+사회보험료**-⑥

주*: 2024년 사업운영비 비율: 18.39%
주**: 사회보험료: 근로지원인 임금×사회보험료율(11.2531%)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매뉴얼

2024년 근로지원인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제2유형에 속하는 한국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근로지원인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제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제2유형 의사소통형 근로지원인 임금은 시급 11,832원이며, 제3유형 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근로지원인이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월 임금은 제1유형 2,060,740원, 제2유형 2,472,888원, 제3유형 2,060,740원이며, 근로지원인은 경력인정 또는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가산은 없다.

〈표 2-7〉 2024년 지원유형별 임금

(단위:원)

지원유형	시급	일 8시간 기준 일급	주40시간 기준 월급*
제1유형	9,860	78,880	2,060,740
제2유형	11,832	94,656	2,472,888
제3유형	9,860	78,880	2,060,740

주*: 시급×209시간(주휴 포함, 48시간×365/12/7)
유급 인정 : ①서비스 시간, ②법정의무교육 및 공단 참여 교육시간, ③연차시간(연차사용일), ④유급휴일시간(공휴일), ⑤주휴일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원활한 근로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 지원할 때는 근로지원 임금에서 20% 가산,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 지원할 때는 30%를 가산한다. 가산하여 지급되는 항목은 서비스 시간은 ①서비스시간, ②교육시간, ③연차시간, ④유급휴일시간(공휴일), ⑤주휴시간이며, 2024년 지원유형별 근로지원인 시급과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아래와 같다.

〈표 2-8〉 2024년 지원유형별 시급 및 월 환산 임금

(단위:원)

지원유형	시급			월급(주 40시간 기준)*		
	1:1	1:2	1:3	1:1	1:2	1:3
제1유형	9,860	11,832.0	12,818.0	2,060,740	2,472,888	2,678,962
제2유형	11,832	14,198.4	15,381.6	2,472,888	2,967,466	3,214,754
제3유형	9,860	11,832.0	12,818.0	2,060,740	2,472,888	2,678,962

주*: 시급×209시간(주휴 포함, 48시간×365/12/7), 소수점은 반올림

제2절 근로지원인 인적 및 일자리 특성

1. 근로지원인 인적 특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서 관리하는 근로지원인DB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근로지원인으로 근로해 급여를 수급한 근로지원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전체 근로지원인 중 여성은 77.3%이며, 남성은 22.7%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9〉 근로지원인 성별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여성	9,702	77.3
남성	2,856	22.7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근로지원인의 평균연령은 51.7세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50대 35.2%로 가장 많으며, 60대 24.8%, 40대 2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 근로지원인 연령별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18~19세	10	0.1
20~29세	862	6.9
30~39세	1,166	9.3
40~49세	2,528	20.1
50~59세	4,428	35.2
60~69세	3,115	24.8
70세 이상	449	3.6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2. 일자리 특성 및 지원유형

가. 일자리 특성

근로지원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 지사를 기준으로 근로지원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서울

22.4%, 경기 21.1%, 부산 6.0%, 대전 5.3%, 대구 4.6% 순이다.

〈표 2-11〉 근로지원인 근무지역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강원	485	3.9	서울남부	948	7.6
경기동부	565	4.5	서울동부	488	3.9
경기북부	865	6.9	서울북부	663	5.3
경기서부	441	3.5	서울본부	701	5.6
경기본부	787	6.2	울산	553	4.4
경남	543	4.3	인천	450	3.6
경북	450	3.6	전남	419	3.3
광주	498	4.0	전북	498	4.0
대구	585	4.6	제주	305	2.4
대전	675	5.3	충남	429	3.4
부산	749	6.0	충북	461	3.7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근로지원이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32.4%, 직업재활시설 19.9%, 표준사업장 19.0%, 비영리기관 18.5% 순이다.

〈표 2-12〉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기관유형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공공기관(공기업)	136	1.1
국가(공무원)	89	0.7
국가(비공무원)	31	0.2
민간기업	4,076	32.4
비영리기관	2,325	18.5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24	2.6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702	5.6
직업재활시설	2,489	19.9
표준사업장	2,386	19.0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지원유형

근로지원인의 지원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제1유형 업무보조형의 경우 59.9%이며, 제2유형 의사소통형 3.4%, 제3유형 적응지도형 36.6%이다. 지원유형별로 기관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1유형은 민간기업과 비영리기관 및 표준사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2유형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표준사업장 비중이 높다. 제3유형은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민간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3〉 기관유형별 근로지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합계
전체	7,528 (59.9) (100.0)	432 (3.4) (100.0)	4,598 (36.6) (100.0)	12,558 (100.0) (100.0)
공공기관(공기업)	114 (1.5)	1 (0.2)	21 (0.4)	136 (1.1)
국가(공무원)	81 (1.1)	8 (1.9)	0 (0.0)	89 (0.7)
국가(비공무원)	24 (0.3)	1 (0.2)	6 (0.1)	31 (0.2)
민간기업	2,920 (38.8)	109 (25.2)	1,047 (22.7)	4,076 (32.4)
비영리기관	1,525 (20.2)	197 (45.6)	603 (13.1)	2,274 (18.1)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76 (3.7)	28 (6.5)	20 (0.4)	320 (2.6)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493 (6.5)	26 (6.0)	183 (4.0)	690 (5.5)
직업재활시설	868 (11.5)	14 (3.2)	1,607 (34.9)	2,459 (19.6)
표준사업장	1,227 (16.2)	48 (11.1)	1,111 (24.1)	2,351 (18.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3. 자격증 취득 현황

근로지원인 중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근로지원인DB 상 자격증 사항은 크게 10가지 분류 코드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근로지원 이력자'는 제3유형의 4에 해당하며, '관련 기관 종사자'는 제3유형 3에 해당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제3유형의 2에 해당된다. '수어업무 종사자'과 '점역교정업무 종사자'는 제2유형 2, 4에 해당된다. '학위소지자'는 제3유형 1에 해당된다. '한국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는 제2유형 1, 3, 5에 해당된다.

〈표 2-14〉 근로지원인 지원유형 및 자격 기준과 분류코드

구분	자격 기준	분류코드
제1유형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
제2유형	1. 한국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한국수화통역사]
	2.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어업무종사자]
	3.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점역교정사]
	4.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업무종사자]
	5.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속기사]
	6.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업무종사자]
제3유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학위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관련기관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근로지원 이력자]

주: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에 대해 근로지원인DB상의 분류 사항을 표기한 것임

자격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없음' 70.9%, '근로지원 이력자' 18.8%, '자격증소지자' 7.9% 순이다. 지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2유형 상에서 '한국수화통역사' 27.8%, '수어업무종사자' 27.5%, '점역교정사' 12.0%이며, '점역교정업무종사자' 3.5%, '속기사' 1.9% 등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근로지원 이력자' 45.8%, '자격증소지자' 18.1% 등이다. 제2유형 상의 자격증소지자는 183명으로 전체 근로지원인의 1.5%이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 중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831명으로 이들을 합하면 총 1,014명이며 전체 근로지원인의 8.1%에 해당된다.

〈표 2-15〉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근로지원 이력자	2,367 (18.8)	252 (3.3)	9 (2.1)	2,106 (45.8)
관련기관 종사자	84 (0.7)	11 (0.1)	0 (0.0)	73 (1.6)
수어업무종사자	124 (1.0)	4 (0.1)	119 (27.5)	1 (0.0)
점역교정업무종사자	15 (0.1)	0 (0.0)	15 (3.5)	0 (0.0)
학위소지자	49 (0.4)	6 (0.1)	0 (0.0)	43 (0.9)
자격증 소지자	971 (7.9)	138 (1.8)	3 (0.7)	830 (18.1)
한국수화통역사	124 (1.0)	3 (0.0)	120 (27.8)	1 (0.0)
속기사	9 (0.1)	1 (0.0)	8 (1.9)	0 (0.0)
점역교정사	55 (0.4)	3 (0.0)	52 (12.0)	0 (0.0)
없음	8,760 (70.9)	7,110 (94.4)	106 (24.5)	1,544 (33.6)
합계	12,558 (100.0)	7,528 (100.0)	432 (100.0)	4,59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4. 동시근로 현황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지원인DB 상에서 동시지원한 근로지원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동시지원 형태는 1:2가 2,797명, 22.3%로 가장 많다.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실시한 근로지원인은 총 3,280명으로 전체 근로지원인의 26.1%이다. 근로지원인 4명 중 1명은 두 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근로지원인의 동시지원 현황

구분	1:01	1:02	1:03	합계
인원(명)	9,278	2,797	483	12,558
비율(%)	73.8	22.3	3.9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동시지원 현황을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지원을 지원받은 장애인 근로자 중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2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유형별로 동시지원을 이용한 장애인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직업재활시설은 동시지원이 단독지원에 비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공기업), 표준사업장 등에서도 동시지원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이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합산하였으며, 동시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체 유형은 직업재활시설, 민간기업, 표준사업장 순이다. 동시지원(1:2 이상)을 이용한 전체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 68.3%로 가장 높고, 자폐성 장애 9.0%, 시각장애 5.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 동시지원 이용 분포를 살펴보면, 제1유형은 1:1 이용률이 61.9%, 1:2 이용률이 29.6%로 다른 유형에 비해 1:1 이용률이 비교적 높다. 제3유형(적응지도형)은 1:2 이용률이 높았다. 전체 동시지원 이용에 대한 지원유형

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3유형이 1:2 이상의 동시근로 이용자 비중이 57.3%로 가장 많으며, 제1유형은 44.9%로 나타나고 있다. 해석 시 제2유형 동시지원 이용자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 참고되어야 한다.

직무별 동시지원 이용분포에 있어선 '단순노무 종사자',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동시지원 이용률이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종사자'의 동시지원 이용률은 비교적 낮다. 전체 동시지원을 이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단순노무종사자' 7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종사자' 10.5% 순이다.

〈표 2-17〉 장애인 근로자 동시지원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1:01		1:02		1:03		합계		동시지원 합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9,240	53.5	6,240	36.1	1,782	10.3	17,262	100.0	8,022	100.0
국가(공무원)	74	90.2	8	9.8	0	0.0	82	100.0	8	0.1
국가(비공무원)	28	71.8	2	5.1	9	23.1	39	100.0	11	0.1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59	90.6	25	8.7	2	0.7	286	100.0	27	0.3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571	79.6	125	17.4	21	2.9	717	100.0	146	1.8
공공기관(공기업)	97	52.2	62	33.3	27	14.5	186	100.0	89	1.1
표준사업장	1,999	53.4	1,394	37.2	353	9.4	3,746	100.0	1,747	21.8
직업재활시설	1,338	30.3	2,400	54.3	679	15.4	4,417	100.0	3,079	38.4
비영리기관	1,789	64.2	721	25.9	277	9.9	2,787	100.0	998	12.4
민간기업	3,085	61.7	1,503	30.0	414	8.3	5,002	100.0	1,917	23.9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표 2-18〉 장애유형별 장애인 근로자 동시지원 이용 분포

(단위: 명, %)

구분	1:1		1:2		1:3		합계		동시지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9,240	53.5	6,240	36.1	1,782	10	17,262	100.0	8,022	100.0
지체	1,482	77.8	348	18.3	76	4.0	1,906	100.0	424	5.3
뇌병변	609	75.6	164	20.3	33	4.1	806	100.0	197	2.5
시각	1,655	79.4	406	19.5	23	1.1	2,084	100.0	429	5.3
청각	483	56.9	239	28.2	127	15.0	849	100.0	366	4.6
언어	25	47.2	22	41.5	6	11.3	53	100.0	28	0.3
안면	1	33.3	2	66.7	0	0.0	3	100.0	2	0.0
신장	52	70.3	21	28.4	1	1.4	74	100.0	22	0.3
심장	8	80.0	2	20.0	0	0.0	10	100.0	2	0.0
간	1	0	0	0.0	0	0.0	1	100.0	0	0.0
장루요루	0	0.0	0	0.0	0	0.0	0	100.0	0	0.0
뇌전증	9	42.9	11	52.4	1	4.8	21	100.0	12	0.1
호흡기	9	100.0	0	0.0	0	0.0	9	100.0	0	0.0
지적	3,960	42.0	4,237	44.9	1,241	13.1	9,438	100.0	5,478	68.3
자폐성	536	42.7	518	41.3	201	16.0	1,255	100.0	719	9.0
정신	403	54.1	269	36.1	73	9.8	745	100.0	342	4.3
국가유공	7	87.5	1	12.5	0	0.0	8	100.0	1	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19〉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동시지원 이용 분포

(단위: 명, %)

구분	1:1		1:2		1:3		합계		동시지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9,240	(53.5)	6,240	(36.1)	1,782	(10.3)	17,262	(100.0)	8,022	(100.0)
제1유형 (업무보조형)	5,857	(61.9)	2,798	(29.6)	808	(8.6)	9,393	(100.0)	3,606	(44.9)
제2유형 (의사소통형)	309	(55.7)	161	(29.0)	85	(15.3)	555	(100.0)	246	(3.1)
제3유형 (적응지도형)	3,074	(42.4)	3,281	(45.3)	889	(12.0)	7,302	(100.0)	4,170	(57.3)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표 2-20〉 근로지원 직무별 동시지원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1:1		1:2		1:3		합계		동시지원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9,235	(53.5)	6,232	(36.1)	1,768	(10.3)	17,262	(100.0)	8,022	(10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0	(88.2)	3	(8.8)	1	(2.9)	34	(100.0)	4	(0.1)
전문가	416	61.8)	183	(27.2)	74	(11.0)	673	(100.0)	257	(3.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0	(54.1)	27	(36.5)	7	(9.5)	74	(100.0)	34	(0.4)
사무종사자	1,574	(85.3)	228	(12.3)	44	(2.4)	1,848	(100.0)	272	(3.4)
서비스종사자	1,548	(64.9)	690	(28.9)	149	(6.2)	2,387	(100.0)	839	(10.5)
판매종사자	66	(60.6)	34	(31.2)	9	(8.3)	109	(100.0)	43	(0.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	(9.1)	18	(81.8)	2	(9.1)	22	(100.0)	20	(0.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8	(63.1)	58	(28.6)	17	(8.4)	203	(100.0)	75	(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7	(49.6)	45	(39.1)	13	(11.3)	115	(100.0)	58	(0.7)
단순노무 종사자	4,823	(45.6)	4,474	(42.3)	1,291	(12.1)	10,588	(100.0)	5,765	(71.9)
문화예술	97	(33.0)	128	(43.5)	69	(23.5)	294	(100.0)	197	(2.5)
체육선수	459	(50.1)	352	(38.4)	106	(11.6)	917	(100.0)	458	(5.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 및 임금 현황

1. 근로시간 현황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을 분석하였다. 평가를 통해 판정된 일일 근로지원인 지원 필요시간 즉 '결정시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최소 2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8시간 39.6%, 4시간 33.3%이며, 6시간 7.3%, 5시간 5.6%, 7시간 5.6% 등이다. 판정받은 평균 결정시간은 5.9시간이다.

〈표 2-21〉 근로지원 결정시간별 분포

구분	인원(명)	비율(%)
2시간	11	0.1
2.5시간	4	0.0
3시간	757	6.0
3.5시간	92	0.7
4시간	4,183	33.3
4.5시간	55	0.4
5시간	704	5.6
5.5시간	17	0.1
6시간	917	7.3
6.5시간	15	0.1
7시간	693	5.6
7.5시간	139	1.1
8시간	4,971	39.6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장애유형별로 판정된 평균 결정시간은 다음과 같다. 10인 미만으로 나타난 장애유형은 제외하고 살펴보면, 청각 7.2시간, 시각 6.9시간, 지체 6.5시간, 지적 5.4시간, 자폐성 4.8시간 등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2〉 장애유형별 평균 결정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간	국가유공	뇌병변	뇌전증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인원	1	8	771	13	2,047	66	6	2
평균 결정시간	3.0	6.6	5.8	5.5	6.9	5.7	6.7	8.0
구분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인원	36	803	464	5,855	1,806	671	9	
평균 결정시간	6.4	4.8	5.5	5.4	6.5	7.2	7.3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근로지원인 지원유형별 평균 결정시간이다. 제1유형은 6.2시간, 제2유형 7.6시간, 제3유형은 5.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2-23〉 근로지원 지원유형별 평균 결정시간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인원(명)	7,528	432	4,598
평균 결정시간(시간)	6.2	7.6	5.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분석시점에서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근무한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누적백분위 근로시간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115.8시간, 중위값은 120시간이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95.5시간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이하자면, 근로지원인의 월 근로시간의 하위 25%는 76시간 이하 근로했으며, 절반이 120시간 이하 근로했다. 상위 25%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40시간 4.345주 근무 시 최대로 근무시간인 173.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상위 15%에 근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4〉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백분위별)

Percentiles			
1%	0~9.0시간		
5%	0~33.0시간		
10%	0~56.0시간	Obs	12,558명
25%	0~76.0시간	Mean	115.84시간
		Std. dev.	48.08시간
50%	120.0시간		
75%	160~187시간	최소값	2.0시간
90%	176~187시간	최대값	195.5시간
95%	184~192시간		
99%	184~195.5시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근로지원인이 실제로 근로한 월평균 근로시간을 10시간 단위로 분절한 분포를 확인한 결과이다. 160~170시간 미만 10.9% 170~180시간 9.6%, 60~70시간 8.7%이다.

〈표 2-25〉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근로시간 구간별)

구분	인원(명)	%
20시간 미만	302	2.4
20~30시간 미만	222	1.8
30~40시간 미만	199	1.6
40~50시간 미만	332	2.6
50~60시간 미만	424	3.4
60~70시간 미만	1,024	8.1
70~80시간 미만	858	6.9
80~90시간 미만	1,153	9.2
90~100시간 미만	711	5.7
100~110시간 미만	424	3.4
110~120시간 미만	538	4.3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5〉 (계속)

구분	인원(명)	%
120~130시간 미만	731	5.8
130~140시간 미만	763	6.1
140~150시간 미만	641	5.1
150~160시간 미만	816	6.5
160~170시간 미만	1,366	10.9
170~180시간 미만	1,205	9.6
180시간 이상	849	6.8
합계	12,558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2. 임금 현황

가. 월평균 임금 및 결정시간별 임금 분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1월부터 7월까지 근로지원인DB 상에서 분석시점에서 급여 지급이 완료된 근로지원인 11,724명에 대해 급여를 분석하였다.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6,567원이다. 최저 24,650원, 최고 3,322,427원이다. 중앙값은 1,704,794원이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에 대해 누적백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임금 분포 중 하위 25%는 1,064,880원 이하이며, 상위 25%는 2,052,852원 이상으로 전체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임금의 상위 25% 이상부터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정받은 결정시간별 월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을 분석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다. 결정시간이 증가할수록 급여도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급여 상승률이 더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4시간과 8시간 간의 급여 차이를 보면, 결정시간 4시간의 경우 단독지원에 비해 1:2는 28

만 원, 1:3은 37만 원 임금이 높다. 8시간의 경우 단독지원에 비해 1:2는 41만 원, 1:3은 72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지원유형 및 동시지원별 임금 분포

지원유형별 급여를 살펴보면, 제2유형이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임금가산으로 인해 월평균 급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격증 수당으로 인한 임금가산이 없는 제1유형과 제3유형이 경우, 단독지원은 제1유형이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3유형은 동시지원 시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3 동시지원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 112.6시간으로 제1유형의 근로시간에 비해 길고, 평균 급여는 1,834,106원으로, 1:1 지원에 비해 29만 원 정도 급여가 높다.

〈표 2-26〉 근로지원인 백분위별 월평균 급여 분포

(단위: 만원, 명)

Percentiles	전체	1:1	1:2	1:3
1%	207,060	187,340	340,763	369,750
5%	670,480	597,516	851,904	961,350
10%	816,408	788,800	958,392	1,017,552
25%	1,064,880	1,025,440	1,214,752	1,266,024
50%	1,704,794	1,666,340	1,755,080	1,725,500
75%	2,052,852	2,050,880	2,248,080	2,326,960
90%	2,153,424	2,129,760	2,468,944	2,641,494
95%	2,390,064	2,129,760	2,555,712	2,750,940
99%	2,563,600	2,395,980	2,865,711	3,218,306
사례수	11,724	8,661	2,621	422
평균	1,576,567	1,526,290	1,710,454	1,767,807
표준편차	582,441.4	566,042.8	599,125.2	632,976.8

주: 누적백분율 중 50% 미만은 최대 월평균 급여이며, 50% 이상은 최소 월평균 급여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표 2-27〉 근로지원 결정시간별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단위: 명, %, 시간, 원)

구분	인원	비율	전체		1:1		1:2		1:3	
			월평균 근로시간	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평균 급여
2시간	11	0.1	89.2	1,288,433	91.9	1,246,304	84.5	1,362,159	-	-
2.5시간	4	0.0	64	785,102	64.0	785,103	-	-	-	-
3시간	716	6.1	83.5	1,167,600	82.6	1,079,543	85.5	1,288,923	81.0	1,272,003
3.5시간	86	0.7	102.3	1,434,670	102.6	1,379,111	111.4	1,636,698	79.5	1,238,712
4시간	3,923	33.5	91.2	1,249,544	88.9	1,160,765	96.5	1,442,268	95.8	1,535,393
4.5시간	46	0.4	77.1	1,024,143	77.4	1,001,043	64.8	1,023,797	136.0	1,927,137
5시간	664	5.7	96.6	1,354,983	93.9	1,227,894	100.9	1,514,489	99.4	1,649,840
5.5시간	18	0.2	107.8	1,502,555	98.2	1,288,866	124.2	1,825,086	140.0	2,454,154
6시간	874	7.5	111.9	1,580,976	106.9	1,407,232	118.3	1,789,914	120.6	1,969,910
6.5시간	14	0.1	114.4	1,640,028	115.9	1,479,822	112.6	1,728,176	117.0	1,984,228
7시간	654	5.6	129.7	1,798,594	127.8	1,664,059	132.6	2,033,747	140.0	2,285,135
7.5시간	130	1.1	134.1	1,798,360	132.3	1,743,559	146.0	2,290,434	171.5	2,477,654
8시간	4,584	39.1	141.9	1,923,286	141.0	1,860,822	147.0	2,272,299	151.6	2,581,790
합계	11,724	100.0	115.1	1,576,567	116.1	1,526,290	112.7	1,710,454	108.4	1,767,80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2-28〉 근로지원 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단위: 명, %, 시간, 원)

구분	인원	비율	전체		1:1		1:2		1:3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월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제1유형	6,808	58.7	116.7	1,565,180	118.1	1,536,552	112.6	1,687,838	103.5	1,658,189
제2유형	414	3.6	135.2	2,108,300	134.3	1,998,677	137.8	2,454,479	140.9	2,700,933
제3유형	4,377	37.7	111.3	1,546,025	110.4	1,453,478	113.1	1,703,641	112.6	1,834,106
합계	11,599	100.0	115.1	1,576,567	116.1	1,526,290	112.7	1,710,454	108.4	1,767,80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장애유형 및 기관유형별 임금 분포

장애유형별 월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를 검토한 결과이다. 장애유형별 10인 미만을 제외하면,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및 시각장애는 제2유형의 지원을 받는 장애유형으로 근로지원 급여에 가산이 있으므로 급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9〉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단위: 명, %, 시간, 원)

구분	인원.	비율	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급여
간	1	0.0	57.0	739,500
국가유공	8	0.1	133.0	1,712,879
뇌병변	704	6.0	103.7	1,370,939
뇌전증	12	0.1	108.0	1,481,104
시각	1,861	15.9	126.4	1,685,125
신장	65	0.6	111.4	1,482,734
심장	6	0.1	111.8	1,559,523
안면	1	0.0	184.0	2,129,760
언어	34	0.3	110.7	1,467,421
자폐성	750	6.4	99.2	1,369,569
정신	436	3.7	120.6	1,660,555
지적	5,550	47.3	112.5	1,562,205
지체	1,668	14.2	116.0	1,532,721
청각	618	5.3	130.3	1,935,553
호흡기	9	0.1	151.2	1,813,145
합계	11,723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기관유형별 근로시간과 급여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표준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길며, 급여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표 2-30〉 기관유형별 근로지원인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분포

(단위: 명, %, 시간, 원)

구분	인원	%	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급여
공공기관(공기업)	127	1.1	117.7	1,592,372
국가(공무원)	82	0.7	129.5	1,771,362
국가(비공무원)	31	0.3	93.2	1,208,900
민간기업	3768	32.1	109.4	1,473,341
비영리기관	2,135	18.2	110.4	1,506,017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99	2.6	128.2	1,712,225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653	5.6	123.1	1,613,375
직업재활시설	2,390	20.4	114.4	1,639,496
표준사업장	2,217	18.9	125.5	1,720,901
합계	11,720	10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관리DB 재분석

3.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 결과

근로지원인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근로지원인 당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4명의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층인터뷰 참여자 및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1〉 심층인터뷰 참여 근로지원인 사항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장애인 근로자 장애유형
근로지원인 A	여성	30대	5년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B	여성	50대	4년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C	여성	20대	3년	뇌병변장애인
근로지원인 D	여성	40대	10년	시각장애인

가. 자격조건에 관한 의견

최근 근로지원인 자격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희망해도 즉각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 근로지원인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급여는 적지만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60이 넘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어디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4대보험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안 오죠. 어디를 가도 이 돈은 버는데. 근데 또 근로지원이 취업이 또 강화됐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근로지원 활동을 1년 이상 하신 분, 뭐 하신 분, 뭐 하신 분 하니까 이제는 더 못 들어와요. 잘 부탁해서 모시고 오면 와서 잘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로지원인 B)

> 가족이 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오랫동안 돌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애인을 돌)봤던 게 있으니까 잘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력이 안 돼서 못 뽑히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의 장애가 있어서 그만큼 장애를 이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이쪽 관련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못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세요. (근로지원인 A)

나. 근무조건에 관한 의견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따라 매월 최종적 근무시간의 총량이 결정된다. 일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나 이틀을 비자발적으로 쉬는 경우 월급여총액이 차감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의 근무 시간 중에 불가피한 개인용무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 근로지원인의 근로도 중단된 상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이 국한된 건데 (장애인)이용자 선생님이 쉬시게 되면 내가 내 연차를 써서 쉬어야지만 내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쉬게 돼가지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요) 그래서 활동지원사업과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하루 쉬면은 하루 정도면 괜찮은데 (장애인이용자) 연차가 만약 많이 남아 있어서 저 한 4일 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4일 근무가 그냥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근로지원인 A)

8시간 근무하는 거다 보니까 8시간을 다 빠지게 되면 거의 한 8만 원 정도 하루치 급여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다행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빠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근로지원인 B)

주변의 근로지원인분들을 보면, 지금 수능 곧 있어가지고 (장애인)교사분들이 한 달 정도 점역교정사로 출장을 들어가시거든요. 단독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지금 두 분(의 근로지원인)이 급여가 없으신 상태로 한 달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조금 소진해서라도 급여를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해도 5일 중에 하루라도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주잖아요. 근데 5일 내내 내 연차를 써도 주휴수당은 안 나오는 형태니까 급여가 줄어가지고 그리고 다 연차로 쓸 수도 없고 한 달 치를, 그래서 출장 들어가시기 전부터 그 해당하는 근로지원 선생님이 계속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로지원인 D)

사실상 저희는 근무하는 형태인데 급여는 종료가 된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중간에 만약에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장애인 이용자분이) 병원에 가신다, 그러면 근무시간을 끊고 복귀하시면 다시 근무 시작되는데 그럼 중간에 그럼 난 여기 있어도 근무하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근로지원인 D)

계획에 없는 조퇴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계실 때도 있고 근데 또 이용자분도 불편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조퇴하거나 연차를 쓰면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시간과 급여가 준다는 걸 아니까 그분들도 부담스럽고 미안하다고 눈치 보시고 또 덩달아 저도 불만이죠. (근로지원인 D)

앞으로 3유형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8시간을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전 오후가 다 있어서 8시간을 구한다고 하면 좀 낫지만 4시간만 해서 구한다고 하면 일단 젊은 사람은 지원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간에 학교에 갈 시간에 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좀 젊은 엄마들은 오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기 힘들 장벽일 것 같아요. (근로지원인 B)

다. 동시지원 및 업무에 관한 의견

인터뷰에 참여한 근로지원인은 동시지원에 따른 업무의 가중이 개별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문제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직종이나 직무, 업무환경에 따라 동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동시지원을 거부하는 부모들에 대해선 동시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납득되지 못해 저항감이 생길 수 있으며, 동시지원에 대한 거부로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신규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수행기관, 사업을 위탁하여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부모들 사이에서 근로지원인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인해 근로지원인이 업무상에 혼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지금 신규 선수들은 아예 일대일이 안 되고 그러니 일대일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1대 1이어야 된다. 우리 애 보는 선생님이 다른 누군가를 봐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절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1대 1만 해야 하니까 이 엄마들이 강력해서 우리 애만 해주세요. 우리 애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해요. (근로지원인 B)

이게 장애인들은 성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라고 하시는데, 고용공단에서 원하는 바는, 근로자 대신에 뭐 해주지 마세요. 뭐 해주지 마시라고 하고 근무지에서는 반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근로지원) 선생님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있구나 그걸 받아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지원인 B)

부모님들이 동시지원을 원하지 않아요. 또 한 번 들어오면 근로지원을 계속 받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근로지원)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과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앞으로 사실은 일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있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한편으로 되게 많아요. (근로지원인 B)

아는 업체에 동시지원을 2대 1로 하는 데 장애인 이용자가 4명이에요. 선생님 두 분인데 선생님 한 분이 연차를 냈어요. 그러면 이 4명은 1명 선생님이 지원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지원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은 그냥 장애인 이용자 4명을 계속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잘 근무하고 있는지만 봤다는 거예요. (근로지원인 A)

라. 급여 및 처우에 관한 의견

장애인 이용자의 근무시간이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근로지원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월 급여가 일정치 못함으로써 근로지원인 해당 급여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덥거나 추울 때도 어쨌든 나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도와주고 또 들어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급여는 최저시급밖에 안 되고 솔직히 세금 다 떼고 나면 180, 190도 잘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왔다 갔다 버리는 교통비도 있고 또 밖에서도 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다 빼면 나한테 남는 돈은 거의 없는 거죠. (장애인) 선생님이 휴가라도 가시면 이제 150 이렇게 더 막 내려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취하고 있어서 이제 항상 내야 되는 고정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갑자기 돈이 막 빠져버리면 저만 해도 좀 힘들죠. 사실은 당황스럽죠. (근로지원인 C)

(근로지원인은) 너무 돈이 작으니, 활동보조는 아무리 못해도 예를 들어서 시간상 월 120시간 이 정도 되니까 수입이 거의 더블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로지원인 B)

사실 8시간 (근무하는 근로지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무업무 쪽, 이렇게 있어야지 8시간인 거지 그렇죠. 아니면 안마업인데 안마업은 공고 올라온 거 보면 휴무가 너무 좀 제각각이에요. 목요일, 일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휴무가 좀 거기는 좀 제각각이니까 젊은 사람은 좀 안 가게 되고 어머님들이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나머진 체육선수는 4시간, 한 주 20시간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이 오기에는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근로지원인 A)

제 3 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자격제도 및 현황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1. 자격제도

가. 사업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며 동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서비스 수급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 이용자 규모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07년 296억 원에서 2022년 17,405억 원으로 지원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22년 110,77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급여량은 2021년 181.0만 원에서 2022년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www.kead.or.kr 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1〉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단위: 억 원, 명, 만원)

구분	예산	지원규모 (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2018	7,194	78,202	131.0
2019	10.034	86,730	160.3
2020	13,057	93,115	170.0
2021	15,217	102,575	181.0
2022	17,405	110,778	200.0

주1) 2022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3)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됨
자료 : 2023 장애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

2022년 말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39,509명이며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55,412명(39.7%)으로 가장 많으며, 자폐성장애 20,190명(14.5%), 뇌병변장애 19,944명(14.3%), 지체장애 18,869명(13.5%), 시각장애 13.443명(9.6%) 순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34,499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10명으로 나타났다.

〈표 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019		105,569	14,857	12,123	612	477	42,090	14,702	15,226	2.607	2,190	50	295	26	15	28	271
2020		115,017	16,045	12,461	729	704	45,964	16,248	16,346	3,208	2,452	57	335	31	18	43	376
2021		127,363	17,640	12,925	843	1,023	50,764	18,157	18,043	3,950	2,989	65	374	36	21	68	465
2022		139,509 (100.0)	18,869 (13.5)	13,443 (9.6)	955 (0.7)	1,385 (1.0)	55,412 (39.7)	19,944 (14.3)	20,190 (14.5)	4,634 (3.3)	3,440 (2.5)	77 (0.1)	423 (0.3)	44 (0.0)	22 (0.0)	99 (0.1)	572 (0.4)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34,499 (100.0)	17,433 (13.0)	12,914 (9.6)	877 (0.7)	937 (0.7)	55,412 (41.2)	17,725 (13.2)	20,190 (15.0)	4,618 (3.4)	3,380 (2.5)	74 (0.1)	414 (0.3)	22 (0.0)	22 (0.0)	47 (0.0)	434 (0.3)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10 (100.0)	1,436 (28.7)	529 (10.6)	78 (1.6)	448 (8.9)	- -	2,219 (44.3)	- -	16 (0.3)	60 (1.2)	3 (0.1)	9 (0.2)	22 (0.4)	- -	52 (1.0)	138 (2.8)

주: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 : 2023 장애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자격기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이며, 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 활동보조급여를 지원하는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근로지원인과 가장 유사한 인적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보고서에서는 활동보조급여 및 활동지원사 현황 등을 검토해 근로지원인과 비교하고자 한다.

〈표 3-3〉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2024년 8월 말 검색)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다.[11)]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자격시험제도는 없으나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준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이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5일간 진행된다.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1개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교육시간은 32시간이며 1일 8시간 4일간 진행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최종 교육이수증은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하면 발급된다. 현장실습은 교육이수자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접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이용자(장애인)와 연계가 확정된 시점에 진행한다.

---

11) 1)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별도의 결격사유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①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②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③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4〉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현장실습
표준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희망자		40시간	교육이수 후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전문교육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32시간	
	유사 경력자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자립 지원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활동보조기관(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 등),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 기관이 있다. 활동지원기관수는 현재 1천여 개소이다. 활동지원기관을 급여유형별로 보면 활동보조 912개소, 방문간호가 150개소, 방문목욕이 27개소로 나타났다.

활동지원사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활동보조기관의 세부유형은 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IL)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수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유형별)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자활센터	노인장기	사회복지관	기타복지시설	기타
1,089	912	150	27	996	96	114	145	60	25	29	96	431

주: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 : 2023 장애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

2022년 말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139,509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09,24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94.6%인 103,3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윤화 외(2023)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2011년 3.1만 명에서 2021년 9.8만 명으로 3배 정도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으며 초기 장애인 당사자 1명당 0.5명에서 현재 0.7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1:1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34.4% 등이다. 활동지원사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전체 활동지원사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및 제공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수	등록인원	활동인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비율
2011	46,502	31,234	23,653	0.5
2012	50,520	42,467	28,003	0.6
2013	60,435	67,823	40,448	0.7
2014	64,906	56,531	46,812	0.7
2015	72,212	61,366	52,761	0.7
2016	79,926	64,145	58,102	0.7
2017	86,526	68,167	62,629	0.7
2018	94,496	72,981	68,673	0.7
2019	105,569	82,448	78,044	0.7
2020	115,017	88,551	84,854	0.7
2021	127,363	98,873	95,046	0.7
2022	139,509	109,243	103,378	0.7

자료: 2023 장애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7〉 활동지원사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활동지원 수급자수	활동지원사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2	109,243	100.0	103,378	100.0	139,509	0.7
남성	13,706	12.5	12,761	12.3	86,079	-
여성	95,537	87.5	90,617	87.7	53,430	-
20대미만	56	0.1	49	0.0	37,915	-
20대	1,651	1.5	1,508	1.5	16,722	-
30대	4,354	4.0	3,998	3.9	9,830	-
40대	18,793	17.2	17,684	17.1	8,700	-
50대	42,334	38.8	40,249	38.9	12,706	-
60대	37,382	34.2	35,513	34.4	7,747 (60~64세)	-
70대이상	4,673	4.3	4,377	4.2	4,588 (65세 이상)	-

자료 : 2023 장애통계연보(김현지 외, 2023)

제2절 점역교정사

1. 자격제도

점역교정사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점자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점역자료를 직접 점자로 입력하거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여 점역 프로그램으로 변환 작업을 한다. 도표나 그림 등을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 써서 점자로 표현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점역사와 교정사를 통합한 점역·교정사를 민간자격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승인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유형 및 숙련된 과목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한다. 점역교정사 자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관리운영하며, 연합회장은 검정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해 출제위원, 시험감독위원, 채점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표 3-8〉 점역교정사 자격제도

구분	내용
자격명	점역·교정사
등급	1급, 2급, 3급
자격의 종류:	등록(공인) 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표 3-9〉 점역교정사 자격 및 시험과목

구분	응시자격	검정기준
1급	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영어 과목 응시자 또는 영어 과목 취득자 중 다른 과목 응시자	2급 합격자 중 영어와 다른 1개 과목(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3급 소지한 자로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급	제한없음	국어 과목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8)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점역교정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역교정사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각 과목 영역별 100분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표 3-10〉 점역교정사 검정과목 및 검점방법

구분		내용
검정과목		국어,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중국어, 일본어의 6개 과목으로 구분한다.
시간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한다.
검정 방법	필기시험	국어 과목의 점자상식 분야 시험
	점역실기	묵자를 점자로 옮긴다.
	교정실기	점자로 오기된 부분을 제시하고 바로 잡아 점자로 표기한다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8)

〈표 3-11〉 점역교정사 검정과목 및 자격유형 배점 기준

과목	자격유형구분	배점기준	
국 어	점역·교정사 (비시각장애인)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60점
		교정실기	20점
	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	점자상식	20점
		점역실기	20점
		교정실기	60점
영 어 수학/과학(컴퓨터) 음 악 중국어 일본어	점역·교정사 (비시각장애인)	점역실기	70점
		교정실기	30점
	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	점역실기	30점
		교정실기	70점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8)

2023년 기준 점역교정사 자격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역교정사 통계(2024년 5월 현재)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 1급 209명, 2급 224명, 3급 1,192명이다.

〈표 3-12〉 점역교정사 자격취득 현황

(단위: 회, 명, %)

구분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1급공인	2	144	132	22	16.67
2급공인	2	144	132	36	27.27
3급공인	2	365	344	125	36.34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검색 결과(2024년 8월 검색)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묵자를 점자로 번역, 교정하여 점자도서, 점자 인쇄물, 전자점자 파일을 제작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12] 2024년 5월 기준 전국 점역교정사는 1,625명이다[13]

점역교정사는 주로 시각장애인 기관 예컨대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 등에서 점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 3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56개소가 있다(맹학교 13개소, 복지관 15개소, 시설 13개소, 단체 15개소)[14]

점역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 문서, 안내문, 교육자료 등을 점자로 번역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자료를 번역하고, 시각장애인 등

1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8)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13)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홈페이지(2024년 8월 검색)

14)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2024년 5월 검색)

에게 점자 사용법을 교육하며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점자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한다. 점역이 완료된 점자파일을 교정사에게 의뢰하여 오탈자 및 외국어점자규정, 점자도서 제작 지침에 맞게 교정·검수하고, 교정사가 교정한 목록에 맞추어 원본 점자파일을 수정하여 도서 제작을 완료한다.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에서 점역사는 일반 서적이나 교육자료를 점자로 번역해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판 및 점자 출판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서적을 점자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점역사가 원문을 점자로 번역한다.

출판사 및 점자 출판 관련 기관에서 점역사는 서적을 점자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원문을 점자로 번역하고, 점자도서의 품질을 관리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점역사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 참고서, 시험지 등을 점자로 번역하고 시험문제를 점역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 학습을 돕고 필요한 점자 교재를 준비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점역사는 법률 문서, 공공 서비스 안내서, 공문서 등을 점자로 번역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관리하고 점자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한다. 프리랜서 점역사는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고객과 기관을 대상으로 점자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리랜서 점역사는 의뢰받은 문서, 책, 자료 등을 점자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점자 자료 제작이나 점자 교육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절 수화통역사

1. 자격제도

청각장애인은 구어를 사용하는데 제한되어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어가 개발되었으며, 수어라는 언어체계를 통해 언어적 인지적인 능력발달을 통해 학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이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얻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서원선 외, 2018).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청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 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 자격제도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연수로 구분되며 장애인복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검정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필기통역, 수어통역, 음성통역 능력을 실기시험으로 검정한다.

〈표 3-13〉 수화통역사 자격제도 개요

구분	내용
자격명	수화통역사
등급	등급없음
등록번호	2008-0648
자격발급기관	(사)한국농아인협회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14〉 수화통역사 1차 필기시험 및 2차 실기시험 전형

구분		내용
1차 필기시험	응시자격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시험과목	장애인복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 위를 충족시켰고 한국어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과목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실기시험	응시자격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필기통역, 수화통역, 음성통역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 위를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 과목 60점 이상인 자

자료: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표 3-15〉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회, 명, %)

구분	자격등급	검정횟수	접수자수	응시자수	취득자수	합격률
2021	등급없음	1	823	719	83	11.54
2022	등급없음	1	898	763	25	3.28
2023	등급없음	1	963	716	41	5.73

자료: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2022년 기준 1,973명이다.[15] 사회복지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공공기관, 수어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 등이 주요

근무지이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지역의 약 200여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수어통역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각종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등) 통역,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어통역센터는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두며,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를 두고 시군구 지회에 수어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6]

<수어통역센터의 주요 사업>

1.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의 제공
2. 법률 의료 등 전문상담을 요하는 분야의 통역
3.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일반 상담
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사후관리
5. 수어교육 및 보급 사업
6.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한국수어와 관련한 연구사업
8. 촉수어 개발 및 농맹인 통역사 양성 사업
9. 기타 본부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수어통역센터의 사업

15) 보건복지부·한국수화통역사협회(2023) "전국 시·도 수화통역사 공인자격취득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16)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2024.5.31.) 제6조(목적사업)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절 속기사

1. 자격제도

'속기'란 무형의 음성적 언어나 영상·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 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17] 속기사는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받아쓰거나 컴퓨터 속기 기계로 기록하는 일을 한다. 강의나 회의, 국회나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속기부호로 받아쓰거나 기록하고, 이를 다시 일반문자로 번역하여 내용을 수정 및 편집해서 문서로 작성한다. 기록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어려운 외래어와 전문용어는 사전이나 전문서적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확인한다[18].

속기사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빠른 타이핑 속도를 요구하는 직업으로 정확하고 빠른 속기능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속기와 수기 속기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컴퓨터 속기가 더 많이 사용되기에 속기사는 전문속기 소프트웨어와 속기기계(CAS, 소리자바, KS 표준 속기겸용 키보드)를 사용한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속기능력을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속기속도와 정확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법원, 의회, 회의,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속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속기사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되며 관련 자격증은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구분된다.

---

17)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024-2026 한글속기 출제 기준(2023.6)"

18)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백과 속기사 참조

〈표 3-16〉 속기사 자격제도 개요

구분	내용
자격명	한글속기
등급	1급, 2급, 3급
자격의 종류	국가기술자격
자격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시험과목은 실기시험으로 연설체와 논설체이며, 검정방법은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의 정확도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정확도가 90% 이상이어야 한다.

〈표 3-17〉 한글속기사 자격시험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내용/낭독분량	낭독 시간	번문 시간
1급	실기시험	연설체	1,650자 분량의 연설문	5분	10분
	실기시험	논설체	1,500자 분량의 논설문	5분	10분
2급	실기시험	연설체	1,500자 분량의 연설문	5분	10분
	실기시험	논설체	1,350자 분량의 논설문	5분	10분
3급	실기시험	연설체	1,350자 분량의 연설문	5분	10분
	실기시험	논설체	1,200자 분량의 논설문	5분	10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회, 의회, 법원, 검찰청 등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법원 속기사, 검찰 속기사, 국회 속기사, 의회 속기사를 중심으로 시험 전형은 다음과 같다.[19]

19) 이하 정부부문 속기사 선발 전형에 관한 내용은 한국카스속기협회와 한국AI속기사협

국회 속기사는 우리나라 속기사의 총본산으로 평가되며 의정기록과 1과, 2과 체계로 100여 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선발 전형은 필기, 실기, 면접 과정을 통해 선발이 진행된다. 국회직은 국회 의정기록과에 소속돼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 18세 이상이며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3급 이상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다. 9급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며 필기는 물론이고 실기와 면접 과정을 거쳐야 한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 개론이다. 2차 실기시험은 연설체 및 논설체이다. 3차는 면접시험이다.

의회 속기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근무했으며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모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등 전국 170여 개의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필기와 면접 과정을 통해 선발이 진행된다. 의회직은 의회사무국에서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만 18세 이상 지원할 수 있고,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3급 이상, 지역에 따른 거주지 제한이 있다. 지방 의회마다 자격요건이 달라지는 일도 있다. 9급 속기서기보는 사회, 행정학개론 등 2과목 혹은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등) 시험을 치러야 하며 임기제 공무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이다.

법원 속기사는 필기시험이 없는 직렬이다. 증인과 피고인 심문 때 조서를 속기록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만 18세 이상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 평가도 없이 채용되는 직무이다. 경력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법원직은 9급 일반직 속기서기보와 임기제로 구분해 채용된다. 임기제는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임기제로 경력을 쌓고 9급 일반직에 지원한다.

검찰 속기사도 필기시험 없이 면접 평가만 진행되는 직렬이다. 피의자 조사 시 조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만 18세 이상의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

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한다. 검찰직은 기간제와 7급 임기제 채용이 진행된다. 기간제는 한글속기 2급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한글속기 1급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간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표 3-18〉 정부부문 속기사 주요 근무처

구분	채용시기	채용직급	응시자격	시험방법
국회 속기사	매년 공개채용	9급속기서기보	-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학력, 경력, 거주지 제한없음	-1차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학개론 -2차 실기시험: 연설체 및 논설체 -3차 면접시험
의회 속기사	공개채용/ 수시모집	-9급속기서기보 -임기제공무원	-18세 이상 한글속기 2~3급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거주지 제한 있음	-9급 속기서기보:2과목(사회, 행정학개론) 혹은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등) 실시 -임기제 공무원: 서류전형 및 면접
법원 속기사	수시모집, 경력경쟁 채용	-9급속기서기보 -임기제공무원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학력, 경력, 거주지 제한없음	서류전형 및 면접
검찰 속기사	수시채용	-검찰주사보(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정년보장) 기간제 속기사	-18세 이상 -한글속기 2급 이상 -학력, 경력, 거주지 제한없음	서류전형 및 면접

자료: 한국AI속기사협회 홈페이지

청와대나 행정부처에도 속기사를 선발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회의도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향후 계속 정부기관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400여 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재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회의가 열리는 기관은 속기록 작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군무원 속기사는 기존 법정에서 증언 내용을 속기사가 기록하듯 군사법원에서 피고인, 증인 등의 법정 진술을 기록하고 있다. 육군을 비롯해 공군, 해군에서 군무원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군 특기별 중 하나인 속기병은 해군, 육군 본부의 주요회의, 군사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하는 현역 병사이다. 육군, 해군 속기병의 경우 실시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한글속기 2급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속기사를 통하여 강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해 속기사 자격증 취득 후 근무가 가능하다. 이 같은 학습지원 속기사 또는 교육속기사는 보통 대학교에서 많이 근무하며 속기사 월급으로 평균 200만 원 내외, 연봉 2,500~2,6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비대면 수업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속기 지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채용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또한, 한글속기 국가자격증 3급 이상 취득자면 누구나 개업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 제출용 녹취록 작성, 주주총회, 이사회, 재건축 조합회의 등의 현장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속기사무소는 각종 녹취록, 회의록 등 작은 곳에서 일이 들어오는 속기사무소는 개인의 휴대폰 녹음부터 시작해 각종 공공기관, 기업에서 업무의뢰가 들어온다. 속기사무소는 월급, 연봉 대신 시급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장으로부터 투여되는 속기업무를 하는 것

은 시간당 30만 원 내외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속기사는 자막방송 분야에서도 근무하고 있는데 방송내용을 실시간 한글자막으로 제공하는 업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현재 공중파 및 종합편성방송, 케이블 TV, 각 홈쇼핑 등 다수 방송에서 자막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자격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은 아래 <표 3-20>와 같다.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 ·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0. 9. 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현황(2024.10.14. 기준)

구분	취득건수
합계	205,644건
1급	8,602건
2급	43,461건
3급	153,581건

자료: 한국기술대학교 내부자료

2. 주요 근무지 및 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진전을 시험,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0]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표 3-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 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 부교수 · 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 · 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 ·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 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자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23.1.10.〉

www.kead.or.kr 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절 직업상담사

1. 자격제도

직업상담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 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 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 직업상담행정 업무 등이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과 구인·구직 상담, 창업 상담, 경력개발 상담, 직업적응 상담, 직업전환 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21]

〈표 3-21〉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구분	내용
자격명	직업상담사
등급	1급, 2급
자격의 종류	등록(공인) 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21)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직업상담사"

〈표 3-22〉 직업상담사 1급 시험과목 및 전형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과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 과정 및 사설학원	
시험정보	필기	실기
과 목	1. 고급직업상담학(20문제) 2. 고급직업심리학(20문제) 3. 고급직업정보론(20문제) 4. 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	직업상담실무
시 간	150분	3시간
검정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작업형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표 3-23〉 직업상담사 1급 검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필시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3	650	538	82.8	512	343	67.0
2022	622	477	76.8	459	330	71.9
2021	435	303	69.7	389	259	66.6
2020	406	291	71.7	325	72	22.2
2019	584	328	56.2	352	247	70.2
소계 (2000~2023년)	5,439	3,241	59.6	3.933	1,759	44.7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3-24〉 직업상담사 2급 시험과목 및 전형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학과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 과정 및 사설학원	
시험정보	필기	실시
과목	1. 직업상담학(20문제) 2. 직업심리학(20문제) 3. 직업정보론(20문제) 4. 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	직업상담실무
시간	150분	2시간 30분
검정방법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필답형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표 3-25〉 직업상담사 2급 종목별 검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2023	16,060	9440	58.8	11,479	5,187	45.2
2022	18,059	8,778	48.6	13,011	4,937	37.9
2021	24,155	13,364	55.3	16.135	7.731	47.9
2020	19,074	11,827	62.0	15,701	7,241	46.1
2019	22,283	11,690	52.5	15,119	6648	44.0
소계 (2000~2023년)	358,847	172,543	48.1	231.123	79,759	34.5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직업상담사의 주요 근무지는 고용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자리 위탁 사업 및 센터 등이며, 9,75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나 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283개소에 3,06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직업상담서비스 운영기관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운영형태	기관수	종사자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		자체/위탁	527	4,200*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152	2,280*
	청년일자리지도약지원(22년신규)		위탁	-	934+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	위탁	12	83
		기타	위탁	19	12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위탁	100	310
소계				810	7,927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159	1,3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자체	27	83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	26	10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자체	10	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체	4	5
소계				222	1,830
지자체	일자리센터		자체	248	1,291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및 센터		자체/위탁	14	81
	경기도일자리재단		자체	1	66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체/위탁	20	92
소계				283	3,068
전체				1,319	10,000*

주: *는 추정치임

자료: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2) 민간고용서비스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및 수요전망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 4 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사례분석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 산정 기준

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황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며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활동지원(목욕 도움, 세면 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등을 수행한다.

〈표 4-1〉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세부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자료: 보건복지부「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나.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비용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2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급여비용[23]은 2024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4]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급여비용은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동일 장애인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적용한다.

가산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이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25] 원거리 교통비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대상 지역[26]에 거주하는 수급자

---

22)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일부개정]

2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 활동보조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로 다르다.

2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설날 전날~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추석 다음 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25) 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산정한다.

26)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에 의한 섬·벽지 및 시·군(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 지역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표 4-2〉 활동보조 급여 및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산정 기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활동보조 급여비용과 최저임금 및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75%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비교하면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16,150원,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활동보조 급여비용 75%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81.4%이다.

〈표 4-3〉 2021년~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단위 : 원, %)

연도	활동보조 급여비용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75%	최저임금	활동보조 급여비용 75%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21년	14,020	10,515	8,720	82.9
2022년	14,800	11,100	9,160	82.5
2023년	15,570	11,678	9,620	82.3
2024년	16,150	12,113	9,860	81.4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급은 최저임금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금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법정 인건비를 살펴보았으며,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개선 방안 연구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분석하였다.[27)]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적용된다.[28)]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1/5로 책정할 수 있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최저시급의 20%인 1,972원이며, 이것은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12.2%에 해당한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11,832원이고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73.26%이다.

연차유급휴가[29)]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

27) 이송희 외(2023)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제5장 서울시 활동지원사 인건비 현황 및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2024년 활동지원급여를 분석함

2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9)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송희 외(2023)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32.4개월(2.7년)이고, 2013년 기준 장애인활동보조 연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은 54,504,128.5시간이다. 연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인원 34,547.8명으로 평균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577.64시간이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0.26시간이다[30)]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90.78시간이고, 2024년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895,091원이다. 이를 연평균 근로시간 1577.64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면 매시간 56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간급은 12,399원이 된다. 최저시급,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12,399원이고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76.7%이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2024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아래 표와 같다. 이송희 외(2023)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활동지원기관수 175개소, 서울지역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총 28,800명 기준으로 활동지원기관 1개소당 평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164.57명으로 산출하였다. 이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적용하여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보험료율 0.45를 적용하고, 산재보험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 대비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 분담금 포함)을 적용하면, 0.726%로 산출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0) 이송희 외(2023), p.126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4〉 2024년 4대보험 보험료율

(단위: %)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4591	0.4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산재보험			0	0.726*

주*: 산재보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임금채권부담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대비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 10.5801%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1,311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13,711원이고,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84.90%이다.

〈표 4-5〉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추정)

(단위: 원, %)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합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비율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소계			
16,150	9,860	1,972	567	12,399	1,311	13,711	84.9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1]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은 인건비의 8.22%이므로(이송희 외, 2023),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19원(12,399원×8.22%)이다.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4,730원이고,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91.21%이다.

〈표 4-6〉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추정)

(단위: 원, %)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합계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비율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소계				
16,150	9,860	1,972	567	12,399	1,311	1,019	14,730	91.21

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산출 내역이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음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임차료,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운영비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2024년부터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정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을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2024.6)」는 법정인건비 산정 조건을 아래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활동급여에서 인건비를 75%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개별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인건비 지급 형태는 기본 최저시급만 정해놓고 그 외 법정수당은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경우(비포괄), 활동급여 75% 금액한도로 기본 최저시급과 제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결정하는 경우(포괄)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실태는 사례조사 분석에서 살펴본다.

〈표 4-7〉 서울특별시「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2024.6)」법정인건비 산정 조건

산정 조건		내 용
1일/1주 근무 인정 기준		· 00시~다음날 00시 / 월요일~일요일
기본급		· 시급 9,860원×근로시간
주휴 수당		· 주휴일 : 월~일요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공휴일 제외) 월~일요일 모두 근로 시 7일째인 일요일 휴일근로
법정 제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 1주 40시간 초과근로(휴일근로 제외) 150% 지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22시~다음날 06시의 근로, 50% 가산 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 주휴일 : 월~일요일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공휴일, 대체공휴일 : 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급 - 소정근로시간 이내 : 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 이내 근로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200% 지급 · 근로자의 날 :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8시간 한도) - 소정근로시간 이내 근로 250% 지급 - 소정근로시간 초과 8시간 이내 근로 150% 지급 8시간 초과 근로 200% 지급
중증 가산수당·원거리 교통비		·퇴직금 부담분(8.33%)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10.99%) 제외 세전 기준 전액 지급

주1: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정인건비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

주2: 해당 기준은 개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법정인건비가 아님

- 본 법정인건비만 지급하는 경우 개별 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법정인건비 산정기준은 다수 활동지원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최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주요 직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체적 및 사회적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로는 목욕, 구강 관리, 세면, 배설, 옷 갈아입히기 등의 개인위생 지원, 체위 변경과 운동 보조를 통한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준비 및 보조, 휠체어 이동과 실내 이동 지원이 포함되고, 주거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세탁, 식재료 준비, 조리 및 설거지 등의 가사활동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학교나 직장으로의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산책, 물품구매, 병원 방문 등 외출 시 동행과 같은 사회활동 지원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산정 기준

①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은 시간급으로 구성되며, 시급은 해당연도(2024년 9,860원)의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급 외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유 발생 시 지급하며, 법정수당 외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교육수당(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으로 명절선물, 종합검진 및 전신초음파(44만 원), 독감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고, 야간근로 시에도 50% 가산된다. 휴일근로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고, 근무할 경우에는 250%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

법에 따라 발생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연차 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매 1년이 되는 해당월 기준으로 산출된 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개월 평균 근로시간에서 시급을 곱한 후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개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가 활동급여 75%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인건비를 활동급여 75% 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임금(기본급)은 시급제로 하며, 단가는 12,120원, 시급은 9,86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 1,972원, 법정제수당 288원"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4년 활동보조 급여비용 16,150원의 75%인 12,120원을 기본임금으로 산출하여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산출한 후 12,120원과의 차액은 법정제수당으로 분할하였다.

〈표 4-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구성

구분	2024년 활동급여 (바우처 수가)	통상시급	주휴수당	법정 제수당	합계
금액(원)	16,150	9,860	1,972	288	12,120
지급비율(%)	100	61	12	2	75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1,972원 및 법정제수당 288원을 합한 2,260원을 지급하며, 휴일근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고, 근무할 경우에는 250%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5개가 발생하고,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 평균 근로시간에서 시급을 곱한 후 미사용 연차개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정수당 외에 복리후생으로 명절선물, 연말 식사 쿠폰,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③ 지역자활센터 사례

서울○○지역자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에서 "기본시급을 9,860원으로 하며 매월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내역에 따라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산정하되 본 사업의 지침에 따라 총급여는 수가의 75% 이상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표기하고 있다.

〈표 4-9〉 서울○○지역자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구성

적용기간	기본시급	주휴수당	법정제수당
2024.01.01.~2024.12.31	9,860원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	별도 산정

주: 법정제수당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 순으로 적용한다.

서울○○지역자활센터는 기본시급 외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사유 발생 시 지급하며, 법정수당 외 지급하는 수당은 없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고, 야간근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고,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계획표에 관공서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계획표에 근무일로 표시한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 근무 시 250%를 지급하고 근무일이 아니었으나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150%를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연차 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된 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월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개월 평균 근로시간에서 시급을 곱한 후 미사용 연차 개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연말에 지급 시에는 1년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한다.

서울○○지역자활센터는 주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등으로 개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가 활동급여 75%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 금액을 지급하여 인건비를 활동급여 75% 이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법정수당 외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매월 10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3개 기관 모두 활동급여 대비 인건비 비율을 75% 이상 지급하고 있으나, 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관공서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계속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매년 15개의 연차만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근로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수당 지급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0〉 실태조사(3개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조건

구분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서울○○지역자활센 터
임금 구성항목		<비포괄임금> ·시급 : 9,860원	<포괄임금> ·통상시급 : 9,860원 ·주휴수당 : 1,972원 ·법정제수당 : 288원 = 기본단가 : 12,120원	<비포괄임금> ·기본시급 : 9,860원
주휴수당		지급	지급	지급
관공서 공휴일 근로수당	근로X	무급	무급	무급
	근로O	250%	250%의 50%	근무계획표상 근무일 : 250% 근무계획표상 미 근무일 : 150%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름	매년 15일	근로기준법에 따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15개 한도로 지급	지급
법정외 수당		교육수당 (시간당 1만원)	-	장애인 : 매월 10만원
복리후생		명절선물, 종합검진 및 전신초음파, 독감예방접종 비용 지원	명절선물, 연말 식사 쿠폰,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활동급여 대비 인건비 비율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다. 신체적 지원을 한다는 것과 장애인과의 밀접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개인위생 관리, 가사활동, 사회적 활동 지원이 포함되나 근로지원인은 주로 직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업무 도구 사용보조, 직장 내 이동, 직무 관련 의사소통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업무강도 측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노동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직무환경에 맞추어 업무 지원을 하므로 신체적 부담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지원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 및 직무 환경에 따라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지원인과 급여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사업비가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형태이다. 근로지원인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수행기관에 지원되므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기관에 총사업비 형태로 지급되므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인건비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표 4-11〉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비교

구분	근로지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기본시급	9,860원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지급 (인건비 75% 이상)
주휴시간 법정 의무교육 연차시간* 유급휴일시간**	각 사유 발생 시 공단 지급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금	공단 별도 지급	
퇴직금	공단 사업운영비에 반영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공단 사업비 미포함	

주*: 연차사용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지원
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지원

근로지원인 법정 인건비는 항목별 명확히 구분되어 지원되므로 법 기준에 따른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근로지원인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운영비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행기관 운영비로 지급되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 11,832원은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73.26%에 해당하므로,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75%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288원을 법정 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례조사 결과 대다수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로 75%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법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 측면에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모두 최저임금을 기본 시급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지원인은 인건비 사용 항목이 구분되어 지급되므로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법정수당을 100% 지급받는 사례는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는 드물었다.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근로지원인에 비해 높다는 인식이 있는데 근로지원인이나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금 산출 기준은 동일하므로 동일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활동보조급여의 75%로 권장되고 있으므로 근로지원인의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 대비 더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오인되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2024년 12,399원이고 활동보조급여 대비 76.7%이어야 하는데 일부 포괄임금제 기관에서 법정 제 수당을 75%를 맞춰주고 있으므로 오히려 법정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250%를 지급하는 기관이 소수이므로 법정 제 수당을 완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급여 차이는 시급 단가의 차이라기보다는 근로시간(근로총량)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따른 가산급여에 의존해 발생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지원인의 경우 본 보고서 제2절 근로지원인 유형별 실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이 115.8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서울시복지재단(2023)의 연구에서 활동지원사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0.26시간으로 산출하였다. 1주 평균 30.26시간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31.48시간이다. 월평균 시간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략 15.64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 환산 임금을 비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54,279원 정도 높은 것으로 산출된다.

〈표 4-12〉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최저임금 기준)

시급	월평균 근로시간(시간)	임금(원)
근로지원인	115.84	1,142,182
장애인활동지원사	131.48*	1,296,461

주*: 월평균 근로시간 = 주30.26시간×(365/12/7)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근로지원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동일하나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장애인활동지원사보다 낮은 편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임금도 장애인활동지원사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지원인은 근로지원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보조 급여비용 대비 약 91.21%를 인건비로 지출할 때 비로소 법정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실제로 대다수 활동지원기관이 법정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구조로 파악되므로 법정 임금을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근로지원인의 처우가 장애인활동지원사보다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4. 심층면접 결과

인터뷰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은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급여가 낮게 형성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건과 불안정한 근로조건 때문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적으며 근속기간도 짧은 경향이 있다는 등 의견이 제기되었다.

근로지원인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근로지원인 분들은 아마 근로시간이 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이 안 될 거고 또 쉬는 날은 아마 다 빨간 날은 다 쉬실 거고, 근데 활동지원은 정말 365일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날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만 꼭 제한 둘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장수당, 공휴일수당 이런 수당들이 부수적으로 발생되니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장)

(근로)시간이 짧다 보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양보호사랑 저희랑 또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쪽이 잘 안 가는 이유는 시간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똑같이 출근은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데 거기는 근무 시간이 짧고 저희는 하루에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로지원인도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에 한해서만 기본틀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차이 때문에, 이용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센터장)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를 모두 파견하는 기관에서는 두 인력 간의 비교가 가능했는데 활동지원사에 비해 근로지원인은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근로 지원 선생님들이 여기서 근무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월급 받고 그만둔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 지원했을 경우 18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1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아서 그만둔다고, 일 너무 잘하는데 그거 지금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해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 휴가일 때는 또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

제2절 점역교정사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가. 주요 일자리 및 직무내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역교정사 취업정보 게시판에 2024년 1월~8월 게시된 채용공고는 15건이며 그 중 중복해서 게시된 채용공고를 제외한 후 7건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였다.

채용공고상에 나타난 점역교정사를 구인하는 주요 일자리는 시각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점자교육기관으로 나타나며, 점역교정사의 직무는 점역, 교정 작업과 점자 자료 제작 관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점자 자료나 오디오북 제작 작업, 점자 교육 및 상담업무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시각장애인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및 자료의 점역, 교정 작업을 수행하고 점자교육 기관에서는 점자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점역교정사를 채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점역과 교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점역교정사 채용 조건은 정규직,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다양하고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은 채용공고의 채용 조건 및 근로조건을 정리한 결과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13〉 점역교정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업무 종류
○○도시각장애인 도서관	정규직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인건비 기준	주40시간	점역 및 교정
○○장애인연합회 한국○○교육문화원	계약직 (채용일 ~ 2024-12-31)	회사 내규에 따름	주40시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시각장애인 복지관 부설 학습지원센터	계약직 (1년 3개월)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준함	주40시간	교육지원사업
○○시 ○○(시각장애인) 도서관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2024-07-01 ~ 2025-01-06)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4급 ※ 부천시 생활임금(기본급 2,447,390원) 반영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별도	주40시간	해밀도서관 대체자료 제작팀 사회복지(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보급,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 비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업무
○○도서관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2024-02-01 ~ 2024-12-31)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4급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주40시간	해밀도서관 대체자료제작팀 업무 (점자 인쇄물 보급, 인식개선사업 등)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회	계약직 (2024-12-31까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주40시간	데이지제작 파일 검수 및 행정 업무
서울○○장애인 복지관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2024-03-20 ~ 2025-04-0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주40시간	대체자료팀 사원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등)

위 채용공고의 점역교정사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수행업무는 점역 및 교정(5건), 파일 검수 및 행정 업무(1건), 자료 제작 및 보급(1건)이다.

1개 기관은 임금을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공고하고, 1개 기관은 임금 기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5개 기관은 임금 적용 기준을 공고하였다. 5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임금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과 경력 인정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4-14〉 202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table>
<tr><td>적용
대상</td><td>「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 종류
<table>
<tr><th rowspan="2">소관
부처</th><th rowspan="2">시설
종류</th><th colspan="2">세부종류</th><th rowspan="2">관련법</th></tr>
<tr><th>생활시설</th><th>이용시설</th></tr>
<tr><td>보건
복지부</td><td>장애인
복지
시설</td><td>○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td><td>○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td><td>「장애인
복지법」</td></tr>
</table></td></tr>
<tr><td>적용
원칙</td><td>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td></tr>
<tr><td>기타
사항</td><td>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 본 기준은 권고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의「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상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직위별 호봉은 1호봉부터 31호봉까지이고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며 호봉은 현 시설 근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의「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상에서 제시한「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표, 호봉획정, 인정경력, 승급 및 승진을 정하고 있다.[32] 인정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미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하며,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하고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고 정하고 있다.[33]

---

32)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서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33)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

〈표 4-15〉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원)

직위 (호봉)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관리직	기능직
	(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	-
	(장애인)이용시설_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	-
1호봉		2,795,900	2,639,8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93,900	2,087,400	2,060,800
2호봉		2,891,300	2,726,3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54,000	2,124,100	2,084,300
3호봉		2,989,300	2,824,500	2,692,600	2,444,600	2,330,900	2,219,800	2,190,200	2,165,500	2,120,900
4호봉		3,100,400	2,920,700	2,789,600	2,544,000	2,394,900	2,262,000	2,232,900	2,205,400	2,160,000
5호봉		3,227,600	3,030,600	2,904,000	2,649,400	2,459,400	2,321,900	2,287,800	2,250,800	2,198,200
6호봉		3,360,700	3,150,200	3,021,400	2,758,200	2,549,300	2,381,300	2,353,800	2,289,000	2,247,600
7호봉		3,493,700	3,269,400	3,138,500	2,871,700	2,641,000	2,470,200	2,445,000	2,368,200	2,284,800
8호봉		3,631,200	3,406,700	3,272,900	2,985,700	2,737,700	2,567,900	2,534,500	2,453,400	2,345,200
9호봉		3,769,800	3,544,200	3,412,100	3,096,400	2,849,300	2,659,800	2,609,800	2,522,700	2,419,400
10호봉		3,901,500	3,678,200	3,544,000	3,214,400	2,943,000	2,740,100	2,693,000	2,610,900	2,502,300
31호봉			5,027,700	4,910,800	4,488,400	4,132,000	3,806,400	3,656,400	3,646,700	3,564,300

주1: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주2: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 3,064,300원
주3: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개별 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는 기본급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종사자 수당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하였으며,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별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6〉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 월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주요 직무

사례조사를 실시한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교정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내 점역사는 점역사 업무와 복지관 직원으로서 이용자 지원, 복지관 문서 작성 및 보고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역사 직무 중 '시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점자 지도 업무'는 학생의 학년 및 특성, 점자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점자학습지를 제작지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개별 1:1 수업(대면/온라인) 혹은 온라인 그룹수업을 진행하며,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도서 및 외국어 전공 교재 점역 업무'는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여 점역하고 외국어를 전공하는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도서를 점역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사 임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고 있다. 점역사는 일반적으로 5급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5급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서 공무원과 비교하면 9급에 상당하는 직급이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 직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고 (공무원 직급)
직급	직위		규모에 따른 경력기준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0년이상	5급
			10인 미만	25년이상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이상 15년미만	6급
			10인 미만	15년이상 25년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이상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이상	7급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미만	
	과장	과장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8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9급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9급 (96%)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9급 (93%)

주1: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 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주2: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주3: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주4: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주5: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완화
주6: '경력'이라 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말함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임금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인정 대상 경력을 준용하며 유사 경력(인정 비율 80%) 항목 중,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과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은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되었다.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 월 40,000원,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기타 부양가족 20,000원), 연장근로수당(일반직 최대 15시간, 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명절휴가비 연 2회(설, 추석) 각 기본급의 60%(총 기본급의 120%), 정액급식비 월 12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표 4-18〉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기본급)

(단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		3,030,000	2,561,000	2,374,000	2,344,000	2,320,000	2,296,000
2호봉		3,096,000	2,619,000	2,399,000	2,369,000	2,345,000	2,321,000
3호봉		3,166,000	2,691,000	2,424,000	2,394,000	2,370,000	2,346,000
4호봉		3,233,000	2,759,000	2,449,000	2,419,000	2,395,000	2,371,000
5호봉		3,292,000	2,823,000	2,497,000	2,444,000	2,420,000	2,396,000
6호봉		3,454,000	2,969,000	2,646,000	2,469,000	2,445,000	2,421,000
7호봉		3,544,000	3,072,000	2,740,000	2,494,000	2,470,000	2,446,000
8호봉		3,641,000	3,167,000	2,817,000	2,573,000	2,499,000	2,471,000
9호봉		3,745,000	3,263,000	2,910,000	2,666,000	2,590,000	2,496,000
10호봉		3,849,000	3,358,000	2,992,000	2,748,000	2,668,000	2,538,000
31호봉	5,429,000	5,097,000	4,573,000	4,169,000	3,858,000	3,825,000	3,717,000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19〉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수당)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 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천 원 기타 2천 원 자녀: 첫째 3천 원 둘째 7천 원 셋째 이후 110천 원	
시간외 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20천 원)	매월	120천 원	20천 원 증액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 원)	매월	200천 원	

자료: 서울시 복지정책실「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점역교정사 일자리는 주로 시각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교육 관련 기관으로 주로 요청되는 직무내용은 자료 및 도서의 점자, 교정작업과 시각장애인 교육 자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점역교정사는 자료를 점자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점역교정 업무와 사회복지시설 내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 반면 근로지원인은 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직장 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역교정은 세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을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이 장애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등 유동적인 편이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채용공고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근로지원인과 급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점역교정사 간의 기본급 및 시급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점역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급 1호봉 기본급 2,140,300원, 5급 1호봉 2,093,900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면 시급은 각 10,240원과 10,018원이다.[3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면 5급 1호봉 2,344,000원이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11,215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제2유형 속기사인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11,832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72,888원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임호봉은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로지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점역교정사는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그 중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가족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 여부에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인한 추가 소득을 산정할 때, 가족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제외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합산하면 연간 약 25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025원 이상인 것으로 계산된다.

초임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비해 점역교정사의 기본급은 낮은 수준이나 점역교정사는 근로지원인과 달리 매년 호봉상승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급 8호봉, 5급 8호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5급 7호봉부터는 점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5급 1호봉은 2,344,000원이고 5급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주 40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은 <표 4-20>와 같다. 제2유형 근로지원인 2024년 시급은 11,832원이므로 5급 1호봉부터 6호봉까

3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으로 4급은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정하고, 5급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지는 근로지원인 시급이 더 높고 5급 7호봉부터 복지관 점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진다.

기본급과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급 4호봉, 5급 5호봉부터 점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는 5급 1호봉부터 점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0〉 점역교정사 기본급 시급 환산 결과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기준(4급)		보건복지부기준(5급)		서울시 기준(5급)	
	기본급	시급환산	기본급	시급환산	기본급	시급환산
1호봉	2,140,300	10,240.6	2,093,900	10,018.6	2,344,000	11,215.3
2호봉	2,180,200	10,431.5	2,154,000	10,306.2	2,369,000	11,335.9
3호봉	2,219,800	10,621.0	2,190,200	10,479.4	2,394,000	11,454.5
4호봉	2,262,000	10,822.9	2,232,900	10,683.7	2,419,000	11,574.1
5호봉	2,321,900	11,109.5	2,287,800	10,946.4	2,444,000	11,693.7
6호봉	2,381,300	11,393.7	2,353,800	11,262.2	2,469,000	11,813.4
7호봉	2,470,200	11,819.1	2,445,000	11,698.5	2,494,000	11,933.0
8호봉	2,567,900	12,286.6	2,534,500	12,126.7	2,573,000	12,311.0
9호봉	2,659,800	12,726.3	2,609,800	12,487.0	2,666,000	12,755.9
10호봉	2,740,100	13,110.5	2,693,000	12,885.1	2,748,000	13,148.3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정하는 인정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이 가산되고 있으나 점역사인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고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다. 근로지원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정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직종으로 이동 시 경력인정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표 4-21〉 점역교정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 기준 (4급)		보건복지부 기준 (5급)		서울시 기준(5급)			
	명절 휴가비* (연간)	시급 환산**	명절 휴가비 (연간)	시급 환산	명절 휴가비*** (연간)	정액 급식비 (월)	계 (연간)	시급 환산****
1호봉	2,568,360	1,025.7	2,512,680	1,003.5	2,812,800	120,000	3,784,000	1,697.4
2호봉	2,616,240	1,044.8	2,584,800	1,032.3	2,842,800	120,000	3,809,000	1,709.4
3호봉	2,663,760	1,063.8	2,628,240	1,049.6	2,872,800	120,000	3,834,000	1,721.4
4호봉	2,714,400	1,084.0	2,679,480	1,070.1	2,902,800	120,000	3,859,000	1,733.4
5호봉	2,786,280	1,112.7	2,745,360	1,096.4	2,932,800	120,000	3,884,000	1,745.4
6호봉	2,857,560	1,141.2	2,824,560	1,128.0	2,962,800	120,000	3,909,000	1,757.3
7호봉	2,964,240	1,183.8	2,934,000	1,171.7	2,992,800	120,000	3,934,000	1,769.3
8호봉	3,081,480	1,230.6	3,041,400	1,214.6	3,087,600	120,000	4,013,000	1,807.2
9호봉	3,191,760	1,274.7	3,131,760	1,250.7	3,199,200	120,000	4,106,000	1,851.8
10호봉	3,288,120	1,313.1	3,231,600	1,290.6	3,297,600	120,000	4,188,000	1,891.1

주*: 보건복지부 기준 : 봉급액의 120%(설, 추석 각 60%씩, 연 2회 지급)
주**: 명절휴가비(연간)/2,504시간(연 소정근로시간 : 48시간×52주+1일(8시간))
주***: 서울시 기준 : 기본급의 120%(설, 추석 각 60%, 연 2회 지급)
주:****: [명절휴가비(연간)/2,504시간] + [매월 급식비/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48시간×(365/12/7)]

근로시간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점역사는 정규직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시간이 결정되므로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표 4-22〉 점역교정사 기본급, 수당 합산 시급 환산 결과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 기준 (4급)		보건복지부 기준 (5급)		서울시 기준 (5급)	
	기본급	기본급+ 수당*	기본급	기본급+ 수당 **	기본급	기본급+ 수당***
1호봉	10,240.6	11,266.3	10,018.6	11,022.1	11,215.3	12,912.8
2호봉	10,431.5	11,476.4	10,306.2	11,338.4	11,335.9	13,044.3
3호봉	10,621.0	11,684.8	10,479.4	11,529.0	11,454.5	13,175.9
4호봉	10,822.9	11,906.9	10,683.7	11,753.8	11,574.1	13,307.5
5호봉	11,109.5	12,222.3	10,946.4	12,042.8	11,693.7	13,439.1
6호봉	11,393.7	12,534.9	11,262.2	12,390.2	11,813.4	13,570.7
7호봉	11,819.1	13,002.9	11,698.5	12,870.2	11,933.0	13,702.3
8호봉	12,286.6	13,517.2	12,126.7	13,341.4	12,311.0	14,118.2
9호봉	12,726.3	14,000.9	12,487.0	13,737.7	12,755.9	14,607.7
10호봉	13,110.5	14,423.6	12,885.1	14,175.7	13,148.3	15,039.4

주*: 명절휴가비
주**: 명절휴가비
주***: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23〉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 점역교정사 처우 비교

	점역사 근로지원인	보건복지부 기준	서울시 기준
기본급	최저시급의 120% 2024년 시급: 11,832원 월 209시간 기준 : 2,472,888원	4급(자격증 보유) 또는 5급(미보유) 직위 4급 기준: 1호봉 월 2,140,300원 ~ 31호봉 3,806,400원 5급 기준 : 1호봉 월 2,093,900원 ~ 31호봉 3,656,400원	5급 직위 5급 기준 : 1호봉 월 2,344,000원 ~ 31호봉 3,858,000원
호봉 인정	없음	1년당 1호봉 가산	1년당 1호봉 가산
경력 인정	없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수당	없음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정액급식비(월 12만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로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기준	1주 40시간	주 40시간

4. 심층면접 결과

점역교정사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를 비롯해 단계적으로 경력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증 취득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으시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많이 따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자 하시다가 이제 점역교정사 점자도 배워서 여기서 같이 도서 제작 참여하시다가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복지관에 취업도 하세요. 다른데 계약직으로 가시기도 하고 계속 단계적으로 경력을 쌓으셔서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도 하시고 또는 하시다가 나오셔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 기관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관련 실무자나 점역교정사들은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점역교정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은퇴 시점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제가 (다른 점역교정사에게) 물어봤어요. 점역교정사가 근로지원인을 하겠나 어떻게 생각해, 근로지원인 하겠어? 그랬더니 다 100%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한테 매어야 하고 그 장애인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종속인이 된 것 같다는 거죠. 나의 자유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 일정에서 나는 근로지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체의 주체성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소속은 있지는 하지만 멀잖아요. 그런데 기관 같은 데에 속해 있으면 어떤 안정성 부분도 있고 나의 동료들도 있어서 같이 뭐하고 이 안에서 누리는 공감이나 심리적인 지지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기관은 내가 경력을 인정받아서 또 기관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공식적인 커리어가 되는데 근로지원인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근로지원인과 장애인이 마음이 잘 맞고 배려해 주면 프리 일을 겸해서 근로지원인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지원인을 활용한다는 본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분의 근로시간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아야, 급여 수준이 현저히 좀 달라져야 전문 종사자들이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저도 근로지원인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인 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이가 아직 어리고 이런 것 때문에 기관에 있어야 하지만 이제 (정년) 끝나서 나서도 뭔가 제가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 봤을 때 근로지원인도 나쁘지 않는다는 선택 사항이 있기는 해요. 제가 정년 이후에 이 업을 계속하고 싶고 이런 행정 문서나 이런 거 해드리는 거는 제가 계속해 왔던 일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배제한 업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사A)

근로지원인은 지금의 저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니라면 급여가 월등히 많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정말 자유롭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격증을 막 따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복지관 취업이 어려워서 뭐 좀 한 줄이라도 쓰기 위해 하거나 아니면 정년 이후에 조금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볼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사B)

면담 내용으로는 근로지원인과 점역사의 차이는 급여 측면에서 근로지원인은 매년 호봉이 가산되지 않고, 근로지원인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경력)으

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지원인은 기본급 외 별도 수당이 없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일이 변동되므로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실수령액이 낮아지며, 연차유급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관은 호봉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한 호봉씩. 저희는 사회복지사업 안내 서울시 기준이에요. 보통 5급으로 들어오시죠. 5급 1호봉에서 시작하는 거에요. 5급 1호봉이 아마 9급 공무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 수준 될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급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당이나 종사자 관련된 것들 각 지자체에서 주는 어떤 수당 부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5급에서 들어와서 이제 1년이 지날 때마다 호봉 승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 근로지원인은 뭔가 이분의 보조 종속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무를 해서 이번 달에 돈을 얼마만큼 원래대로 받고 싶은데, 이분이 갑자기 열흘 넘게 휴가를 내버리면 저도 그냥 열흘을 쉬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런 처우라든가 욕구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쉬고 싶은데 이분은 나와야 일 해줘야 돼. 뭔가 이런 게 맞지 않을 때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중략) 급여가 정말 프리랜서급으로 월등히 높으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내가 근로지원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점역사A)

심층면담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점역교정사는 점역 업무 및 교육, 행정 등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감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경력관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지원인은 특정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중속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점역사 개인의 성향(독립성, 자율성 등)에 따라 근로지원인 업무를 선호하거나 복지관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

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점역교정사들은 프리랜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근로지원보다 프리랜서로 갈 거예요. 프리랜서 점역교정사는 국가시험 시험지 제작할 때 들어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다른 법이 개정되고 점자법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인쇄물을 제작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어떤 국가기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의무화하면 그쪽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 제작, 학습 부교재 제작, EBS 교재 제작, 국가공무원 시험 임용고시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점역사들은 좀 학구적인 사람이 많아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해서 최저 나는 기본적으로 200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근로지원인을 해야되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쉬면 나는 또 쉬어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한테 매어버리잖아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나의 페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근로지원인)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에요.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제3절 수화통역사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가. 주요 일자리 및 직무내용

한국농아인협회와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의 2024년 1월~8월 게시된 채용공고 15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수어통역센터 12개 기관, 시각장애인복지관 2개 기관, 대학교 1개 기관이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수행업무는 수어통역업무와 그 밖에 회계, 행정, 운전, 사업진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는 장애학생 수업지원과 학습상담으로 기재하고 있다.

수화통역사의 직무내용은 활동기관 및 활동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수화통역사는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수화통역사의 직무로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 환자들의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법원과 경찰서에서 청각장애인과 법률 전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기관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수화통역사는 수어통역 업무 외에도 행정지원, 회계 지원, 운전, 사업 진행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수화통역사 채용 조건은 정규직, 1년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다양하고 임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지

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는 채용공고의 채용 조건 및 근로조건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24〉 수화통역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업무 종류
○○시 수어통역센터	경력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 수준에 의함	주40시간	수어통역 및 회계업무
○○시 수어통역센터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에 준함	주40시간	수어통역서비스 및 행정업무
○○군 수어통역센터	1년 계약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경북지역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기준	주40시간	통역서비스 및 행정업무
○○군 수어통역센터	1년 계약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경북지역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기준	주40시간	통역서비스 및 행정업무
○○군 수어통역센터	기간제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소지는 일반직 4급, 그 외 자격증 미소지자는 일반직 5급 정함	주40시간	수어통역 및 기타 행정
○○ 수어통역 센터	1년 계약 (수습 3개월 후 재계약 가능)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직 4급 미취득하는 일반직 5급으로 정함	주40시간	수어통역, 회계, 운전, 사업진행 등

〈표 4-24〉 (계속)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업무 종류
○○군 수어통역센터	1년 계약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2024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급여기준	주40시간	-
○○ 수어통역센터	1년 계약직 (수습 3개월 적용), 업무평가 후 재계약 가능	2024년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화통역사 자격증 일반직 4급, 일반직5급). 경력호봉 별도	주40시간	수어통역, 회계, 운전, 사업진행 등
○○시 수어통역센터	-	충청북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 지침에 준함. 인정호봉 4급(호봉 무관)	-	수어통역업무 및 행정업무, 기관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군 수어통역센터	-	충청북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침에 준함. 인정호봉 4급(호봉 무관)	-	수어통역업무 및 행정업무, 기관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규직	2,140,300원 이상	주40시간	-
○○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일부터 2025-06-29까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직 4급, 그 외 자격증 미소지자는 일반직 5급으로 정함	주40시간	수어통역 및 기타 업무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24〉 (계속)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업무 종류
○○○ 시각장애인복지회	정규직	내부기준에 준함 : 5급 1호봉 기준 연봉 3,180만원 (매년 정기 승호) - 서울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급 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준함 - 군경력, 경력사항에 따라 추가 호봉 획정 -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퇴직금 별도 적립	주40시간	시청각장애인사업 제반 업무 및 수어통역 업무
○○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지원센터	정규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 이용시설 기준 준용(호봉 제한 없음)	주40시간	수어통역서비스, 상담, 교육
○○국립대학교	무기계약직	기본급 2,053,500원 + 급식비 140,000원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별도	주40시간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 지원 등 포함) 장애학생 학습, 생활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기타 행정업무 등

2개 기관은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13개 기관은 임금수준을 명시하였다. 임금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1개 기관(복지관)의 임금은 월 2,140,300원 이상이고, 대학교 1개 기관은 기본급 2,053,500원 및 급식비 140,000원이다.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제2유형 근로지원인 시급 11,832원보다 낮다.

〈표 4-25〉 수화통역사 채용공고 중 임금이 명시된 사례

구분	임금	시급 환산*	근로지원인 제2유형 시급과 차이
○○시각장애인복지관	2,140,300원 이상	10,240원 이상	1,592원 이상
○○국립대학교	기본급 2,053,500원 급식비 140,000원	10,495원	1,337원

주*: 시급 환산 : 주40시간 기준(임금/209시간)

채용공고 15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임금기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과 경력 인정 사항을 제시하며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과 수당은 앞의 제2절 점역교정사 <표 4-18>, <표 4-19>와 같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직무 비교

사례조사를 실시한 ○○광역시수어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의 주요 직무는 수어통역, 영상통역 및 상담, 수어교육, 물품관리, 실적보고이다. 수어통역은 청각장애인 민원인의 요청에 맞춰 통역 행사 및 방송통역을 지원하고, 영상통역 및 상담업무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휴대전화로 영상통역을 지원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며, 수어교육은 수어통역센터 지회에서 진행하는 수어교육(초, 중, 고급)반을 운영하고 세부 업무는 교육 홍보, 접수, 개강, 종강, 종결보고로 진행된다. 센터가 전문 교육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며, 수요에 맞춰서 초·중·고급반으로 나눠서 개강한다. 업무 비중은 수어통역과 영상통역 및 상담이 80%, 수어교육은 12%, 물품관리 3%, 실적보고 5% 정도이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광역시수어통역센터의 지역지원본부의 수화통역사 임금은 ○○광역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르고,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자는 4급, 미보유자는 5급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임금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며,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2024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정 대상 경력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인정 대상 경력을 준용하며 유사 경력(인정비율 80%) 항목 중, ○○광역시 ○○공감복지센터 직원 근무 경력, ○○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근무경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직원

으로 근무한 경력, ○○광역시가 공모·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

수당은 정액급식비(급량비) 월 8만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각 지급기준일 월봉급액×60%), 가족수당(배우자 월 40,000원, 자녀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기타 부양가족 20,000원), 연장근로수당(월 12시간)이 지급되고 있다. "2024년도 ○○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와 수당 종류 및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26〉 2024년 ○○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표(일반직)

(단위: 원)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I	II						
1호봉	2,795,900	2,639,800	2,639,8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93,900
2호봉	2,891,300	2,726,300	2,726,3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54,000
3호봉	2,989,300	2,824,500	2,824,500	2,692,600	2,444,600	2,330,900	2,219,800	2,190,200
4호봉	3,100,400	2,920,700	2,920,700	2,789,600	2,544,000	2,394,900	2,262,000	2,232,900
5호봉	3,227,600	3,030,600	3,030,600	2,904,000	2,649,400	2,459,400	2,321,900	2,287,800
6호봉	3,360,700	3,150,200	3,150,200	3,021,400	2,758,200	2,549,300	2,381,300	2,353,800
7호봉	3,493,700	3,269,400	3,269,400	3,138,500	2,871,700	2,641,000	2,470,200	2,445,000
8호봉	3,631,200	3,406,700	3,406,700	3,272,900	2,985,700	2,737,700	2,567,900	2,534,500
9호봉	3,769,800	3,544,200	3,544,200	3,412,100	3,096,400	2,849,300	2,659,800	2,609,800
10호봉	3,901,500	3,678,200	3,678,200	3,544,000	3,214,400	2,943,000	2,740,100	2,693,000
31호봉			5,027,700	4,910,800	4,488,400	4,132,000	3,806,400	3,656,400

자료: ○○광역시 「2024.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27〉 2024년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수당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정액 급식비	인건비(국·시비) 지원 시설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인력 (6개월 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월 8만 원	매달 보수지급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한 사회복지시설(시비)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 정액급식비)×1/209×1.5] ※1인당 월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자료: ○○광역시「2024.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

2024년 ◯◯광역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봉급 기준표 4급 1호봉은 2,140,300원이고, 5급 1호봉은 2,093,900원이고 주 40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제2유형 근로지원인 2024년 시급은 11,832원이므로 4급 1호봉부터 7호봉까지, 5급 1호봉부터 7호봉까지는 근로지원인 시급이 더 높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급 및 5급) 기본급 분석 결과는 <표 4-28> ◯◯광역시수어통역센터 4급 및 5급 봉급 기준과 동일하다.

〈표 4-28〉 ○○광역시수어통역센터 4급 및 5급 봉급 기준

(단위: 원)

호봉	4급		5급	
	월급(원)	시급환산	월급(원)	시급환산
1호봉	2,140,300	10,240.6	2,093,900	10,018.6
2호봉	2,180,200	10,431.5	2,154,000	10,306.2
3호봉	2,219,800	10,621.0	2,190,200	10,479.4
4호봉	2,262,000	10,822.9	2,232,900	10,683.7
5호봉	2,321,900	11,109.5	2,287,800	10,946.4
6호봉	2,381,300	11,393.7	2,353,800	11,262.2
7호봉	2,470,200	11,819.1	2,445,000	11,698.5
8호봉	2,567,900	12,286.6	2,534,500	12,126.7
9호봉	2,659,800	12,726.3	2,609,800	12,487.0
10호봉	2,740,100	13,110.5	2,693,000	12,885.1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수화통역사 일자리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화통역사센터, 복지관 등), 학교 등 교육기관과 그 밖에 수어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기관이 있다. 주로 요청되는 직무내용은 수어통역 업무 외에도 행정지원도 수행하므로 독립적으로 수어통역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수어통역센터는 근무 시간 동안 다양한 통역업무를 수행하며 긴급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이동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근로지원인은 주로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며 특정 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한다. 수어통역센터는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통역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수어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 업무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과의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량 측면으로는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수화통역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므로 근로지원인보다 많은 편으로 나타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채용공고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근로지원인과 급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수어통역 간의 기본급 및 시급을 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수화통역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급 1호봉 기본급 2,140,300원, 5급 1호봉 2,093,900원으로 책정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각 10,240원과 10,018원이다.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면 4급 1호봉 기본급 2,140,300원, 5급 1호봉 2,093,900원으로 책정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각 10,240원과 10,018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분석과 같은 결과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제2유형 수화통역사인 근로지원인 시급은 11,832원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72,888원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초임호봉은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로지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점역교정사는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그 중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다.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 여부에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인한 추가 소득을 산정할 때,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합산하면 연간 약 25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025원 이상인 것으로 계산된다.

초임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비해 수화통역사의 급여 수준은 낮은 수준이나 수화통역사는 근로지원인과 달리 매년 호봉상승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4급 8호봉, 5급 8호봉부터는 수화통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급과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급 4호봉, 5급 5호봉부터 점역교정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는 4급 2호봉, 5급 3호봉부터 수화통역사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29〉 수화통역사 기본급 환산 결과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 기준(4급)		보건복지부 기준(5급)		○○광역시 기준(4급)		○○광역시 기준(5급)	
	기본급	시급환산	기본급	시급환산	기본급	시급환산	기본급	시급환산
1호봉	2,140,300	10,240.7	2,093,900	10,018.7	2,140,300	10,240.7	2,093,900	10,018.7
2호봉	2,180,200	10,431.6	2,154,000	10,306.2	2,180,200	10,431.6	2,154,000	10,306.2
3호봉	2,219,800	10,621.1	2,190,200	10,479.4	2,219,800	10,621.1	2,190,200	10,479.4
4호봉	2,262,000	10,823.0	2,232,900	10,683.7	2,262,000	10,823.0	2,232,900	10,683.7
5호봉	2,321,900	11,109.6	2,287,800	10,946.4	2,321,900	11,109.6	2,287,800	10,946.4
6호봉	2,381,300	11,393.8	2,353,800	11,262.2	2,381,300	11,393.8	2,353,800	11,262.2
7호봉	2,470,200	11,819.1	2,445,000	11,698.6	2,470,200	11,819.1	2,445,000	11,698.6
8호봉	2,567,900	12,286.6	2,534,500	12,126.8	2,567,900	12,286.6	2,534,500	12,126.8
9호봉	2,659,800	12,726.3	2,609,800	12,487.1	2,659,800	12,726.3	2,609,800	12,487.1
10호봉	2,740,100	13,110.5	2,693,000	12,885.2	2,740,100	13,110.5	2,693,000	12,885.2

〈표 4-30〉 수화통역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보건복지부 기준)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 기준(4급)		보건복지부 기준(5급)	
	명절휴가비* (연간)	시급환산**	명절휴가비 (연간)	시급환산
1호봉	2,568,360	1,025.7	2,512,680	1,003.5
2호봉	2,616,240	1,044.8	2,584,800	1,032.3
3호봉	2,663,760	1,063.8	2,628,240	1,049.6
4호봉	2,714,400	1,084.0	2,679,480	1,070.1
5호봉	2,786,280	1,112.7	2,745,360	1,096.4
6호봉	2,857,560	1,141.2	2,824,560	1,128.0
7호봉	2,964,240	1,183.8	2,934,000	1,171.7
8호봉	3,081,480	1,230.6	3,041,400	1,214.6
9호봉	3,191,760	1,274.7	3,131,760	1,250.7
10호봉	3,288,120	1,313.1	3,231,600	1,290.6

주*: 보건복지부 기준 : 봉급액의 120%(설, 추석 각 60%씩, 연 2회 지급)
주**: 명절휴가비(연간)/2,504시간(연 소정근로시간 : 48시간×52주+1일(8시간))

〈표 4-31〉 수화통역사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광역시 기준)

(단위: 원)

호봉	○○광역시 기준 (4급)				○○광역시(5급)			
	명절 휴가비* (연간)	정액 급식비 (월)	계 (연간)	시급 환산**	명절 휴가비 (연간)	정액 급식비 (월)	계 (연간)	시급 환산**
1호봉	2,568,360	80,000	3,528,360	1,408.5	2,512,680	80,000	3,472,680	1,386.2
2호봉	2,616,240	80,000	3,576,240	1,427.6	2,584,800	80,000	3,544,800	1,415.0
3호봉	2,663,760	80,000	3,623,760	1,446.6	2,628,240	80,000	3,588,240	1,432.4
4호봉	2,714,400	80,000	3,674,400	1,466.8	2,679,480	80,000	3,639,480	1,452.9
5호봉	2,786,280	80,000	3,746,280	1,495.5	2,745,360	80,000	3,705,360	1,479.2
6호봉	2,857,560	80,000	3,817,560	1,524.0	2,824,560	80,000	3,784,560	1,510.8
7호봉	2,964,240	80,000	3,924,240	1,566.6	2,934,000	80,000	3,894,000	1,554.5
8호봉	3,081,480	80,000	4,041,480	1,613.4	3,041,400	80,000	4,001,400	1,597.4
9호봉	3,191,760	80,000	4,151,760	1,657.4	3,131,760	80,000	4,091,760	1,633.5
10호봉	3,288,120	80,000	4,248,120	1,695.9	3,231,600	80,000	4,191,600	1,673.4

주*: ○○광역시 기준 : 봉급액의 120%(설, 추석 각 60%, 연 2회 지급)

주**: [명절휴가비(연간)/2,504시간]+[매월급식비/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48시간×(365/12/7)]

〈표 4-32〉 수화통역사 기본급, 수당 합산 시급 환산 결과

(단위: 원)

호봉	보건복지부 기준(4급)		보건복지부 기준(5급)		○○광역시 기준(4급)		○○광역시 기준(5급)	
	기본급	기본급+ 수당*	기본급	기본급+ 수당	기본급	기본급+ 수당	기본급	기본급+ 수당**
1호봉	10,240.7	11,266.4	10,018.7	11,022.1	10,240.7	11,649.1	10,018.7	11,404.9
2호봉	10,431.6	11,476.4	10,306.2	11,338.5	10,431.6	11,859.2	10,306.2	11,721.3
3호봉	10,621.1	11,684.9	10,479.4	11,529.0	10,621.1	12,067.6	10,479.4	11,911.8
4호봉	10,823.0	11,907.0	10,683.7	11,753.8	10,823.0	12,289.8	10,683.7	12,136.6
5호봉	11,109.6	12,222.3	10,946.4	12,042.8	11,109.6	12,605.1	10,946.4	12,425.6
6호봉	11,393.8	12,535.0	11,262.2	12,390.2	11,393.8	12,917.8	11,262.2	12,773.0
7호봉	11,819.1	13,002.9	11,698.6	12,870.3	11,819.1	13,385.7	11,698.6	13,253.1
8호봉	12,286.6	13,517.2	12,126.8	13,341.4	12,286.6	13,900.0	12,126.8	13,724.2
9호봉	12,726.3	14,001.0	12,487.1	13,737.8	12,726.3	14,383.8	12,487.1	14,120.6
10호봉	13,110.5	14,423.7	12,885.2	14,175.7	13,110.5	14,806.4	12,885.2	14,558.5

주*: 명절휴가비

주**: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정하는 인정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이 가산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인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고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다. 근로지원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정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직종으로 이동 시 경력인정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수화통역사는 정규직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시간이 결정되므로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표 4-33〉 근로지원인과 사회복지시설 수화통역사 처우 비교

구분	수화통역사 근로지원인	보건복지부 기준	○○광역시 기준
기본급	최저시급의 120% 2024년 시급: 11,832원 월 209시간 기준 : 2,472,888원	4급(자격증 보유) 또는 5급(미보유) 직위 4급 기준: 1호봉 월 2,140,300원 ~ 31호봉 3,806,400원 5급 기준 : 1호봉 월 2,093,900원 ~ 31호봉 3,656,400원	4급(자격증 보유) 또는 5급(미보유) 직위 4급 기준: 1호봉 월 2,140,300원 ~ 31호봉 3,806,400원 5급 기준 : 1호봉 월 2,093,900원 ~ 31호봉 3,656,400원
호봉 인정	없음	1년당 1호봉 가산	1년당 1호봉 가산
경력 인정	없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수당	없음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정액급식비(월 8만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로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기준	1주 40시간	주 40시간

4. 심층면접 결과

수화통역사 자격취득 후 수어통역센터에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화통역사 가운데 센터에 취업하는 비중이 80%까지는 안 될 거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죠. 사실. 수화통역사를 업으로 삼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센터 취업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관련 관계자 및 수화통역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호봉상승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지원인은 호봉 인정이 없고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취약점 인식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쪽 근로지원인과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정직원과 차이는 일단 급여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근로지원인 경력은 호봉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 센터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마다 호봉이 쌓이는데 근로지원인은 같습니다.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센터 수준은 못 미치는데, 그 차이도 있고 근로지원인 분들은 청각장애인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센터는 업무하는 양이 근로지원인과 차이가 있고, 아니면 근로지원인은 명절휴가비도 안 주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 초봉으로 따졌을 때는 근로지원인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근로지원인은 2인, 3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급여 기본 표로만 비교해서 근로지원인이 더 많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로지원인은 이용자가 쉬면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급여를 풀로 받는 분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사)

급여가 경력도 인정되는데, 제가 근로지원인 한 것은 경력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급으로 비교하면 최저시급보다 높긴 한데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투입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훨씬 낮다라는 거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사)

저희는 근로를 하면 올라가는게 있는데 근로지원인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고, 경력이 없어서 농아인 분들이 불편해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경력인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 20만원 혜택도 있고 이제 밥값도 나오기 시작했고, 복지포인트도 있고 이런 걸로 하면 센터에 있는 것이 급여도 더 많죠. 그런데 일은 양이 또 많은 거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관련 실무자 및 수화통역사들은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수화통역사가 서류작업과 사회복지사 업무를 포함하여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지원인보다 업무량이 많고, 근로지원인은 특정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은 한 사람만 하니까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센터는 많은 사람의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본인이 서류 작업해야 할 것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도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업무량의 차이가 좀 있

는 거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청각장애인들의 욕구들이 다양하고 저희는 원하는 수어 통역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가는 거나 법원, 동사무소, 병원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일을 다 통역을 지원하죠. 통역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또한, 근로지원인이 한 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업무적 특성이 직업 선택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지원인 또는 프리랜서 등의 직업 선택은 개인의 직업적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근로지원인은 시급직이다 보니까 정규직이 갖는 여러 가지 복지 그런 거에서 빠지고, 시급 외에는 각종 수당도 안 붙고 호봉이 상승되지 않는 부분이 차이가 나죠. 센터에서는 정규직 처우를 해주고 업무적으로 보면 센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지원인은 매칭돼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는 악성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 하고 딱 복귀하고 다른 사람 또 만나고 하면 되는데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사)

근로지원이 쉬어버리면 힘들어지니까 눈치가 보인다고, 실제로 근로지원인 분들은 근로자가 쉴 때 자기도 연차를 쓰거나 맞춰야 하는 거예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사들이 센터 쪽 취업을 하거나 근로지원인 지원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에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에 센터에서 고객에게 한 번 너무 호되게 당하면 자기가 상처를 받고 이 바닥을 뜨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 상황이고 매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

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로지원인은 한 사람만 지원하니까 그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복잡한 일이 싫으면 조금 벌고 조금 한다고 해서 근로지원인으로 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센터에 수급이 안 돼요. (○○광역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제4절 속기사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가. 주요 일자리 및 직무내용

속기사를 구인하는 주요 일자리는 국회, 지방의회, 법원, 검찰청, 행정부처, 군사기관, 방송사, 교육기관, 데이터 전문 분야의 대기업 및 금융권, 일반 기업체, 속기사무소 창업 등이다. 한국AI속기사협회의 채용정보에 2024년 1월~8월 게시된 채용공고 중 15건을 선정하여 분석하면, 구인기관은 국가 행정부처, 법원, 검찰청, 지방의회, 대학교, 방송사, 민간기업이 있다. 각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속기사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속기 업무 외에도 기관 내 행정지원 업무 등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4〉 속기사 직무내용

기관명	업무 종류
○○○	속기 업무 등(정치부 속기)
○○청	특허심판원 구술심리 속기 업무 및 심판 보조 업무 등
○○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및 회의 내용에 대한 녹취 및 기록, 관리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법원	피고인, 증인(감정인) 신문, 현장검증 등 법정 및 법정 외 속기록 작성 전자법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지원 지역군사법원 행정사무 지원 기타 재판사무과장 지시사항 수행
○○시	위원회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시의회	속기 및 의회의사록 작성
○○법원	재판 관련 속기 업무 사무보조(일반행정, 송무, 판사실 지원 업무)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군의회	속기,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사 업무 보조 등
○○우유	속기 업무 및 일반사무 지원
○○감독원	위원회 등 회의 내용 속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기타 회의 관련 행정업무
○○지방검찰청	속기 및 녹취 관련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시의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도 의회	속기 업무 지원 및 기타 업무
○○시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전자회의록 등록 관리 그 밖에 부서장이 판단한 업무 등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학생 전과목 속기 및 번문 수업 관련 특강 속기 등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속기사 채용 조건은 정규직, 임기제, 육아휴직 대체 임기제로 다양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토대로 시급 또는 월급을 정하고, 일반 기업체와 대학교는 기관 내부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채용공고의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35〉 속기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	정규직	2,069,100원/월	14:00~22:00
○○청	공무직	2,236,330원/월 (기본임금 2,096,33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주 40시간
○○도 교육청	교육행정 7급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년	채용예정 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일반임기제 7급상당 : 상한66,396천 원, 하한47,157천 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주 40시간
○○법원	일반임기제 8급(행정) : 최초 계약기간부터 2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7.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주 40시간

〈표 4-35〉 (계속)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시	기간제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12.31	92,400원/일 주휴 및 연차휴가 별도 지급 기타사항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주 40시간 (1일 8시간)
○○시의회	기간제 : 2024.06.10.~2025.01.31	1일 78,880원/주휴수당 별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원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2024.07.01.~2024.12.31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별표 제30호의2] 주40시간 기준(2,064,700원) - 40시간 기준액이며 위 봉급 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가족수당 등 기타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
○○군의회	기간제 : 계약일부터 2024.12.31까지	시급 12,500원 - 일급 100,000원(1일8시간기준) - 교통보조비 100,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구체적인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주 40시간
○○우유	정규직(기능직 5급 사원) : 무기계약	약 3,300만 원/년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포함 금액)	-
○○감독원	기간제 사무원 (육아휴직대체자) : 계약체결일부터 2025.11.20.까지	2,654,000원/월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별도지급	-
○○지방 검찰청	공무직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일 88,180원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책정)	주 40시간 (1일 8시간)
○○시의회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11개월	83,190원/일	주 40시간 (1일 8시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35〉 (계속)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도 의회	기간제(4개월)	월평균 2,589,840원(수당 및 복리후생비 포함 / 일급 93,840원)	주 40시간 (1일 8시간)
○○시의회	한시임기제 (9호) 임용일부터 2025.12.31까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속기사 주35시간 : 24,974천원 제수당 등: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주 35시간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2024학년도 2학기 (4개월)	32,000원/시간	주 14시간 이하

위 채용공고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대학교 주 14시간, 화성시의회 주35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주40시간이다. 속기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분야는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로 구분[35]되고, 임금수준은 구체적인 임금을 명시하거나

35)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가 있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한시임기제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보수규정」[36]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7]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와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의 임금은 연봉의 형태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봉을 결정하는 체계이고, 한시임기제는 월급 형태로 등급에 따른 봉급기준액을 정하고 있다. 한시임기제 등급표상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면 받게 되는 금액으로서 등급별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36)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37)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36〉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93,14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84,683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6,986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6,122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87,989	50,012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76,868	38,729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64,651	31,025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55,175	25,274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5,548	

주: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료: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한계액표

〈표 4-37〉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대상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992,8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65,7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55,7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04,7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64,700

주: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표 4-38〉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65,346
6급(상당)	81,239	54,132
7급(상당)	66,396	47,157
8급(상당)	58,248	41,551
9급(상당)	51,290	-

주: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자료: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에 적용되는 수당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로 동일하다.

〈표 4-39〉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에 적용되는 수당

<table>
<tr><th>수당의 종류</th><th>지급액</th></tr>
<tr><td>가족수당</td><td>
<table>
<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 지급액</th></tr>
<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r>
<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직계존속·비속 등)</td><td>20,000원</td></tr>
<tr><td rowspan="3">자녀</td><td>첫째 자녀</td><td>30,000원</td></tr>
<tr><td>둘째 자녀</td><td>70,000원</td></tr>
<tr><td>셋째 이후 자녀 1명당</td><td>110,000원</td></tr>
</table>
</td></tr>
<tr><td>초과근무수당</td><td>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 지급액 :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 × 1/209 ×150%」

※ 국가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9호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마급 해당자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 × 55%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제5호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 × 55%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 × 55%
</td></tr>
</table>

〈표 4-39〉 (계속)

<table>
<tr><th>수당의 종류</th><th>지급액</th></tr>
<tr><td>정액급식비</td><td>월 140,000원</td></tr>
<tr><td>연가보상비</td><td>예산의 범위(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 지급</td></tr>
<tr><td>직급보조비</td><td>
<table>
<tr><th>국가공무원</th><th>월지급액</th></tr>
<tr><td>4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td><td>400,000원</td></tr>
<tr><td>5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td><td>250,000원</td></tr>
<tr><td>6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td><td>185,000원</td></tr>
<tr><td>7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td><td>180,000원</td></tr>
<tr><td>8 · 9급(상당),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td><td>175,000원</td></tr>
</table>
<table>
<tr><th>지방공무원</th><th>월지급액</th></tr>
<tr><td>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td><td>400,000원</td></tr>
<tr><td>5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td><td>250,000원</td></tr>
<tr><td>6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td><td>185,000원</td></tr>
<tr><td>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td><td>180,000원</td></tr>
<tr><td>8 ·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td><td>175,000원</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인사혁신처「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장애학생수가 9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속기사 등 전문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1인당 교육지원인력인건비 지원한도 기준액은 시급 32,000원이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프리랜서 속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속기사는 전문교육지원인력[38]에 해당하는데, 교육지원인력은 동일시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1인 매칭이 원칙이며 동성이 우선 매칭된다. 활동범위는 대학 내 생활 및 학습 지원(교내 특강, 취업 프로그램 등 포함)이고 학점 시수에 비례하여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활동내역은 활동보고서에 작성한다. 2024년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교육지원인력 인건비는 1인당 전문(전담) 시급 32,000원이고, 재원은 국고 80% 이하, 대응투자 20%이다.

〈표 4-40〉 교육지원인력 지원 내용

영역	지원내용
학습 지원	수강 신청 및 강의시간에 실시간 문자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인력
	수강 신청, 강의대필, 각종 평가 대필 등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교육장애대학(원)생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 실험, 실습, 강의참여 등 수업보조 (예시) 지체 장애대학(원)생-실험, 실습 보조, 시각 장애대학(원)생- 발표 및 과제 수행 보조, 기타 수업보조가 필요한 장애대학(원)생의 교육지원인력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예시)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 지원
	수어·문자통역·점역 지원 등의 역할 수행(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자격증 소지자)
편의 지원	수업 이동, 학사(기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내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교육지원인력 (예시) 물품 정리, 식사, 신변 처리 등
	장애대학(원)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예시) 교내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자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업무매뉴얼」

38) 전문(면대면) 교육지원인력(시급) :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으로 지원하는 자
전문(원격) 교육지원인력(시급) : 속기사, 수화통역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및 의사소통을 실시간 원격으로 지원하는 자
전문(겸직) 교육지원인력(월급) : 속기사, 수화통역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및 의사소통을 지원, 고유 업무 외 지원 수요가 없는 시간에는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조건으로 대학이 직접 채용한 자

〈표 4-41〉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편성 기준

유형 \ 구분		지원한도 기준액*	재원		비고
			국고지원 80% 이하	대응투자 20% 이상	
교육 지원 인력 인건비 (1인당)	일반	(시급) 11,000원	8,800원	2,200원	국고 지원율 80%
	전문 (전담)	(시급) 32,000원	25,600원	6,400원	
	전문 (겸직)	전문(전담)의 시급 단가를 월급으로 환산	(월급) 2,675,200원 ※ 32,000원(시급) X 209시간 (월 근로시간) X 50% (겸직 등을 고려한 지원율)	(월급) 668,800원 ※ 대학이 부담하는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과목당)		(상한) 11,000,000원	8,800,000원	2,200,000원	

주*: 지원한도 기준액(상한액)은 1인당/과목당 이 금액의 80%까지 국고지원 가능하며, 한도 기준액을 초과하여 시급 등 설정 시 대응투자(교비)로 집행
자료: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주요 직무

사례조사를 실시한 속기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진행을 속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원들이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속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각 회의의 회의록을 제작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속기 업무에는 편집과 교정의 역할도 포함되며, 편집 및 교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속기보다 3배 내지 10배 더 많다고 한다. 속기 업무 외에도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속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업무 비중은 속기 약 40%, 행정지원 약 60% 정도이다. 도의회의 경우 정례회의, 임시회의, 행정감사 시기에는 업무가 집중되므로 상당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을 속기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교육속기를 담당하는 속기사는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인력으로 수강시간 동안 강의 내용을 문자 통역 등으로 제공한다. 교육속기사는 강의 대필, 실험 보조 등을 통해 학습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 학생당 주 14시간 한도로 지원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 사용이 여유로운 편이고,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강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도의회에서 근무했던 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근무했던 속기사의 임금은 봉급과 기타수당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수당에는 봉급 외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2024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임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봉급은 매월 180만 원 정도이고, 수당은 약 8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로 지급받았으며 총 월급액은 약 230만 원에서 3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당이 매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간외근로수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속기사는 2개 대학에서 2명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면서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49.5시간(13.5시간, 36시간) 활동을 하였고, 시급 32,000원 기준으로 1,584,000원 소득이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속기사의 일자리는 법률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있고, 국회와 시·도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법률기관에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기록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강의 내용을 기록하고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밖에 기관의 행정업무도 병행 수행한다. 반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사소통 지원을 하고 그 밖에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지원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속기사의 근무강도는 근무환경과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는 긴 회의 시간과 불규칙한 업무발생으로 높은 업무강도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는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지원인은 특정 대상에 대한 밀접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근로자와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근로지원인 업무는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으므로 물리적인 업무가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나 장애인 근로자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비교

채용공고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보수 기준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지원인력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지원인과 급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정리한 채용공고 기관의 임금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며[39] 근로지원인 제2유형 속기사인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11,832원이므로 10개 기관은 근로지원인 시급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채용공고에서는 기본임금 외 수당도 근로조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42〉 채용공고 기관 기본임금과 시급 환산 결과

기관명	임금(수당 미포함)	시급(원)*
○○시의회	일급 78,880원	9,860
○○법원	봉급 2,064,700원**	9,879
○○○	월급 2,069,100원	9,900
○○청	월급 2,096,330원	10,030
○○법원	연봉 25,274,000원***	10,093
○○시의회	일급 83,190원	10,399
○○지방검찰청	일급 88,180원	11,023
○○시의회	연봉 24,974천 원(주 35시간)	11,404
○○시	일급 92,400원	11,550
○○도 의회	일급 93,840원	11,730
○○군의회	시급 12,500원	12,500
○○감독원	월급 2,654,000원	12,699
○○우유	연봉 약 33,000천 원	13,179
○○북도교육청	연봉 47,157,000원	18,833

주*: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화성시의회 : 주35시간 기준, 그 외 3개 기관 주40시간 기준)
- 일급 : 일급/8시간
- 월급 : 임금/209(주40시간 기준 : 48×(365/12/7)
- 연봉 : 임금/2,504 (주40 시간 기준 : (48×52)+8시간))
※ 화성시의회 주35시간 : 연 소정근로시간 2,190시간

주**: 한시임기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위 봉급액은 주40시간 기준액임
주***: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임기제 8호 연봉한계액: (상한)55,175천원~(하한)25,274천원

39) 충청북도교육청, 군사법원의 연봉은 일반임기제 연봉 하한액을 적용

민간 사기업은 임금체계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채용공고에서 임금 및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한 4개 기관(특허법원, 화성시의회, 충청북도교육청, 군사법원)의 임금 및 수당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수당 금액이 달라지고, 초과근무수당도 실제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수당 금액이 달라지며 연가보상비도 휴가 사용에 따라 수당금액이 달라지므로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정액보조비와 직급보조비를 시급으로 환산하여 총 시간급 임금을 산출한 결과 시급 기준으로 4개 기관에 채용된 속기사보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이 낮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지원인은 주40시간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은 주40시간이므로 월급 총금액은 근로지원인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표 4-43〉 4개 기관(한시임기제, 일반임기제) 기본임금 및 수당의 시급 환산 결과

(단위: 원)

기관명	채용 직급	구분			시급***
		봉급 및 연봉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법원	한시임기제 9호	봉급 2,064,700원*	140,000	175,000	11,386
○○시의회	한시임기제 9호	연봉 24,974,000원	140,000	175,000	13,123
○○북도 교육청	일반임기제 7급	연봉 47,157,000원	140,000	180,000	20,366
○○법원	일반임기제 8급	연봉 25,274,000원**	140,000	175,000	11,603

주*: 한시임기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위 봉급액은 주40시간 기준액임
주**: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임기제 8호 연봉한계액: (상한)55,175천원~(하한)25,274천원
주***: 봉급 및 연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화성시의회 : 주35시간 기준, 그 외 3개 기관 주40시간 기준)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교육지원인력의 1인당 지원 한도 기준액은 시급 32,000원이다. 대부분 대학은 교육지원 시간 기준을 주 14시간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14시간 활동할 경우 월 기준으로 1,946,667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학생 2명을 지원할 경우에는 3,893,333원 소득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속기사인 근로지원인이 주40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은 2,472,888원이므로 교육속기사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근로지원인의 월 평균근로시간(115.84시간)을 대입하면 1,370,618원으로 근로지원인은 근로시간은 교육속기사보다 많은 반면 임금은 더 적은 결과가 나온다.

〈표 4-44〉 교육속기사 교육시간 및 임금 기준

교육속기사 시급	교육시간	임금
32,000원	주 14시간	448,000원
	월 60.8시간*	1,946,667원

주*: 주14시간×365/7/12 (주15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휴 미발생)

〈표 4-45〉 교육속기사와 근로지원인의 임금 비교

구분	교육속기사	근로지원인	
시급	32,000원	11,832원(최저시급의 120%)	
월근로시간	60.8시간*	209시간**	115.84시간
임금	1,946,667원	2,472,888원	1.370,618원

주*: 주14시간×365/7/12 (주15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주휴 미발생)
주**: 주48시간×365/7/12

〈표 4-46〉 근로지원인과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처우 비교

구분	속기사 근로지원인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본급	최저시급의 120% 2024년 시급: 11,832원 월 209시간 기준 : 2,472,888원 연 2,504 기준 : 29,627,328원 [*2,504=(48×52)+8]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연봉 상한과 하한 범위 내 임금 결정 7호 : (상한)64,651천원~31,025천원 8호 : (상한)55,175천원,(하한) 25,274원 9호 : (상한)45,5458천원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연봉 상한과 하한 범위 내 임금 결정 7급(상당) : (상한)66,396천원, (하한)47,157천원 8급(상당) : (상한) 58,248천원~(하한)41,551천원 9급(상당) : (상한)51,290천원
호봉 인정	없음	없음(연봉제)	없음(연봉제)
수당	없음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근로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기준	1주 40시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40시간 미만 근무)	주 40시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40시간 미만 근무)

4. 심층면접 결과

속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쌓을 경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직후 속기 업무능력을 높이고, 경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지원인으로 일하는 데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을 쌓을 목적으로 스타터들한테는 근로지원인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목적이 있으면 스타터가 아니어도 내가 여기서 한 경력을 몇 년을 쌓고 가겠다, 1년 정도 쌓고 가겠다 하면 그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만약 금전이 필요해서나 지금 생활이 뭔가 월급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못 하고 그 다음에 월급보다는 난 월급은 상관없어, 나는 따로 뭐 하는 게 있고 월급 상관없이 난 경력을 살 거야. 온전히 그 목적. 저는 사실 그쪽이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딱 들어온 쪽이었고 월급 경력 떠나서 스타터들한테는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젊은 스타터들한테는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나이가 있어도 어쨌든 스타트니까 난 경력이 필요하면 해야되고, 속기사가 경력 쌓기가 쉽지 않아요.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시의회 속기사는 근로지원인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업무량도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속기 업무랑 근로지원인 업무 강도를 따지면, 1년 단위를 통째로 봤을 때는 강도는 확실히 관이 많죠. 높죠.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업무나 거의 그렇게 해야 하는 예도 있고 야근은 부지기수로 하고, 회의기간 때엔. 정례나 임시회의 같은거가 열려요. 임시회의는 한 일주일 해서 많으면 길면 열흘 근데 이제 정례회의라고 있어요. 그럴 때는 행정감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포함돼서 거의 한 달 플러스로 가야 해요. 아니면 최소 22일 21일 이상 그때는 그전에 회의 준비도 해야 하고 회의 장소도 저의가 준비해야 해요. 본회의장하고 위원회가 한 세 곳 있으면 위원회실 가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차도 준비하고 다 연락도 하거든요. 부서 업무도 다 하기 때문에 차도 다 세팅해 놓고 그 전에 이제 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양식들을 딱 균형 있게 맞춰야 해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만약에 일반 회계 특별 어떤 예비비 신청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누가 어느 부분이 아니면 또 누가 어떤 건의안이라든지 예산안 새로운 심의안 같은 거를 제기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하고 그런 걸 미리 해요. 그러면 그 회의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미리 세팅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툭 들어가서 흰 메모지에 적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회의 전에 작업도 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힘들어요. 만약 한 달 회의 기간에도 남아서 야근하는데 회의 다음 한 달도 거의,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정, 편집 시간 그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교육속기사는 한 학기에 한군데 이상의 대학에서 학교당 1~2명의 학생에게 속기 서비스를 해주며, 이를 통해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기간에는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당 주에 14시간이 최대예요. 그래서 한 학교를 하면은 급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그래서 두 학교를 나눠서 투입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학교에서도 한 명한테 몰아서 주면 편하긴 한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기사는 주 14시간이 최대예요. 근데 이게 대학생들의 시간표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맡으면 또 다른 학생을 더 맡고 싶어도 이 시간대가 겹치면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속기사)

학교마다 급여 수준은 거의 똑같고요. 한 시간에 3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여러 학교를 도는 데 맞추다 보면 한 300 초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9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9월이나 3월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이런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 원을 좀 넘어서 받을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중간고사가 끼어 있는 10월 기말고사가 끼어 있는 12월 이런 시기일 때에는 수업이 일수가 부족하므로 200, 190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속기사)

주휴수당, 연차는 아예 없고요. (3만 2천 원 외에 기타 인건비나 수당 지급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방학에는 수입이 없어서 의회에서 정례회를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회를 기간이 맞으면 의회를 들어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든지 아니면 전사 작업 같은 걸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메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방학이 있어서 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또 어떻게 보면 수입이 없으니까 단점일 수가 있어요. (교육속기사)

(교육속기는) 이게 시간표도 짜기 나름이거든 이게 제가 더는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스톱하는 거고 더 달라고 이제 학생을 더 배정해달라고 하면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14점 14시간까지만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시간표만 허락이 되면은 여러 학교를 배정받는다면 진짜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야간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육속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은 승진 개념이나 연봉 상향이 없는 등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하기 위한 직장으로 삼기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지원인을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 개념으로 오래 하기에는 뭐 승진의 개념이 있으면 몰라도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젊은 사람들은 사실 아주 돈이 급급하고 생활비가 이렇게 월급이 중요한 사람 아니면은 월급이 그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거죠. 직장인이라고 개념이 작든 아니든 속기 업무를 하고 이럴 사람인데, 일단 젊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 막 시작하고 나서 이제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직장 개념을 잡아도 돼. 그건 개인차인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처음부터 직장 개념을 잡고 싶다, 젊어도 그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근데 직장 개념보다는 뭔가 그냥 나는 일단 일을 하며서 직장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잡아갈 거다, 아직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도나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공무원은 매년 임금인상을 하니까 본봉에서 올라가긴 하고, 매년 근평 평가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향이 되는데 임기제도 똑같아요. 공무원하고 이제 다 똑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 급여를 받는 거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냥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임기제일 뿐이지. 그래서 근평을 받아서 제일 높으면 7% 이제 연봉 상향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당도 나오고.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감이 크고,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평생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근로지원인은 제가 사기업에서 전산 속기할 때 이제 여러 복지사가 모여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일했었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일했었다 저랬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거기서 속기사 한 명이 근로 지원을 했었더라고요. 일이 어렵고 페이는 작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페이가 작은 거에 비해 업무가 너무 피곤하다고. (교육속기사)

(근로지원인) 이거는 완전 일 대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이 아니라 교육하고 딱 빠지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지 수행비서처럼 계속 다 해줘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교육속기사)

이게 맨날 (장애인 근로자에게) 붙어서 같이 있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떤 분은 또 좋은 분이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까다로운 분이실 수 있고, 그래서 진짜 막 정말 막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편하고 이런 분이라면 진짜 오래 일하고 급여가 적어도 보람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힘듦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급여도 그렇지만. (교육속기사)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가. 주요 일자리 및 직무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구인하는 주요 일자리는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부처 등)이고 민간훈련기관(지정 직업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등 시설, 기타) 등이다. 워크넷 채용정보에 2024년 1월~10월 게시된 채용공고 중 12건을 선정하여 분석하면, 구인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각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4-4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 분야

기관명	업무 종류
○○전산직업전문학교	건축시공 직업훈련교사
○○직업전문학교	용접, 전기 직업훈련교사
○○실용전문학교	미용사 자격증과정 강사
○○직업전문학교	보석디자인 훈련교,강사
○○직업전문학교	공조냉동 훈련교사
○○평생교육원	지게차, 굴착기 훈련교사
○○ 경북직업전문학교	CAD, 산업위생, 생산관리, 조경 훈련교사
○○직업전문학교	일반사무(OA) 강사
○○직업전문학교	CAD 강사
한국○○정보화협회 ○○광역시 평생교육원	생성형 AI 강사
○○직업전문학교	건축목공 훈련교사
○○직업전문학교	전기공사 훈련교사

최명란·윤관식(201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업무는 크게 '교과 · 생활지도', '취업 관련', '그 외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4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과 • 생활지도 관련 활동

분류	활동	역할
교과지도	유사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내용의 연계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신기술의 반영	교과전공
	자격증 시험일정에 맞춘 수업의 진행 주간 · 야간수업의 진행, 보충학습의 실시 스터디 그룹의 운영	교과운영
	출발점 해동의 확인과 수준별 개인지도 이론 30%, 실기 70% 비율에 따른 수업전략의 적용 매일의 과제 및 작품 평가	교수
생활지도	입학 동기, 과를 지원한 이유, 진로와 학생의 의지 확인 학생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함으로써 신뢰 구축 MT, 체육대회, 간담회 등 학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학생관리
	생활정보를 통한 애로사항의 파악 중도 탈락률의 방지 학생 지원 활동의 모색 지속적인 상담 활동(연 4회 이상)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우선 직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직종별, 과별 새로운 교육방식(모듈)이 적용에 따른 개발 지역특성에 따른 요구조사와 직무분석 노동부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특성을 반영	과정기획 및 개발

자료: 최명란·윤관식(2011)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4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과·생활지도 관련 활동

활동	역할
학생에게 자격취득에 관한 정보 제공 학생에게 업체 정보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학생에게 취업자격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업체와의 정보교환과 학생정보의 제공(학생들을 추천)	정보제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훈련 취업처 발굴 맞춤훈련을 위한 업체 선정, 업체와의 상담 및 조정과 약정 취업 후 1년간 사후지도	취업지도
학생선발을 위한 홍보활동 기업체와의 유대관계 유지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과의 신뢰 구축 기관홍보를 위한 활동(구청모임, 공단 클러스터 모임 참석, 통장 회의 참석, 자료 배포 등)	고객관리

자료: 최명란·윤관식(2011)

〈표 4-50〉 그 밖의 공공직업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활동

활동	역할
장비 대장에 등재된 목록들 관리 장비의 점검, 수리, 유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폐기 시설담당, 장비담당, 재료담당, 실별 담당	시설·장비의 관리
방학기간의 연수 HRD교육(표준협회 HRD마스터교육), 평생교육사 자격 준비 업체의 신기술교육 참여 학회활동, 클러스터 분임 모임, 대학원 진학	자기개발
훈련기준의 작성 및 검토(공청회 참석)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 출제 및 검토 시험감독 및 실기 검정, 시험장소의 제공	상부기관과의 협조
업무보고, 사업계획서 재료의 구매 상부기관의 행정사무감사, 1년 2회 지도점검 업무회의, 월간회의	행정업무

자료: 최명란·윤관식(2011)

나. 근로조건 및 처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 조건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되고,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표 4-51>는 채용공고의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5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기관명	직무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한국○○직업전문학교	건축시공	정규직	3,600만 원 이상/년	주 40시간
○○직업전문학교	용접, 전기	계약직(6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3,600만 원 이상/년	주 40시간
○○실용전문학교	미용사	계약직(3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가능)	2,300,000~2,500,000원/월	주 40시간
○○직업전문학교	보석디자인	계약직(12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2,500,000~3,000,000원/월	주 40시간
○○직업전문학교	공조냉동	정규직	3,800만 원~4,000만 원/년 실적 우수 및 각종 인센티브 장기근속자 자녀 및 본인 장학금 지원 능력개발 비용(연수 관련) 지원	주 40시간
○○평생교육원	지게차, 굴착기	정규직	2,500,000원/월	주 40시간
○○경북직업전문학교	CAD, 산업위생, 생산관리, 조경	계약직(12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2,600,000~3,000,000원/월	-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51〉 (계속)

기관명	직무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직업전문학교	일반사무(OA)	계약직(12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시급 20,000원	협의 가능
○○직업전문학교	CAD	정규직	시급 20,000원 이상	협의 가능
한국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 ○○교육원	생성형AI	계약직(3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시급 35,000원 이상	주 25시간 (1일 5시간)
○○직업전문학교	건축목공	계약직(3개월, 평가 후 상용직 전환 가능)	시급 17,000~20,000원	주 40시간 (1일 8시간)
○○직업전문학교	전기공사	정규직	4,200만 원~5,000만 원/년	주 40시간 (1일 8시간)

위 채용공고에서 소정 근로시간은 연봉제와 월급제는 모두 주40시간, 시간제는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채용 분야에 및 직종에 따른 표준 임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직종에 따른 임금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교 · 강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훈련기관의 임금구조는 전임 훈련교 ·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월급제(고정급제 53.2%, 고정급+성과금 31.7%)인 반면, 비전임은 시간급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김성호 외, 2020). 임금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급제와 시급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 연봉제, 실적급제, 일급제 등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급제가 높은 편이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급제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2〉 현 근무지 임금형태

(단위: %)

구분		사례수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일급제	기타
전체		745명	44.8	37.4	15.0	1.7	0.7	0.3
교·강사 구분	교사	411명	47.2	31.9	18.7	1.9	0.2	0.0
	강사	334명	41.9	44.3	10.5	1.5	1.2	0.6
전임 여부	전임	464명	61.0	13.6	22.8	2.2	0.0	0.4
	비전임	281명	18.1	76.9	2.1	1.1	1.8	0.0
연령	20대	59명	69.5	18.6	10.2	1.7	0.0	0.0
	30대	203명	50.2	33.0	14.8	0.5	1.0	0.5
	40대	270명	39.3	39.3	17.4	3.0	0.7	0.4
	50대	146명	40.4	40.4	16.4	2.1	0.7	0.0
	60대 이상	67명	38.8	53.7	7.5	0.0	0.0	0.0

자료: 김성호·김혁구·김영은(20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현 근무지 소득은 2천~3천만 원이 27.9%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은 3천만 원~4천만 원으로 1.7%로 나타난다.

〈표 4-53〉 현 근무지 연 소득

(단위: %)

구분		사례수	1천 미만	1천~2천	2천~3천	3천~4천	4천~5천	5천~6천	6천~7천	7천~8천	8천~9천	9천~1억	1억 이상
전체		745명	16.0	11.5	27.9	21.7	7.2	4.4	1.9	2.1	1.9	0.7	4.6
교·강사 구분	교사	411명	12.7	9.5	25.8	27.0	9.7	4.6	1.9	2.7	1.7	0.2	4.1
	강사	334명	20.1	14.1	30.5	15.3	4.2	4.2	1.8	1.5	2.1	1.2	5.1
전임 여부	전임	464명	3.9	7.5	33.2	27.4	8.6	5.2	2.4	2.8	2.4	0.9	5.8
	비전임	281명	35.9	18.1	19.2	12.5	5.0	3.2	1.1	1.1	1.1	0.4	2.5

자료: 김성호·김혁구·김영은(2020).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성호·김혁구·김영은(2020)의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훈련교 · 강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24.7%가 훈련교 · 강사 외 다른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56.5%는 훈련교 · 강사 일자리가 주요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소속으로 채용한 교사직과 위촉직인 강사를 두고 있다. 교사직 임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수규정」[40]에 따르면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임등급은 1등급으로 하며, 근무 1년에 대하여 1등급이 승급된다. 초임 획정 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경력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초임등급에 가산될 수 있다. 위촉 강사의 강사료는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업무처리 규칙」[41]에 따르면 시급 30,000원이고, 과정 또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의 최대 1.5배, IT특화 전문훈련과정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7만 원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할 수 있다.

〈표 4-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사직 기본급여표

등급	1	2	3	4	5	7	8	…	42	43
기본급여(천원)	2,092	2,230	2,271	2,342	2,359	2,402	2,447		5,221	5,27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수규정」

40)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자료

41)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자료

〈표 4-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사직 수당지급 기준

<table>
<tr><th>수당</th><th>지급대상</th><th>비고</th></tr>
<tr><td>1. 법정수당</td><td>○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 × $\frac{\text{시간외근무시간}}{209}$ × 1.5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frac{\text{휴일근무시간}}{209}$ × 1.5
○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frac{\text{야간근무시간}}{209}$ × 0.5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frac{8}{209}$ × 잔여휴가일수</td><td></td></tr>
<tr><td>2. 가족수당</td><td><table><tr><th colspan="2">부양가족</th><th>월 지급액</th></tr><tr><td colspan="2">배우자</td><td>40,000원</td></tr><tr><td colspan="2">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td>20,000원</td></tr><tr><td rowspan="3">자녀</td><td>첫째자녀</td><td>30,000원</td></tr><tr><td>둘째자녀</td><td>70,000원</td></tr><tr><td>셋째 이후 자녀</td><td>110,000원</td></tr></table></td><td>월액</td></tr>
<tr><td>3. 자녀학비 보조수당</td><td>○ 고등학교 취학자녀 : 학비(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td><td></td></tr>
<tr><td>4. 특수근무 수당
○ 교직수당</td><td>○ 교사직 : 300,000원</td><td>월액</td></tr>
<tr><td>5. 장기근속 수당</td><td>○ 5년 이상 : 50,000원
○ 10년 이상 : 90,000원
○ 15년 이상 : 120,000원
(근속년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는 월 30,000원,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td><td>월액</td></tr>
<tr><td>6. 업무대행 수당</td><td>○ 50,000원(다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 30,000원</td><td>월액</td></tr>
</table>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강사료(시간당)[42]
훈련강사	ㅇ 제49조*에 의하여 위촉된 훈련강사	30,000원

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업무처리 규칙」[43]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주요 직무

사례조사를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훈련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최신 직업기술 및 직무능력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훈련생에게

42) 훈련강사의 강사료는 과정 또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의 최대 1.5배, IT특화 전문훈련과정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7만 원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에 대한 재위촉시 승인 인정 기한을 해당연도까지로 한다.
일반적인 교과 내용 이외의 전문교육 강사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육훈련규칙」 별표4 강사료 지급 기준 일반 2급 및 보조강사에 해당하는 강사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 업무처리 규칙」
제48조(강사의 활용) 원장 또는 지역본부장 · 지사장은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9조(강사위촉) ① 원장 또는 지역본부장 · 지사장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해당 강사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강사약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서 및 위촉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강사료 지급) 강사료는 별표 6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성과를 평가한다. 취업 지원 측면에서는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 산업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 기회 및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고,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행정업무로는 훈련생의 출석 및 학습 성과를 관리하고 교육비 지원 및 정부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수요 강좌(직종)도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는 퇴직 간호사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강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강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최근 주목받는 직종(AI 등)으로 강의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전임교사보다 강의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를 선호한다고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기존에 실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훈련교사를 하다가도 실무 현장으로 복귀해서 현업에 종사하거나 훈련교사와 현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7명을 고용하여 전산세무, 전산회계 강좌를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강사의 임금은 월급제이며 기본급과 강의에 따른 성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성과 수당은 강좌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하고 지급하며 지급 비율은 훈련교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정한다. 2024년 6월 임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210만 원 정도이고 성과 수당은 훈련교사별로 21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로 책정되었으며, 총 월급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230만 원에서 420만 원 사이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설, 추석에 명절 상여금(개인별 근속 기여도에 따라 1인당 20~30만 원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자기개발 교육 훈련비, 학위취득 과정 및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증취득 과정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자, 교과 운영자 및 교수자, 시설 · 장비의 관리자, 학생 관리자, 상담 및 조언자, 정보제공자, 자기개발자, 행정업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교육과정의 설계부터 훈련생의 취업 및 경력 개발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한 교육 전달자를 넘어 훈련생과 산업체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최신 기술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강의 측면에서 훈련생의 능력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훈련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신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주도하며 훈련생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진로 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업 및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습 및 취업 연계 기회를 확보하게 한다. 그 밖에 훈련생 출석 및 학습 성과를 관리하는 등 행정 및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반면, 교육 준비와 학습자 관리 및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성과 중심 평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체와 협력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거나 민간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수강생 모집, 상담 등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우 비교

채용공고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금을 근로지원인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용공고 기관의 임금 분석 시 채용공고에서 임금 정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제시한 기관은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임금 외 각종 수당은 별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연봉, 월급, 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 분석을 하였다.

〈표 4-56〉 채용공고 기관 임금과 시급 환산 결과

기관명	임금(수당 미포함)	시급(원)*
○○전산직업전문학교	연봉 36,000,000원	14,377
○○직업전문학교	연봉 36,000,000원	14,377
○○실용전문학교	월급 2,300,000원	11,004
○○직업전문학교	월급 2,500,000원	11,961
○○직업전문학교	연봉 38,000,000원	15,175
○○평생교육원	월급 2,500,000원	11,961
○○ 경북직업전문학교	월급 2,600,000원	12,440
○○직업전문학교	시급 20,000원	20,000
○○직업전문학교	시급 20,000원	20,000
한국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	시급 35,000원	35,000
○○직업전문학교	시급 17,000원	17,000
○○직업전문학교	연봉 42,000,000원	16,773

주*: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 월급 : 임금/209(주40시간 기준 : 48×(365/12/7)
- 연봉 : 임금/2,504 (주40 시간 기준 : (48×52)+8시간))

채용공고 기관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구분되고 시급제는 17,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월급제와 연봉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채용공고 전체 기관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 11,004원이고 최고 35,000원이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의 2024년 시급은 9,860원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시급 대비 1,144원에서 25,140원 정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연봉과 수당이 안정적이고 정규직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간기관은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가 많고 시급제로 운영되는 일도 있어 임금 변동 폭이 큰 경우도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시급은 근로지원인보다 높고, 훈련교사의 실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훈련교사는 다른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 소득금액은 근로지원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표 4-57〉 근로지원인과 채용공고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처우 비교

구분	근로지원인	채용공고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본급	최저시급 2024년 시급: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 2,060,740원 연 2,504 기준 : 24,689,440원 [*2,504=(48×52)+8]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 : 17,000원~35,000원 월급제 : 2,300,000원~2,600,000원 연봉제 : 36,000,000원~42,000,000원
호봉 인정	없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수당	없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근로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기준	1주 40시간 (시급제 1개 기관 : 1주 25시간)

4. 심층면접 결과

인터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교사자격증 취득 후 민간훈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으며 경력을 쌓고 공공훈련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훈련기관은 산업 트렌드에 따라 유망한 훈련직종은 수입에 유리할 수 있으며, 훈련생 규모에 따라 급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초임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초보들은 그렇죠. 초보들은 학교에서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100% 가서 소화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민간 입장에서도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줄이겠죠.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5년, 10년 정도 넘으면 300이라고 보면 되고, 실장이나 교무부장 이렇게 하면은 350정도. 직종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대학교 HRD 교육팀 팀장)

시간 강사는 현재 18,000원부터 해서 보통 25,000원, 20,000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좀 뜨는 직종들 그런 데는 많이 줘요. 급여도 기본급 한 4백, 5백만 원 주고. (○○○○대학교 HRD 교육팀 팀장)

공공 (훈련기관)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요. 다 공공으로 하고 싶죠. 왜냐하면 급여나 처우가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주로 취업은 민간으로 하는데,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려는 교사도 꽤 많아요. (○○○○대학교 HRD 교육팀 팀장)

예를 들어서 뜨는 직종, 최근에는 AI나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런데 전임으로 있으면 월급에 한계가 있어서 전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강을 막 다니면서 시간당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전임으로 있으면 월급을 받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또 어느 게 유행하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AI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를 엄청나게 뛰고. (○○○○교육대학교 HRD 교육팀 파트장)

공공에서 일하는 교사는 공무원하고 같다고 봐야 해요. 법무부도 훈련교사 있거든요. 공무원 체계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요. 공공은 아마 그런 정도 수준일 거고 민간은 조금 더 차이가 날 거예요. 민간은 임금 표준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 훈련생들이 많고 활발하게 사업이 된 훈련기관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40시간 하겠어

요? 야간수업하겠어요? 안 하죠. (○○○○교육대학교 HRD교육팀 팀장)

직업훈련교사는 주도적으로 훈련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성향상 근로지원인 직무를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뭐라도 전문가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자기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 지원하고 가르치는 걸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교사는 훈련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훈련생을 가르치려고 오는 거고, 교사한테 교육받은 훈련생은 각 산업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간다. (○○○○교육대학교 HRD교육팀 팀장)

교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보조업무를 하시려는 건 그렇죠. 그러신 분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가 임금수준이 거의 최저임금 정도인지라 거의 뭐 훈련 교사분들한테 근로지원인 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권유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겠어요. (○○○○대학교 HRD 교육팀 파트장)

훈련 교사분들이 오셔서 그 장애인 근로자를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 핵심 업무는 이제 장애인 근로자가 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근로지원인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업무 지시를 받고 그거를 이제 주변적인 업무를 하시는 건데 오시면 굉장히 근로자분들 가르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HRD 교육팀 파트장)

제6절 직업상담사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가. 주요 일자리 및 직무내용

직업상담사를 구인하는 일자리는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로 구분된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고용서비스와 취업알선 및 지원, 인재 파견,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고용서비스가 있다. 채용정보에 2024년 1월~10월 게시된 채용공고 중 20건을 선정하여 분석하면, 구인기관은 직업전문학교,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등이다. 각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상담사 채용 분야는 아래와 같다.

〈표 4-58〉 직업상담사 채용분야

기관명	업무 종류
○○전문학교	- 직업상담사, 행정업무, 훈련생 상담
○○직업전문학교	- 훈련생 취업 및 진로 상담
○○○○유한회사	- 취업알선, 구인·구직상담, 이력서 및 면접클리닉, 구인발굴, 구직발굴,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운영 지원 등
○○○○잡(주) 서울북부지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주)○○에이치알 부산지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주)○○○○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주)○○잡컨설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사단법인 한국○○협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주)○○잡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58〉 (계속)

기관명	업무 종류
○○여성인력개발센터	- 취업지원팀 퍼실리테이터(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 담당, 수료생 DB관리 및 취업처 사후관리, 구인처 발굴, 취업상담 등 기타 취업지원팀 업무)
(주)○○에이치알디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전반)
(사)○○중앙회 ○○여성인력개발센터	-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새일여성인턴, 취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상담 및 발굴, 이력서 취업특강)
○○커리어센터 대구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주)○○○○ 용인지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직업전문학교	- 직업훈련생 취업지원 관련업무 및 사무행정.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구직자 및 구인처 상담, 직업훈련생 사후관리, 기타 직업훈련 상담 관련 업무
(주)○○임플로이먼트코리아 서울남부지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상공회의소	- 워크넷을 활용한 취업 알선 업무. 구인 및 구직 상담 및 관리업무, 채용박람회 등 채용행사 구인기업 모집, 교육참여자 모집, 수료생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재)○○일자리재단	- 구인 및 구직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사업 등 지원
(사) ○○고용정책연구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상담사
(사)한국○○○○협회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직업훈련원 취업지원 관련 업무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직업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활동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 직업상담사의 직무는 취업상담, 진로상담, 직업복귀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훈련상담, 심층직업상담, 직업정보 수집, 직업적성 검사, 직업정보 제공,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 직업상담행정 등이 있다.

직업상담사 채용공고 20건 중 10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당할 직업상담사를 구인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44](통상 1년), 소득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직업상담사 채용 조건은 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되고,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 표는 채용공고의 채용조건 및 근로조건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4-59〉 직업상담사 채용공고(2024년 1월~8월)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전문학교	정규직	2,600만 원 이상/년	주40시간
○○직업전문학교	정규직	시급 9,860원 이상 (임금 협의 가능)	주40시간
○○○○유한회사	계약직(12개월)	2,940만 원 이상/년	주40시간
○○잡(주) 서울북부지사	정규직	2,600만 원~3,100만 원/년 (경력직 연봉 협의) - 월별, 분기별 성과 인센티브 100% 지급	주40시간
(주)○○에이치알 부산지사	정규직	2,600만 원 이상/년 알선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주40시간
(주)○○○○	정규직	2,640만 원/년 (경력자는 별도 협의 가능) - 취업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	주40시간
(주)○○잡컨설팅	정규직	2,700만 원/년 - 알선 시 인센티브 별도 지급	주40시간

44) 전담상담사와 1:1 심층상담(3~6회)을 통해 개인 역량, 의지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통상 1년, 최대 22개월)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4-59〉 (계속)

기관명	근로계약기간	임금수준(보수)	근로시간
사단법인 한국○○협회	정규직(수습3개월)	2,580만 원~3,500만 원/년 (경력에 따른 협의) - 모든 성공금 신청분에 대한 상담사 인센티브 8% 이상 지급 및 알선 인센티브 추가 지급	주 40시간
(주)○○잡	정규직	2,654만 원~2,834만 원/년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 지급	주 40시간
○○여성인력개발센터	계약직(~24년 12월 31일)	2,390,120원/월	-
(주)○○에에이치알디	계약직 (5개월)	2,400,000원/월	주 40시간
(사)○○중앙회 ○○여성인력개발센터	계약직(1년,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검토)	2,990만 원 이상/년 - 업무평가 대비 인센티브 별도 지급	주 40시간
○○커리어센터 대구동부	정규직(수습3개월)	2,600만 원~3,200만 원/년 - 취업시 상담사별 인센티브 최대 12% 지급 - 우수사원 인센티브 지급	주 40시간
(주)○○○○ 용인지점	정규직(수습3개월)	신입기준 2,600만 원/년	주 40시간
○○직업전문학교	계약직(6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시급 9,860원~12,000원	주 18시간 (주3일, 1일 6시간)
(주)○○임플로이먼트 코리아 서울남부지사	정규직	2,150,000원/월 - 취업실적에 따른 월 인센티브 (5%~12%)	주 40시간
○○상공회의소	계약직(4개월, 재계약 가능)	2,200,000원~2,500,000/월	주 40시간
(재)○○일자리재단	계약직(4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검토)	2,350,000원/월	주 40시간
(사)○○고용정책 연구원	정규직	2,700만 원/년(신규 초임) - 경력과 능력에 따라 임금 협상 가능 - 성과 인센티브(연 1회)	주 40시간
(사)한국○○○○협회	계약직(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2,300,000원/월	주 40시간

위 채용공고에서 대부분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호봉에 따른 임금 인상보다 경력과 능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0건 채용공고 중 10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담당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며, 민간위탁기관 신청 자격 중 인적 요건으로 업무 담당자는「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의 각 호[45]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며, 업무담당자는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이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46](시간제 근로 포함)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사는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 측면에서 살펴보면 월급 및 연봉 외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비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비는 기본금(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1인당 45만 원~70만 원)과 취업인센티브(참여자의 조기취업 정도,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4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2012. 6. 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46)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법인의 경우 동일 지사에 한함)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가능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 지급)으로 구성된다.

〈표 4-60〉 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개요

□ (위탁비) 참여자 1인당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 (기본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1인당 ① Ⅰ·Ⅱ유형 청년: 45만 원, ② Ⅱ유형 중장년: 50만 원, ③ Ⅱ유형 특정계층: 70만 원

- 직업훈련 겸업기관 및 대학 내 사무소는 기본금 감액 지급

	Ⅰ·Ⅱ유형 청년	Ⅱ유형 중장년	Ⅱ유형 특정계층
일반	45만 원	50만 원	70만 원
대학 내 사무소[1)]	35만 원	40만 원	60만 원
직업훈련 겸업기관[2)]	30만 원	35만 원	45만 원

* 1) 정부·공공기관 건물에 사무소 설치 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학 내 사무소 기준으로 기본금 감액 지급

* 2) 위탁기관 대표자, 대주주(전체 주식의 50% 이상 보유) 본인과 이들의 배우자, 부모·자녀가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를 겸업하고 있는 위탁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해당 기관의 직업훈련에 연계하는 경우 기본금 차감

○ (취업인센티브) 참여자의 조기취업 정도,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표 4-61〉 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 기본 단가표(단위: 만원)

<table>
<tr><th>유형
취업역량</th><th colspan="5">Ⅱ유형 특정계층</th><th colspan="5">Ⅰ유형 청년특례, Ⅱ유형 청년·중장년</th></tr>
<tr><td rowspan="5">낮음
(취업역량평가 A·B등급)</td><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임금연동 인센티브</td><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임금연동 인센티브</td></tr>
<tr><td>~205 미만</td><td>~235 미만</td><td>~265 미만</td><td>265 이상~</td><td>~205 미만</td><td>~235 미만</td><td>~265 미만</td><td>265 이상~</td></tr>
<tr><td>6개월이내 취업</td><td>60</td><td>85</td><td>110</td><td>175</td><td>6개월이내 취업</td><td>50</td><td>75</td><td>100</td><td>155</td></tr>
<tr><td>12개월이내 취업</td><td>40</td><td>65</td><td>90</td><td>155</td><td>12개월이내 취업</td><td>30</td><td>55</td><td>80</td><td>135</td></tr>
<tr><td>18개월이내 취업</td><td>20</td><td>45</td><td>70</td><td>115</td><td>18개월이내 취업</td><td>10</td><td>35</td><td>60</td><td>95</td></tr>
<tr><td rowspan="5">높음
(취업역량평가 C·D등급)</td><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임금연동 인센티브</td><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임금연동 인센티브</td></tr>
<tr><td>~205 미만</td><td>~235 미만</td><td>~265 미만</td><td>265 이상~</td><td>~205 미만</td><td>~235 미만</td><td>~265 미만</td><td>265 이상~</td></tr>
<tr><td>6개월이내 취업</td><td>40</td><td>65</td><td>90</td><td>155</td><td>6개월이내 취업</td><td>30</td><td>55</td><td>80</td><td>135</td></tr>
<tr><td>12개월이내 취업</td><td>20</td><td>45</td><td>70</td><td>135</td><td>12개월이내 취업</td><td>10</td><td>35</td><td>60</td><td>115</td></tr>
<tr><td>18개월이내 취업</td><td>10</td><td>25</td><td>50</td><td>115</td><td>18개월이내 취업</td><td>5</td><td>15</td><td>40</td><td>95</td></tr>
</table>

□ 알선/본인 취업 별 지급 기준

취업인센티브 지급 기준	지급금액
① 컨설팅(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력서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한 알선취업 → 컨설팅 제공 일자리와 상담알선한 일자리가 동일	단가 대비 1.2배
② 알선취업 성공(컨설팅 없는 알선취업) 또는 대면상담서비스 6회 이상* 제공을 통한 취업 * 대면상담일에 제공한 선호직종 일자리알선 건수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건수의 합계가 3회 이상인 경우	단가금액
③ 간접 고용서비스(예: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총 4회 이상)를 통한 취업 * 같은 날에 여러 가지 간접고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회만 인정	단가 대비 50%

자료 : 고용노동부「2024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가. 주요 직무

사례조사를 실시한 직업상담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는 구직자 상담업무, 구인 기업 상담 업무,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연계, 진로 상담 및 경력 개발, 취업 취약계층 지원 업무,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며, 취업과 고용유지를 목표로 맞춤형 직업 매칭, 상담, 취업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업무와 행정업무 비율은 상담업무가 약 40%, 행정업무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므로, 상담업무보다 행정업무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때에 따라 상담업무는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예도 있다고 한다. 상담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자 상담업무 측면에서 구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과 적합성 평가, 면접준비 및 모의 면접 진행, 취업 시장 트렌드와 정보제공이 있고 구인 기업 상담업무 측면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파악, 기업 맞춤형 구직자 추천 및 채용 지원, 고용유지와 인재 관리 방안 제시가 있다.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연계 세부 내용은 구직자의 역량과 직무능력 평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천 및 안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기획 및 운영, 교육 이수 후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가 있고, 진로 상담 및 경력 개발에서는 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력계획 수립, 적성검사 등 진로 탐색 지원, 중 · 장기 경력계획 설계 및 멘토링 제공, 직무전환 또는 전직 전략수립이 있다. 그 밖에 취업 취약계층 지원 업무는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대상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고용지원, 자활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성과 관리가 있다.

나. 근로조건 및 처우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 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한 직업상담사의 기본급은 역량과 경력에 따라 결정되며 사례조사 대상자의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시간 외 근무수당과 식대보조 금액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으며 인센티브는 분기별로 취업실적, 취업 알선 등을 바탕으로 지급되었다. 인센티브는 기관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고,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다.

3. 비교 결과

가. 직무 비교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인의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돕고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 개개인의 능력, 경험, 성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단순히 이력서 첨삭이나 구직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무 적합성과 강점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탐색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연계해 준다.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취업자의 초기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취업 취약 계층에게 단순한 취업 정보 전달을 넘어 개별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추천하고 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채용을 유도한다. 한편, 직업상담사는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 특강, 진로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경력단절 구직자를 위

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는 수동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개입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우 비교

채용공고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근거로 직업상담사 임금을 근로지원인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용공고 기관의 임금 분석 시 채용공고에서 임금 정액을 명시하지 않고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제시한 기관은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임금 외 각종 수당은 별도 명시하지 않았고 인센티브 금액은 채용공고 내용으로는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연봉, 월급, 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 분석을 하였다.

〈표 4-62〉 채용공고 기관 임금과 시급환산 결과

기관명	임금(수당 미포함)	시급(원)*
○○전문학교	연봉 36,000,000원	10,388
○○직업전문학교	시급 9,860원	9,860
○○유한회사	연봉 29,400,000원	11,741
○○(주) 서울북부지사	연봉 26,000,000원	10,383
(주)○○에이치알 부산지사	연봉 26,000,000원	10,383
(주)○○○○인	연봉 26,400,000원	10,543
(주)○○잡컨설팅	연봉 27,000,000원	10,782
사단법인 한국○○협회	연봉 25,800,000원	10,303
(주)○○잡	연봉 26,540,000원	10,577
○○○○인력개발센터	월급 2,390,120원	11,435
(주)○○○○에이치알디	월급 2,400,000원	11,483
(사)○○중앙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연봉 29,000,000원	11,940
○○커리어센터 대구동부	연봉 26,200,000원	10,463
(주)○○○○ 용인지점	연봉 26,000,000원	10,383
○○직업전문학교	시급 9,860원	9,860

〈표 4-62〉 (계속)

기관명	임금(수당 미포함)	시급(원)*
(주)○○임플로이먼트코리아 서울남부지사	연봉 42,000,000원	10,287
○○상공회의소	월급 2,200,000원	10,526
(재)○○○○일자리재단	월급 2,350,000원	11,244
(사)○○○○고용정책연구원	연봉 27,600,000원	11,022
(사)한국○○○○협회	월급 2,300,000원	11,004

주*: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 월급 : 임금/209(주40시간 기준 : 48×(365/12/7)
- 연봉 : 임금/2,504 (주40 시간 기준 : (48×52)+8시간))

채용공고 기관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구분되나 연봉제 형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채용공고 전체 기관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 9,860원이고 최고 11,940원이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의 2024년 시급은 9,860원이므로 직업상담사에 비해 최대 2,080원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상담사의 경우 성과 중심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변동 폭이 큰 경우가 있고, 경력에 따른 연봉 협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는 취업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업상담사 역량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표 4-63〉 근로지원인과 채용공고 기관 직업상담사 처우 비교

	근로지원인	채용공고 기관 직업상담사
기본급	최저시급 2024년 시급: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 2,060,740원 연 2,504 기준 : 24,689,440원 [*2,504=(48×52)+8]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 : 17,000원~35,000원 월급제 : 2,300,000원~2,600,000원 연봉제 : 36,000,000원~42,000,000원
호봉 인정	없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수당	없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있음>
근로 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기준	1주 40시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심층면접 결과

인터뷰에 따르면 직업상담사는 민간,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입직하므로 근로지원인과는 직무 성격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인식이 있다.

(직업상담사가) 제일 (취업) 많이 하는 데가 민간위탁기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새일센터라든지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대학 일자리센터나 재학생 맞춤형이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국가보훈부라든지 이런 쪽도 직업상담사들이 많이 가려고 해요. 민간 위탁기관에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협회 센터장)

근데 이제 문제는 급여가 낮고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급여도 낮고 근데 역량은 국취(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선까지 다 해야되면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키워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학벌이 더 높고 자기보다 경력이 더 좋은 지금 취업 지원 서비스나 이런 걸 상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역량을 더 키워야 하는데 급여는 2,600에서 2,800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5년 차가 되어도 비슷해요. 10년 차가 되어도 비슷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학이나 강사나 컨설턴트나 이런 쪽으로 빠지죠. (○○직업상담사협회 센터장)

(직업상담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근무 강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들은 사실은 다 좀 크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탁기관별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담업무다 보니까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많고 이제 그런 업무적으로 힘듦과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휴직률이나 퇴직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사의 경우에 보통 신입분들은 좀 오해가 상담일을 하겠지라는 데 생각이 많으신데 상담이 한 절반 나머지 반은 행정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행정업무를 하려고 상담을 왔느냐고 이렇게 좀 딜레마 오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너무 행정업무가 많다고. (○○직업상담사협회 선임연구원)

직업상담사분들이 근로지원인으로 가는 예는 없을 것 같아요. 분야가 아예 다르다고 저는 보여지고 (직업상담사는)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복지 마인드 이런 것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내담자가 취업했을 때,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런 뿌듯함을 느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때문에... (○○○○상담사협회 센터장)

근로지원인은 높은 업무 강도와 비교하면 처우가 낮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근로지원 업무를 단순 보조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해 직업적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근로지원인 직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게 좀 약할 것 같고 거기서 하는 일 자체도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만큼 노력해서 자기도 자격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일 강도 자체도 여기(근로지원인)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분들을 계속 신체적으로 케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명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협회 선임연구원)

(근로지원인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시면 저는 좀 없다는 것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상담사를 선택한 이유가 상담이 어찌 됐든 하려고 입직을 한 건데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이런 복지 체계나 비슷할 거긴 한데 저는 어찌 됐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조일이나 이렇게 하는 일로 알고 있어서 저의 상담이나 저의 개인적인 성과나 경력 개발이나 역량 개발을 하기에는 좀 다른 직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직업상담사)

솔직히 (근로지원인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보는 환경은 안 될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급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1년 계약은 안정적인 형태도 아니고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희망하는 이유가 높은 연봉 혹은 저 같은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되는 케이스도 아니고. (직업상담사)

저도 이 근로지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이런 직업이나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일단 나라 측이나 아니면 공단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투자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제도는 뭐고 근로지원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국취(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국취를 너무나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이나 지하철, 버스 광고 인터넷 광고, TV 광고 혹은 의무적으로 대학 기관에 좀 넣어서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여성 인력개발센터에 이 제도를 하게 해서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좀 만드는 이렇게 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선행이 되면 좀. (직업상담사)

제 5 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로지원인과 유사한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보수지급 실태를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처우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사례조사하고 근로지원인과 비교하였다. 유사 인적지원제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수화통역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등 총 6개 직역이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근무조건 및 임금지급 현황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기간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이다. 근로지원인은 지원기능과 장애인 근로자의 주요 장애 유형에 따라 제1유형(업무보조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제3유형(적응지도형)으로 구분된다.

근로지원인 임금은 서비스 시간(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 교육시간(법정의무교육 및 공단 참여시간), 연차 시간(연차 사용일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일요일은 주휴로 처리되므로 별도 산정 제외), 주휴시간으로 구성된다.

2024년 근로지원인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제2유형에 속하는 한국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근로지원인 등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0%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제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고, 제2유형 의사소통형 근로지원인 임금은 시급 11,832원이며, 제3유형 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희망 및 지원평가 결과에 따라 원활한 근로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동시지원 시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 임금에서 20% 가산,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지원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지원인DB 상에서 동시지원을 실시한 근로지원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실시한 근로지원인은 총 3,280명으로 근로지원인 4명 중 1명은 두 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 중 1:2 이상의 동시지원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22명으로 전체 장애인 이용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통해 판정된 일일 근로지원 필요시간 즉 '결정시간'은 평균 5.9시간이며,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115.8시간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4.345주 근무 시 최대 근무시간인 173.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분포상 상위 15%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임금은 1,576,567원이며 전체 임금 분포 중 하위 25%는 1,064,880원 이하이며, 상위 25%는 2,052,852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사 인력의 자격제도 및 현황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동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제도는 없으나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이수 확인증이 발급되며 최종 교육이수증은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할 경우 발급된다. 현장실습은 교육이수자가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접수한 활동지원기관에서 이용자(장애인)와 연계가 확정된 시점에 진행한다. 2022년 말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139,509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09,24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94.6%인 103,3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점역사와 교정사를 통합한 점역·교정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인하였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점역교정사 자격은 점역 또는 교정 가능한 과목유형 및 숙련된 과목 수에 따라 1, 2, 3급으로 분류한다. 자격제도를 관리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역교정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5월 현재 1급 209명, 2급 224명, 3급 1,192명이다. 점역교정사는 주로 시각장애인 기관 예컨대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 등에서 점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 3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56개소가 있다(맹학교 13개소, 복지관 15개소, 시설 13개소, 단체 15개소).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청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농아인협회가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2022년 기준 1,973명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한국농아인협회 등), 공공기관, 수어상담 및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기관 등이 주요 근무지이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 지역의 200여 개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속기사는 속기 문자를 사용하여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받아쓰거나 컴퓨터 속기 기계로 기록하는 일을 한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인정하는 속기사 자격증(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리되며 관련 자격증은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회, 의회, 법원, 검찰청 등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대학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청각장애인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속기사를 통하여 강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 · 2급 및 3급으로 구분되며 자격제도는「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에 근거하고 있다. 훈련교사 자격취득자는 2024년 10월 기준 205,644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다. 그 밖에도「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 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이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제도를 관리한다. 고용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자리 위탁사업 및 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약 1만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유사 인력의 근로조건 사례조사 및 근로지원인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지원인 임금은 시급 체계이며, 제1유형 및 제3유형은 최저임금이고 제2유형은 최저임금의 120%이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지원인도 근무할 수 없다. 장애인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근로일수가 확정되므로 소득이 불안정한 예도 있고, 장애인 근로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지원인이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지원인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은 지급되고 있으나 호봉 가산 또는 경력인정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고 업무가 본질적으로 지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유사 인적지원제도의 종사자들로부터 근속 유인이 낮고 직업적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의 유사 직역을 비교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서 신체적 도움과 가사 도움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근로지원인과 같이 시급 체계이고, 경력인정이나 호봉상승은 없으나 근로지원인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급여비용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받으므로 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지원사는 근로지원인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데 월평균 15.6시간 더 근로하며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15만 4천 원 더 높게 나타났다.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점역과 교정을 담당하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고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초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근로지원인보다 낮으나 경력인정 및 호봉상승,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장기적으로 근로지원인에 비해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초임 시급이 근로지원인보다 낮다 하더라도 고정 근무에 따른 임금 실수령 금액이 높고, 연차 사용이 자유로우며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근로지원인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화통역사의 주요 근무처도 사회복지기관 등이며, 그 형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점역교정사와 유사하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식도 점역교정사와 유사하다.

속기사는 회의나 법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며, 고정 근무시간과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갖고 있다. 속기사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시급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고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이 없으므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기회가 있고, 수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예도 있으므로 임금 실수령 금액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높은 경우가 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상담사 임금수준은 근로지원인에 비해 높지 않으나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실수령 금액은 높은 경우가 있다.

유사인적지원제도의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현장 도우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직업적 가치가 폄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신체적 · 정서적 부담이 높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 직무와 비교했을 때 복리후생, 상여금이 제공되지 않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에 따른 임금 가산이 없으므로 장기근속 유인이 부족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때 근로지원인도 출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소득도 보장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조건이 조성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업무를 하는 특성상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표 5-1〉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1

구분	근로지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점역교정사
임금기준	제1유형 : 최저임금 제2유형 : 최저임금 120% 제3유형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건복지부 활동급여의 75%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4급(자격증 보유) 또는 5급(미보유) 직위 ·4급 기준: 1호봉 월 2,140,300원 ~ 31호봉 3,806,400원 ·5급 기준 : 1호봉 월 2,093,900원 ~ 31호봉 3,656,400원
임금체계	시급	시급 - 포괄임금제 - 비포괄임금제	1년당 1호봉 가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수당 및 상여금	없음	인건비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로시간	장애인 근로자 근무일(일 4~8시간)	이용자와 협의	주 40시간

주: 점역교정사는 사회복지관근무 기준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 5-2〉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2

구분	수화통역사	속기사
임금 기준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가이드라인] 4급(자격증 보유) 또는 5급(미보유) 직위 ·4급 기준: 1호봉 월 2,140,300원 ~ 31호봉 3,806,400원 ·5급 기준 : 1호봉 월 2,093,900원 ~ 31호봉 3,656,400원	[2024년 국가공무원 일반임기제 기준]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연봉 상한과 하한 범위 내 임금 결정 ·7호 : (상한)64,651천원~31,025천원 ·8호 : (상한)55,175천원,(하한) 25,274원 ·9호 : (상한)45,5458천원
임금 체계	1년당 1호봉 가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유사경력 80% 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불인정)	연봉제 - 호봉 가산 없음
수당 및 상여금	·명절휴가비(봉급액의 120% : 설, 추석 각 60% 지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근로 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주: 수화통역사는 사회복지관 근무 기준임

〈표 5-3〉 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처우 비교-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직무지도원
임금 기준	[2024년 1월~10월 워크넷 채용공고 기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 : 17,000원~35,000원 ·월급제 : 2,300,000원~2,600,000원 ·연봉제 : 36,000,000원~42,000,000원	[2024년 1월~10월 워크넷 채용공고 기준]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 : 17,000원~35,000원 ·월급제 : 2,300,000원~2,600,000원 ·연봉제 : 36,000,000원~42,000,000원	외부선임: 최저임금 내부직원: 1일 25,000원
임금 체계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시급
수당 및 상여금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채용공고 상 확인되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있음>	없음
근로 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일 4~8시간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2절 제언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신하영, 서정은, 2018; 김윤영, 이영석, 조혁진, 최희선, 2023; 홍예람, 조상미, 2024). 또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종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처우는 종사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 질 관리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근로지원이 근로지원 지원사업의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주제로 유사 직역과 근로조건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근로지원인 처우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유사 인적지원제도와 비교하면 근로지원인의 시급이 유사 직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지원인 유입이 낮은 요인으로는 호봉 및 경력 불인정, 장애인 근로자 결근에 따른 임금 소득 감소,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약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지원인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구조로 인해 장기근속과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의 유입을 확대하고 경력이 오래된 근로지원인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유지해 가기 위한 유인 또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시간누적 임금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근속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근로지원인이 안정적 급여 지급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근로 및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활동 누적시간에 따른 시급 가산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 가지 인적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근로지원인의 급여 수준이 큰 폭으로 낮지 않았으나 임금체계가 시급에 기반하며 경력인정이나 호봉상승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증가해도 임금상승이 발생되지 않는다.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2유형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근로지원인에 대해 가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분석결과 제2유형의 근로지원인의 임금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 인적지원제도 유형인 수화통역사나 점역교정사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초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지원인 임금이 호봉제나 기타 경력에 따른 임금 가산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지원인이 일정 누적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시급을 가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근로지원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당수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장기근속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지원인이라면 10년 이상 근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은 인상되었으나 이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나 처우가 뒤따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신규 근로지원인의 계속근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지원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누적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계될 수 있다. 먼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자 요건과 관련해, 근로지원인 급여체계는 서비스 결정시간에 기반한 시급제이므로 연간 총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들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의 근로자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해 매년 호봉을 상승시키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 누적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가산해 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체 근로지원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3년 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설정하여 기준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산액 산출을 위한 가산율은 앞서 살펴보면 유사 인적지원 제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급으로 환산된 호봉상승률인 2~3% 수준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가산 지급을 3년마다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가산률은 최대 5%까지 고려할 수 있다.

누적가산수당 지급제도 도입 제도를 2024년 사업내용을 기초로 하여 설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4년을 기준으로 3년간 근속함과 동시에 기준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근로지원인은 총 3,125명이며, 시간당 임금에 대한 가산율을 2~5%로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소요 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2% 가산될 경우 1억1천22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는 전체 근로지원인 연간 총급여액의 0.5%에 해당된다. 시간당 가산율이 5%의 경우 2억8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연간 총급여액의 1.3%에 해당된다.[47]

47) 이러한 추정액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을 가정할 때 결과값이며, 제도도입 후 3년 뒤에는 가산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해 가산률을 인상시켜야 하며, 최초로 3년 간 기준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도 최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근속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은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게 되며 추가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누적시간별 가산수당이 차등되므로 매년 누적시간별 가산률과 가산액을 고시하여 근로지원인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지원인 근로시간누적 가산수당 지급제도 도입안 >

□ 목적

- 장기근속 근로지원인의 처우개선 및 소득안정 도모
- 근로지원인 계속 고용 및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 유인

□ 대상

- 최근 3년간 근속하였으며, 기준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지원인
  *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3년간 누적 시간

□ 방식

- 위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지원인에게 시간당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임금과 함께 매달 추가로 지급
- 가산수당의 가산율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5%에서 정할 수 있음
- 가산적용 후 3년마다 3년간 근속과 동시에 기준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지원인에 한해 가산율을 인상하여 지급

□ 추정 소요 예산

- 2024년 월평균 근로시간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기준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는 3,125명임
  * 115.8시간(월평균 근로시간)×12개월×3년 = 4,169시간

<근로지원인 가산수당 도입에 따른 추가소요액 추정(2024년 기준>

(단위: 원, %)

실지급액		근로지원인 가산수당 추가소요액(원)		
전체 근로지원인 총급여액(a)	3,125명 총급여액	시간당 임금 2% 인상 (b)	시간당 임금 3% 인상 (c)	시간당 임금 5% 인상 (d)
20,850,893,345	5,612,847,149	112,256,943	168,385,414	280,642,357
		0.5 (b/a)	0.8 (c/a)	1.3 (d/a)

주1: 2024년 1~10월분까지 지급이 완료된 근로지원인 급여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함
주2: 2024년 기준이며, 최근 3년간 매년 동일한 시간 근로한 것을 가정하여 추정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사업비지급대장

2. 장애인 근로자 휴업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지급 또는 공가 인정

근로지원인의 임금 보전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업수당 또는 공가 인정이 필요하다. 근로지원인과 상당히 유사한 인적 지원유형인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비교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31.48시간이며 근로지원인은 115.8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이 평가받은 서비스 결정시간에 근거에 근로지원인의 일일 근무시간이 결정되며 이를 기초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근로지원인의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근로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결정시간이 일일 평균 5.9시간으로 일일 8시간 근무자가 39.6%, 4시간 근무자 33.3%로 단시간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실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하위 25%는 76시간 이하 근로했으며 절반이 120시간 이하로 근무했다. 주40시간 최대 월 173.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 분포상 상위 15%만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정된 근로시간 동안 손실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여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도 장애인 이용자의 휴가 등 근무단절로 인해 예상했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일 근로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가로 인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8].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의 생계 안정성을 보장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처우개선 방안들은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지원인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업무 만족도와 성과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근로지원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대체근로지원인 지원

최근 근로자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하는 만큼의 적절한 보상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직업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이용자의 일정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에 제한받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휴

48)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지원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수행기관이 대체 근로지원인을 투입하게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 근로지원인을 통해 지원 연속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불편함 없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지원인이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로써 근로지원인의 복지 향상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근로지원인 유입을 위한 자격수당 신설

근로지원인은 지원기능과 장애인 근로자의 주요 장애 유형에 따라 제1유형(업무보조형), 제2유형(의사소통형), 제3유형(적응지도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주로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해당된다. 주고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 작업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가 제1유형의 지원을 받는다.

제2유형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주된 업무로는 수어 통역, 의사소통 장치 사용 보조, 대면 의사소통의 중재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주변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유형으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주 대상이며, 의사소통의 제약이 큰 경우 제2유형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2유형 근로지원인의 자격 기준은 한국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제3유형 근로지원인 자격기준은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다. 현재 3유형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2유형과 같은 자격취득에 대한 임금가산의 혜택이 없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제3유형의 자격증 소지자는 831명으로 제3유형 중 18.1%에 해당되며 제2유형 183명, 제1유형 145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지원인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지원과 동시에 적응 지도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난이도가 제2유형에 비해 낮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제2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자격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급여비교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직업상담사에 비해 최저시급에 기초한 제3유형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격취득자들의 근로지원인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수당 도입을 통한 급여 인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유형을 중심으로 동시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격수당이 신설된다면, 동시지원이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경력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인력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5.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 증대를 위한 기초·양성교육의 확대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제1유형은 자격취득 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가장 빠르게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공단은 선교육 후배치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선임되기 이전 기초교육과 양성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소개나 직업적 관심으로 또는 은퇴 후 일자리를 알아보는 미취업자들이 근로지원인 일자리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쉽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 교육

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교육에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과정과 양성교육과정의 연중 실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소외계층, 은퇴자들의 교육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사업이 현재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6. 동시지원 판정 절차의 합리화 필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 동시지원은 전체 근로지원인의 26.1%가 실시하고 있어 4명 중 1명은 두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4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 근로자가 동시지원을 통해 근로지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직업재활시설, 민간기업, 표준사업장에서 동시지원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68.3%, 자폐성 장애 9.0% 시각장애 5.3% 순으로 이용률이 높으며, 근로지원 세 가지 유형 중 제3유형의 이용자의 57.3%가 동시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직무상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문화예술', '체육선수'의 장애인 이용자 비중이 높다.

장애인 근로자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 동시지원을 통해 근로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시지원을 보다 확대한다면 상당히 큰 비중의 장애인 근로자가 동시지원을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동시지원 확대,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준비되어야만 할 것이다. 획일적이면서 일괄적인 증대는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 양측 모두에게 업무적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지 못하며, 업무상 재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지원 확대에 앞서 먼저, 동시지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자 업무능력 및 기능평가와 직무의 안정성 및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근로

자의 경우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해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감독자의 지시수행 능력이 인정되고 도전적인 행동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낮은 장애인들을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직무위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동시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절차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업무처리 절차상 '지원평가' 단계의 '근로지원 이용장애인 평가'와 '사업장 환경 및 직무분석' 과정에서 동시지원 확대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표준화된 작업을 하는 사무직이나 기능직,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동시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며, 작업공간이 넓고 직무내용이 장애인 근로자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경우는 동시지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근로지원인은 단순히 정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활동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무리한 동시지원 확대로 인해 근로지원인의 업무량이 가중되거나 이로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에서도 일부 근로지원인은 동시근로로 인해 급여 상승에 대한 만족감보다 업무량 증가로 인해 불만족감이 더 크다는 의견도 피력된 바 있다. 따라서 동시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동시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이 겪는 업무 고충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과 공단은 모니터링하고, 기술적이거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www.kead.or.kr/K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고문헌

강동욱, 정솔, 노법래 (2023). **근로지원인 제도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탁연구.

김성호·김혁구·김영은 (2020).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훈련교·강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

김윤영, 이영석, 조혁진, 최희선, (2023).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김호진, 연명모 (2012).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현지원, 권준성 (2023).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은순, 정희경 (2017).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일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장애와 고용**, 27(2), 47-77.

박혜원, 김원호 (2016).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작업지도원 정책의 효과성 검증: 공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6(4), 153-172.

신하영, 서정은 (2018).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근로실태 및 처우개선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심진예, 강필수, 남용현 (200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 신인철 (2017).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평가–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원선, 이준우, 김민정 (2018). **수어통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민영, 민은정, 유희정 (2022).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요구도 특성 분석. **장애와 고용**, 32(2), 19-40.
이송희, 오문준, 김진우, 김석기, 김현민, 고영일 (2023). **서울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조윤화, 서동명, 김용진, 정제형, 이지호, 한기명, 이윤경, 김미령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최명란·윤관식 (20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 연구 **직업교육연구**, 30(2), 267-294.
최윤영, 정광진 (2022).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탁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
홍예람, 조상미 (2024). 사회복지사의 인지정서적 공감능력이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43(1), 281-315.
황수정, 김언아, 김성희, 양희택 (2008). **근로지원인사업 시범운영 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고용연구 2024-07

근로지원인 및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실태 연구

발 행 일 2024년 12월 23일
발 행 인 조 윤 경
발 행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 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전 화 (031) 728-7000
팩 스 (050) 3470-0901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전자우편 journal@kead.or.kr
I S B N 979-11-6922-145-0
인 쇄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비매품